

# 統一 問答

1991



# 차 례

---

## I. 통일정책

1. 『7·7 특별선언』의 의의와 주요내용은?..... 13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기본구도)과 주요특징은 무엇인가? ..... 18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 정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화국연방』, 그리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6
4. 理念과 制度가 다른 남북한 사이에 어떻게 『南北聯合』을 할 수 있는가? ..... 32
5. 『民族大交流 宣言』의 의의는 무엇이며, 그이후 실천조치와 향후의 전망은? ..... 36
6. 『민족대교류 선언』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 40
7. 우리의 자주·평화·민주통일원칙과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42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 48
9. 우리가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대남혁명노선의 포기를 주장하는 배경과 이유는?..... 52

10. 남북분단의 경위와 분단장기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55
11. 남북한이 서로 『民族史的 正統性』을 내세우는데 그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59
12. 분단국중, 독일과 예멘은 통일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63
13.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은 적절한 방안인가?.....	67
14.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어떤 것인가?.....	72
15. 과거 統一問題를 국내정치 of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批判的 見解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75
16. 정부가 『전민련』 등 재야단체의 범민족대회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78
17. “북한이 6·25 남침을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83
18. 남북한 관계가 어느 단계에 가야 우리 사회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허용할 수 있는가?.....	87
19. 분단 장기화에 따른 民族異質化 現況과 그 해소책은 무엇인가?.....	90

## II. 남북대화

20. 남북대화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97
21.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의한 不可侵宣言을 우리측이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01
2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성격과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107
23. 북한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111
24. 남북적십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전망은?.....	113
25.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 ‘민주’, ‘민족’, ‘평화’란 용어는 우리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	117
26. 북한이 김일성연설을 통해 주장한 이른바 『통일5개방침』이란 무엇인가?.....	121
27. 統一論議를 개방하고 民間交流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對北窓口를 一元化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124
28. 통일문제 접근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것같이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	130
29.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남북관계개선의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	134
30.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올 시기를 언제로 전망하는가?.....	137

### Ⅲ. 국제관계와 한반도

31.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이들 국가간의 사전 합의나 양해없이 自主的인 統一이 가능한가? ...	143
32. 한반도의 통일문제 해결에도 독일과 같이 『2+4 회담』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147
33. 동·서독의 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教訓은 무엇인가? .....	151
34. 북한·일본의 접근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154
35. 한·소 수교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	157
36. 유엔加入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과 주변국의 태도는? .....	160
37. 우리가 추진하는 『北方政策』과 서독의 『東方政策』은 어떻게 다른가?.....	162
38.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방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북한과의 차이는? .....	166
39. 주한미군은 우리와 어떠한 利害關係가 있는가? .....	169
40.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잠재역량은 어느정도이며, 북한의 『한반도 非核地帶化』 주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	175
41.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178
42. 오늘의 주변정세를 舊韓末과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80
43.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온 미·소양국의 軍事戰略과 이른바 『신데탕트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83
44. 『6·4 天安門事態』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方向은 어떠한가? .....	186
45. 중국·소련의 僑胞實態와 이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	190

#### IV. 북한실상

##### <정치>

46.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을 우상과 같이 떠받들고 통일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197
47. 북한주민의 基本權은 헌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199
48. 북한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 권리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는가?.....	202
49.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206
50. 북한주민들은 어느정도의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	209
51. 이른바 『주체사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	211

52. 지난 40 여년간 북한에서의 김일성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권력세습정도는?	214
53.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218
54. 김일성 · 김정일의 우상화 실태는?	221
55. 『3大革命小組』란 어떤 組織인가?	226
56. 오늘의 북한체제는 다른 공산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30
57. 北韓에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34
58.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노선과 남북한 수교 현황은?	236

<경제>

59. 북한주민의 사유재산 한계는?	238
60. 북한에서의 賃金基準과 계층별 소득수준은?	241
61. 북한의 물가와 북한화폐의 換率은?	244
62. 북한의 租稅制度는?	247
63. 최근 북한의 産業構造와 연간 경제성장률 및 대표적인 생산시설은?	249
64. 북한의 경제규모 평가결과에 있어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기관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52
65. 『合營法』 실시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255
66. 최근 북한의 外債 현황과 무역실태는?	259
67. 현재 추진중인 『제 3차 7개년계획』의 내용과 전망은?	262
68. 『협동농장 決算分配 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265
69. 穀種別 食糧作物 생산현황과 수급사정은?	268
70. 소련과 중국의 對北韓 경제원조 실태는?	270
71. 북한의 인구정책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72

72. 최근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구조 및 불만요인은? ..... 274

<사회·문화>

73. 이른바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란 무엇인가? ..... 280

74.北韓의 大學生 選拔方法과 敎員養成體制 및 高等教育現況과 金日成綜合大學의 實態는? ..... 282

75. 북한의 문화정책 방향은 어떠하며, 소위 ‘사상혁명’, ‘문화혁명’ 이란 무엇인가? ..... 285

76. 북한주민의 신앙·종교생활 실태와 종교단체 활동 현황은 어떠한가?.....290

77. 북한의 보건 의료정책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 ..... 294

78. 북한의 영화나 가극인 『소금』, 『꽃파는 처녀』, 『피바다』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 297

79. 평양의 시가지 건설 양상은 어느 정도인가? ..... 302

<군사>

80. 북한의 軍事組織體系와 軍事전략은 어떠한가?.....304

81. 북한의 최근 對中·蘇 군사협력 동향은 어떠한가? ..... 307

82.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는 가입하고서도 핵안전조치협정은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 310

V. 이념문제

83. 문익환, 임수경의 밀입북은 남북관계개선을 촉진시킨 要因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 315

84.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革命’의 개념은 무엇인가? ..... 318



85.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321

86. 自由開放社會의 속성이기도 한 빈부 격차와 理念의 다양성  
문제를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25

87. 최근 좌경운동권의 투쟁목표와 좌경세력의各界 침투실태는 어떠  
한가? ..... 329



I

---

통 일 정 책



## 1. 「7.7 특별선언」의 의의와 주요내용은?

## 〈7·7特別宣言의 意義〉

이 특별선언은 남북이 비록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의식에서 북한동포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것이다.

이 선언은 이제까지 폐쇄적인 북한을 봉쇄해 온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여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일여건을 조성하려는 통일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에 큰 획을 그어놓은 「7·7특별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을 경쟁·대결·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여 상호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북관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남북한이 단결과 불신 속에서 민족자해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족역량의 낭비는 물론 민족자존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대결·비방·경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과당경쟁으로 민족의 위신과 역량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의 발전수준과 성숙한 국민의식, 더욱이 올림픽을 유치·개최하는 국민적 자긍심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 선언의 근본취지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아래 두개의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민족통합을 실현해 나가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북한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관계, 즉 민족공동체안의 특수관계로 보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선언은,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한 민족안의 두 체제간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개방·협력을 통해 사회·문화·경제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통일이념을 담고 있다.

역사와 문화, 민족이 다른 나라들로 구성된 구주공동체(EC)의 경우에도 국경에 관계없이 사회·경제·문화의 교류 등에 있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고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 공동체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영위해 온 우리 민족의 공동체 회복은 용이할 뿐 아니라 당위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일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 본연의 모습을 지켜 왔다. 이와 같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은 비록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되었지만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살아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민족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족공동체를 향한 「선의의 동반자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참여·기여하

게 하는 데 우리가 협조함은 물론,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과의 관계개선까지도 협조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바로 통일·외교정책의 적극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정책기조의 전환을 뜻한다.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진출할 길을 열어 주겠다는 적극적 외교정책은 우리의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통일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불균형은 오히려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이제 우리는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민족자존의 정신과 동포애의 발현이 바로 이와 같은 정책 전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동포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 발전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관계개선과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의 길을 우리가 먼저 여는 것도 고향방문, 친척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폐쇄된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북한동포의 의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인 북방정책으로 소련·중국 등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막는 소극적인 정책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우월한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비추어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위협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인식과 자긍심도 이와 같은 정책전환을 뒷받침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이 선언은 외교면에서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식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 통일정책의 포용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

### 〈7·7 特別宣言의 主要内容〉

이 특별선언의 주요골자와 정책선언 6개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한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남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한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서로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한다.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온다면 보다 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6천만 겨레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기본구도)과 주요특징은 무엇인가?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가 열리던 날 특별연설을 통해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는데, “南北이 자주·평화·민주의 3原則을 바탕으로 「南北聯合」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려는 새 통일방안의 기본골격과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그 構圖(별표 참조)와 주요 골자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명칭:한민족공동체(The Korean National Community:KNC)  
통일방안

### ② 통일의 3原則

자주-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주-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 ③ 통일의 過程

共存共榮의 토대 위에서 南과 北이 聯合(南北聯合)하여 單-民族社會指向→單-民族國家(통일민주공화국) 건설

### ④ 過渡的 統一體制

○ 명칭: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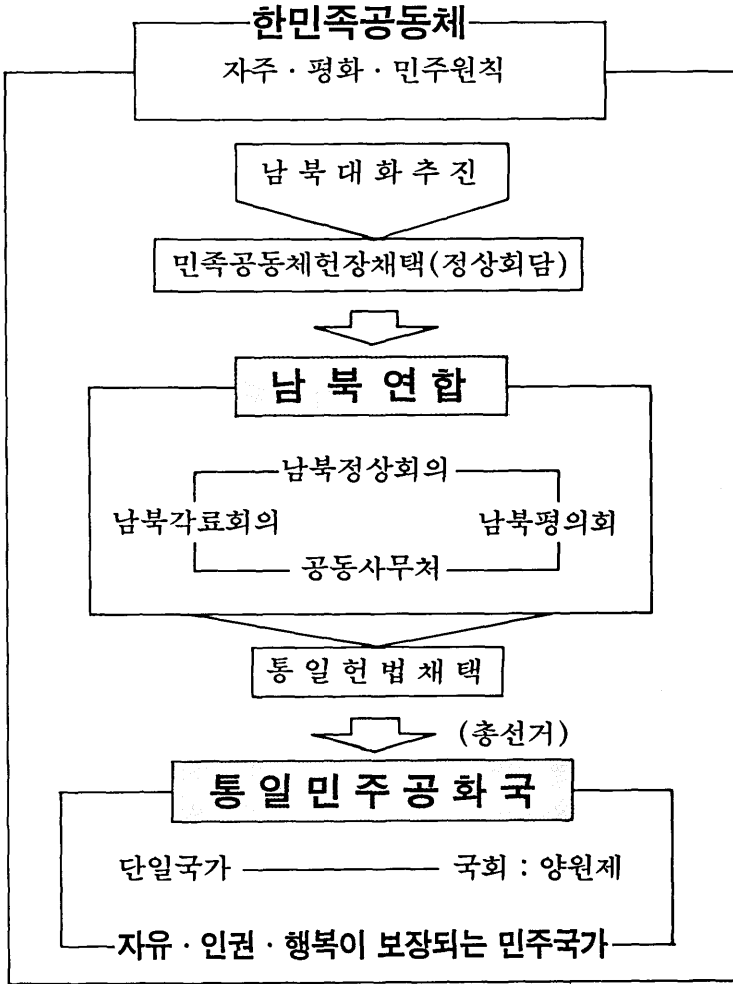
○ 성격: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

○ 역할:민족의 共存共榮, 民族社會의 同質化, 民族共同生活圈  
형성→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실현

○ 憲章:民族共同體 憲章

- 南北頂上會談에서 채택, 公布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相互不可侵에 관한 사항, 「南北聯合」 機構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규정

○ 「南北聯合」의 機構

- 南北頂上會議-최고결정기구
- 南北閣僚會議-협의조정 및 실행보장 기구

- 共同議長(南北의 總理)과 각기 10명내외의 각료급으로 구성
- 남북간의 현안문제·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보장
- 5개 常任委員會(人道, 政治·外交, 經濟, 軍事, 社會·文化 분야) 설치
  -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
  -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문제
  -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낭비방지 및 해외동포의 권익신장문제
  - 남북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 추진문제
  - 민족문화의 창달 문제
  - 공동번영의 經濟圈 형성 문제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
  - 현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代替문제 등
- 南北評議會—통일籌備機構
  - 100명 내외의 쌍방을 대표하는 同數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
  -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諮問, 統一憲法 起草 및 통일실현방법·절차 마련
- 共同事務處—실무지원기구
  -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 합의사항이행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관장
  - 常駐連絡代表를 서울·평양에 파견
- 平和區域 設定
  - 非武裝地帶內에 설정, 「남북연합」의 기구 및 시설 등 설치

- 「統一平和市」(Unification-Peace City)로 발전

⑤ 統一國家 樹立節次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로 확정· 공포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통일국가 완성

⑥ 통일국가의 未來像-민족성원 모두가 主人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

- 國家形態:單一國家

- 國會構成:兩院制 (上院-地域代表性, 下院-國民代表性)

- 政策基調

· 民主共和體制(민족성원 전체의 參與와 機會均等 보장, 자유로운 主義·主張 표현)

·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 유지

※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영역에서의 民族共同體 완성

다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主要特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統一 3原則을 再確認하였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은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89.8.15)에서 밝힌 통일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민족통일」을 통한 「국가통일」 실현의 합리적·현실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려면 분단현실의 認定에서부터

출발하는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을 고려할 때,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일 국가를 一舉에 완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은 우선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共存共榮을 도모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한민족공동체」는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當爲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89.9.11, 대통령「특별연설」중에서)이라는 데서 통일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통일을 원상복귀적인 공간적 개념의 통일이 아니고,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이라는 未來指向的인 時間的 개념의 통일로 보고, 목표지향의 통일과도체제를 설정하고 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이 이 과도체제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같은 단일민족사회가 형성되어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궁극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의 건설, 즉 「국가통일」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過渡的 統一體制인 「南北聯合」을 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통일방안에서 제의한 「남북연합」은 남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남북은 이 과도체제안에서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서 연합·연계됨으로써 안으로는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협의·조정하며, 밖으로는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

tion) 같은 교과서적 개념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過渡的이고 특수한 결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안에서 남북은 각기 外交·軍事權 등을 보유한 주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수천년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온 민족 전통으로 보아 「남북연합」은 「1民族 2國家」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결합체제, 즉 과도적 통일체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통일국가의 未來像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조국이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한민족공동체」로서 각각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고 단일국가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정집단이나 계급의 專橫이나 專制가 없는 民主共和體制가 우리 민족의 당위적인 선택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새 통일방안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체제의 공존을 영구화할 위험이 있는 미완성형 統一인 연방제를 배제하고 민족의 이상인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을 통일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통일조국의 政策基調로서 ① 민족성원 전체의 參與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主義·主張의 표현이 보장되는 민주공화체제, ② 민족성원 모두의 福祉 증진, ③ 민족의 恒久的 安全保障과 세계 평화에의 기여, ④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 유지를 제시한 것은, 이들이 비단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오늘날 人類가 염원하고 추구하는 普遍的 價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북한측의 입장과 주장을 고려하고 수용한다는 포용성과 공명성을 들 수 있다.

새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주장만을 내세워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여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과 상호주의 정신으로 민족의 현안문제와 통일문제를 더불어 풀

고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북한측의 입장과 주장 까지도 고려하고 수용한 공명정대성과 포용성이 있는 「평화」통일방안이다.

새 통일방안에서는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남북연합」의 기구구성에 있어 남북에서 같은 수의 대표가 참가하도록 하였고, 통일 헌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單一案에 합의한 뒤 민족의 총의로써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연합」의 테두리안에서 교류·협력문제와 함께 「정치·군사문제」도 함께 협의·해결하자고 한 것은 북한측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平和區域」 및 「統一平和市」構想을 밝혔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남북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의지를 과시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 통일방안에서는 비무장지대내 적당한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평화구역」에는 「공동사무처」등 「남북연합」 기구의 건물과 각종 회의장소 등 시설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의 場을 마련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들을 건설해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지향한 示範地域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구역」은 남북의 합의와 공동노력에 따라 점차 「統一平和市」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제2, 제3의 「통일평화시」를 건설하여 비무장지대 전체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감돌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화합의 지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既存 통일방안과의 一貫性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통일정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統一觀과 통일접근방법을 달리해 왔지만,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정책기조를 지켜왔다.

통일의 최종목표인 국가체제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통일방안의 일관된 정책기조였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민족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를 결정하고 통일정부와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족성원 모두의 參與와 자유의사의 반영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는 남북한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완화와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사회개방·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실현시킨 바탕 위에서 국가적 통일까지 완성한다는 점진적 접근방법을 택해 왔다는 점이다.

새 통일방안도 이 같은 점진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남북연합」을 통한 「민족통합」의 바탕 위에 「국가통일」까지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일괄타결방식을 배제하고, 같은 정책기조위에 발전시킨 통일방안임을 알 수 있다. 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편으로는 기존 통일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성과 실현성에 역점을 두고 인식 및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정세변화의 주체적 수용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 정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화국 연방」, 그리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 평화민주당의 3단계 통일방안의 「공화국 연방」 그리고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연방공화국」의 차이를 규명하려면, 그 어휘 자체 보다는 주장내용의 본질과 특징을 비교 검토해 봐야 한다.

비교 검토의 시각은 첫째, 일반 국제법상 통용되고 있는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개념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으며, 둘째, 완전한 통일국가를 실현할 때까지 중간과정과 과도적 통일기구를 설정하고 있느냐의 여부 및 설정시 미래의 통일국가의 정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두가지 범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남북연합」의 경우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은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과정의 過渡的 통일기구라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의 기구를 두어 통일실현시까지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며 통일국가의 수립방안을 구체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내정 불간섭의 원칙하에 정치·외교·군사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統一實現時까지」 한시적인 과도적 통일정부·과도적 입헌국회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중간과정에 있어서 분단쌍방의 관계는 同等權의 원칙 즉 상호 주권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이는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이거나 異民族국가간의 외교관계로 인정할 수 없는 이른바 「民族內部的

特殊關係」로 설정된다.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란 분단쌍방이 민족의 재결합을 포기하지 않는한, 상호 국제법상 주권국가간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실상의 국가적 政治體」 사이의 특수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단쌍방의 제3국관계는 명실상부한 국제법상 국가승인이 성립되지만, 분단쌍방인 남·북한의 상호관계는 분단국의 두 구성체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분단국특수법논리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의 경우, 서독은 부분질서 이론(Teilordnungstheorie) 또는 지붕이론(Dachtheorie)을 창안, 동·서독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서 국제법상 국가 아닌 「하나의 민족내부의 두개의 국가」(Zwei Staaten in einer Nationen)로 정립한 바 있다. (한편, 동독은 이러한 서독의 논리를 부정하고 동서독관계는 「2민족 2국가」로서 완전한 국제법상의 국가관계를 고집했다.)

셋째, 남북연합은 기존 국제법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수형태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연합도 아니고 연방국가도 아닌 제3의 형태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만 보면, 상호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연합적인 성격을 띠지만 교과서적 개념의 국가연합은 아니다. 독특한 분단체제간의 과도적 통일결합체가 남북연합이다.

요컨대, 過渡的 기구로서의 성격, 민족내부의 特殊關係의 설정, 그리고 국가연합도 연방제 국가도 아닌, 과도적 분단체제의 재결합 특수유형이 곧 남북연합이다.

#### ▲ 「共和國 聯邦」의 경우

「공화국 연방」은 金大中 평민당 총재가 주창한 통일방안으로서 평화통일정책의 3단계 즉 ① 평화공존 ② 평화교류 ③ 평화통일 과정에 서 완전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중간형태」를 일컫는다.

이 「공화국 연방」은 어휘사용에 있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의 용어와 혼돈 또는 유사한 것으로 오해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와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남북한 양지역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완전한 독립 정부가 상호인정하에 중앙연방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며, 이것은 각 독립정부위에 권한과 기능이 극히 제한된 상징적인 기구를 됴으로서 경제·문화·학술·체육·언론·인도적 교류등의 권한을 부여받는 말하자면, 「국가연합」(Commonwealth 또는 Confederation)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도적 「국가연합」 성격의 「공화국 연방」 형태의 유지 속에서 남북공존·교류를 통해 신뢰성과 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간 후에 상호 이해 조정을 바탕으로 국방·외교권 까지 그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여 완전한 통일국가(통일국가는 연방 형태의 국가:Federation)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공화국 연방」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지적 될 수 있다.

첫째, 주권국가인 두개의 공화국이 각각 완전한 독립정부로서 상호 인정하에 과도적인 중앙 연방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분명히 남북통일의 중간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점은 「남북연합」과 발상이 비슷하다. 그리고 중앙연방기구는 정치·외교·군사분야의 불간섭과 남북합의에 의한 기능 발휘라는 극히 제한된 상징적 기구로서 평화공존의 틀속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구체적 기구의 제시는 없으나 국가연합과 같은 것임을 대변함으로써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개의 국가간의 조약에 의한 국가 승인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남북연합」이 통일의 중간과정과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하고 있는 점과 정치·외교·국방문제의 불간섭원칙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평민당의 「공화국 연방」제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점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승

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일방안은 국제법상 국가승인 아닌 체제 승인을, 평민당의 통일방안은 국가연합발상의 명실상부한 국가승인을 표방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공화국 연방」은 상당기간 중간과정을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단방」이 아닌 「연방」 형태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철저한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는 일반국제법상의 연방국가(Federation)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공화국연방」은 정부의 單邦 형태의 통일민주공화국의 통일국가 형태와는 다르다. 물론, 통일국가의 정체는 민주공화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

#### ▲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의 경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연방공화국」(북한의 영어 표기: Confederation)은 명칭 자체는 연방이지만 내용을 보면, 일반국제법상에 통용되고 있는 연방국가(Federation=Bundesstaat)나 국가연합(Confederation=Staatenbund)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레닌의 발상에서 비롯된 일종의 用語혼란전술로서 사이비 연방제 또는 羊頭狗肉의 연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칭에 함축된 개개의 단어가 풍기는 선전효과를 감안한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비판을 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연방 공화국」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이나 「공화국 연방」과는 전혀 그 軌를 달리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연방공화국」은 다음 세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명칭뿐만 아니라 「체제와 이념의 차이 인정」, 「최고민족연방회의」·「연방상설위원회」·「10대 시정방침」 등을 제시함으로써 두개

의 지역정부간의 평화공존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나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통일의 중간과정이나 과도적 통일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1991. 1. 1 김일성신년사에서 지역정부에 잠정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함으로써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전술적 변용을 시도한 바 있음)

「고려연방 공화국」은 곧 통일국가이고, 또 「연방상설 위원회」는 곧 중앙정부로서 남북지역정부의 정치·외교·군사문제까지 통할 지도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방국가 형성을 위한 「선결조건」(반공자유민주주의 정권의 「인민정권」·「聯共정권」으로 교체, 국보법 철폐·공산당 활동합법화·주한미군철수·대미평화협정 체결등)의 충족요구를 감안할 때, 「연방 공화국」 방안은 「先남조선 革命 後 聯共合作」의 赤化統一 전략노선의 전술적 변조일뿐, 상호주권존중·평화공존을 토대로 한 일반론적인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법적 국가 승인도 배격하고 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 설정등 과도적 통일체제와 국가연합적인 평화공존체제를 무조건 「2개 조선 조작책동」·「민족분열영구화시도」로 매도하고 있다.

셋째, 통일국가로 제시되고 있는 「연방국가」는 「全朝鮮혁명」의 완성이며 한반도 전역의 「주체사상화」의 완수를 뜻한다. 이는 사실상 남한의 반공자유민주정권이라는 지역정부의 소멸과 새로운 공산정권의 수립이라는 점에서 통일국가의 형태가 단방이나 연방이나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상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통일시까지의 중간과정과 과도적 통일체제 그리고 정치·외교·군사 문제에 있어서 상호주권존중 및 자유민주주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공화국 연방」은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북한의 「연방공화국」은 이와는 전혀 상반된 통일전

선전술 차원의 입장에서 비롯된 사이비 연방제론임을 간취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이후의 국가형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북연합」은 명실상부한 「1민족 1국가 1정부」의 單邦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나, 「공화국 연방」과 「연방공화국」은 聯邦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공화국 연방」은 북한측의 목표와 주장과는 전혀 그 궤를 달리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4. 理念과 制度가 다른 남북한 사이에 어떻게 「南北聯合」을 할 수 있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와 진실한 행동의 실천이 뒤따를 때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적대적 상태를 끝내고 상호공존협력 관계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비관시되었던 통일까지 이룩해 낸 사례를 우리는 1990년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예멘의 통일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먼저 인간만이 소유한 천부적 자산인 대화·협상을 선택한다면, 남북한간의 적대와 갈등요소들도 해소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대화상대방에 대하여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서, 함께 풀히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이익과 공동이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은 남북대화의 최고형태인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민족내부의 전쟁재발 방지 및 평화관계의 수립, 불신해소 및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에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쟁중에도 적과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평화관계를 수립한 협상사례를 우리는 한국전쟁과 이스라엘·이집트의 전쟁에서 보았다. 또 상호제도와 이념이 달랐던 동·서독과 남·북 예멘이 통일되기까지 중간과정의 과도적 상호관계 설정을 통해 공존의 지혜를 터득함으로써 끝내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분단국 통일시대의 도미노 물결을 일구어 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중간과정에서 과도적 통일체제로 제시된 「남북연합」



은 명칭과 내용자체보다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북한측의 입장과 자세의 변화여하에 따라 그 실현의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定期國會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에 이르는 中間過程으로서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한 쌍방이 합의하여 채택하는 「民族共同體憲章」에 따라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체제로 「남북연합」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연합」은 남북이 이질적인 사상과 체제하에서 연방제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완전한 통일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여 우선 민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연합」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 이유는, 오늘의 分斷狀態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상호충돌의 위험없이 統一基盤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남북연합」이란, 그 자체가 통일된 국가의 최종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분단의 현실을 관리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과도적 統一體制로서 잠정적 결합체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南北聯合」은 민족내부의 특수한 結合形態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이라는 共同管理體制를 두려는 목적은, 오늘의 分斷狀態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方案을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한 바탕에서 우선 兩體制의 聯合形態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했기 때문이다. 즉, 「南北聯合」은 民族과 國家가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方途로서 중간과정에서 설치해야 할 과도적 統一體制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연합」은

남북한이 서로 갈라져 날카롭게 맞서 있는 오늘의 분단상태로부터 평화적 공존공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잠정적 체제라는 말이다.

우리는 통일이 아무리 소중한 민족의 至上課題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接近方法을 摸索하여야 한다.

당장 오늘에 통일이 실현되지 못할 바에는 분단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민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 불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互惠的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착실히 통일기반을 다져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오늘의 분단과 미래의 통일 사이에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設定하여 민족사회를 하나로 잇는 方案과 통일국가를 착실히 준비하는 방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의한 「南北聯合」의 實現可能性은 위에서 언급한바, 북한이 객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상호인정, 상호공존협력의 필연성을 자의든, 타의든 깨닫게 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것은 분명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얼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얼음위에 계속 앉아서 버틸 사람이 없듯이 결국 북한도 상호의존 시대의 역사적 대조류를 영원히 거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연합」의 구체적 방안을 보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機構設定과 역할까지 상세히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수정·보완·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재차 강조한다면, 문제는 우리의 제의를 북한이 얼마만큼 민족적 입장에 서서 성의를 가지고 受容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이다.

統一以前에라도 남북한 동포는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여 도우면서 民族共同體 生活圈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 문화유산을 繼承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궁극적인 정치적 통합에 앞서 사회·경제통합의 길을 여는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적 통일기구를 합의, 발족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民族大交流 宣言」의 의의는 무엇이며, 그 이후 실천조치와 향후의 전망은?

정부가 1990년 7월 20일, 대통령의 특별발표를 통해 밝힌 「민족대교류 선언」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광복 45주년이 되는 1990년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8.13-8.17)을 민족대교류기간으로 선포한다.

② 이 기간중 남북의 모든 거래가 판문점을 통해 상호교류토록 제한하며, 우리는 북한동포를 제한없이 받아들여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장소를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이를 돕는다.

③ 북한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상호교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북한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개방을 일방적으로 실천한다.

④ 앞으로 추석·설날·단오 등 민족명절을 기해 이 민족대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

위와 같은 「민족대교류 선언」의 배경과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가 있다.

첫째, 분단 45년이 되도록 반목과 대결, 단절과 불신의 늪에서 민족 자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오늘의 남북한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길은 남북의 동포가 서로 오가면서 상대방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며 정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을 되찾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남북간 민족의 교류는 신뢰 조성과 이해 증진의 첩경이고 끊겼던 민족의 맥을 다시 잇는 유일한 수단이며 평화적 통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

세계는 바야흐로 제2차 대전 이래 지속되어 온 동서냉전체제로부터 화해와 공존공영의 협력시대로 국제질서가 재편되어 가고 있고, 같은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은 1990년 7월 1일을 기해 하나의 경제·사회·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치적 통합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 남북한만이 단절과 대결의 냉전시대의 孤島로서 남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역사인식과 민족적 자각에서 이 선언이 나온 것이다.

둘째, 이 선언은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과 恨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주어야겠다는 인도적, 시대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헤어진 혈육간에 편지 한 장 주고 받지 못하는 인위적 離散의 장벽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우리 조국강토의 1천만 이산가족들은 45년 동안 재회나 재결합은 고사하고 생사도 주소도 확인할 수 없는 단절 속에서 원과 恨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해 가고 있으니 민족교류를 통해 이산가족의 상봉과 고향방문을 실현시키는 일은 정치 이전의 인도문제이고,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일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는 1988년 7월 7일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다각적 교류와 협력을 제창하고 이를 뒷받침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는데, 1년여의 국회 계류 끝에 1990년 7월 14일 통과됨으로써 민족교류의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측도 1990년의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비록 콘크리트장벽의 제거나 국가보안법의 폐지 같은 전제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남북 사회의 전면개방과 자유왕래를 주장하였으므로, 그 속셈이야 어디에 있든 이에 화답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7·20선언」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와 포용적인 대북제안을 하였다.

1) 북한측이 제시한 전제조건 협의를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7·20선언」 직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겉으로는 긍정적 제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콘크리트 장벽의 철거, 「범민족대회」 허용, 불법입북자의 석방,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7월 23일, 통일원·법무부·국방부 등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전제조건들의 실제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의 관계 실무당국자간의 회담을 제의하였지만 북한측은 엉뚱하게도 「당국과 제정당 수뇌가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의 수락을 주장함으로써 거부반응을 보였다.

2) 「범민족대회」 개최 및 서울 예비회담에의 북한측대표 참가를 허용하였다.

정부는 남한의 반체제단체와 북측의 「로동당」 산하 통일위장단체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추진하는 「범민족대회」까지도 ① 각계각층의 민족성원의 광범한 참가 ② 상호 비방 및 자극적 언동 금지 ③ 신뢰와 이해 증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의 기여 등을 전제로 「민족대교류」의 차원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이 대회 준비를 위해 7월 26일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2차 예비회담에 북한측 대표들이 참가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앞의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북한측은 7월 25일, 대표와 보도진 15명에 대한 편의제공과 신변안전 보장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하였고, 정부는 즉각 북측 총리에게 확약하였으며,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북측 참가자의 활동은 우리측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등 8개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전민련」 측의 안내만을 주장한 끝에 서울 예비회담에 불참하였다.

3) 방북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 북한측이 선별하여 초청하는 경우도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민족대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측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북신청기간(8.4~8.8)을 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61,355명의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하려고 세 차례(8.9~11)나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거부로 끝내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민족사회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고, 민족사회의 통합은 민족의 대교류와 사회개방 그 자체임을 생각할 때, 인적교류는 통일의 필수적 과정이다. 다각적인 대화·접촉·교류·협력의 길을 열고 그 폭을 넓히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의 大道를 마련하는 현시기의 통일과업이 아닐 수 없다.

## 6. 「민족대교류 선언」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먼저 7·20 「민족대교류 선언」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발표한 것인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 선언은 8·15해방 이래 한반도에 지속되어온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 분단 45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도록 남북간에 사람의 왕래는 커녕, 편지 한 장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해보려는 대결단이란 점에서 우리의 통일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제2차 대전 이래 계속되어 온 동서 냉전체제로부터 긴장완화와 화해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어가고 있으며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은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속에 남북한만 언제까지나 단절과 대치의 수치스러운 수렁속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민족적 자각에서 이 선언은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 선언은 분단 45년이 되도록 불신과 대결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오늘의 남북한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은 남북의 동포가 서로 오가면서 상대방을 돕고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을 쌓아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해서든 분단된 민족간에 교류의 물꼬를 터 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이 선언은 1천만이산가족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주어야겠다는 인도적 차원의 요청에서 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갈라져 산지 45년이 되도록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혈육의 흠어진 아픔을 달래다가 하나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남북간에 가로놓여 있는 분단의 장벽을 헐어 하루 속히 이들에게 잃었던 혈육을 되찾게 해주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무엇보다 절실한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된 이 선언의 기본정신은 대략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선언은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민족간에 쌓여온 긴장과 불신, 적대감을 씻고 화해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동질성을 회복 발전시켜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분열된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에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서 우리측이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에 호응해 나오도록 하는 과감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우리 대북 접근정책의 기초는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방법이었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북한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올 것을 전제로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북한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호교류를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북한 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개방을 일방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민족대교류 기간」을 두어 북한측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이번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석·설날등의 명절이 올 때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선언은 인적 교류의 범위를 우리 민족성원 모두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호 방문지역도 남북한 어느 지역이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벗어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7·20 선언의 법적 근거는 현행 헌법 제66조 ③항으로서 ③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법의 목적, 즉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데도 저촉되지 않는다.

## 7. 우리의 자주·평화·민주 통일원칙과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은 統一의 原則과 구체적 실천 사항등 남북한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합의문서이다. 이는 4반세기 동안 단절된 南北韓이 서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對話를 추진하고 제반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지는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역사적 문서인 것이다.

남북한 쌍방의 합의하에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북한간의 분단, 대결, 불신 상황의 완화를 통한 전쟁 억지에 있었고 평화정착 기반 위에서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성명은 비정상적인 민족의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상호신뢰와 대화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정치적 선언이었다. 이 합의의 우선적 목표는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선의의 체제경쟁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라 하겠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항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선언했다.

첫째, 통일의 원칙에 관한 합의이다.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民族自決權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自主의 원칙,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方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平和의 원칙, 그리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을 도모한다는 民族大團結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에 관한 합의이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 중상 않고,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셋째,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로, 민족적 유대, 상호 이해 증진, 평화통

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한다.

넷째, 남북적십자회담에 관한 합의로, 회담을 빨리 성사시켜 이산가족의 재회를 성사시킨다.

다섯째, 상설 직통전화 개설의 합의로, 돌발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직통전화를 가설한다.

여섯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이다.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일곱째, 이상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것이다.

이 성명은 남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왔던 체제와 사상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民族優先의 논리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합의로 해석할 수 있다. 사상과 이념에 가리워 있던 民族을 사상과 이념보다 우선하는 개념으로 놓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7개항의 합의사항에서 1항은 원칙의 합의이며 2항은 과거 지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항은 미래 지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래 지향이라는 측면이 강한 항목에서는 민족 또는 민족적 용어가 주어 또는 핵심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7개항의 합의사항에서 나타난 일관된 논리는 「민족이 무시된 정책은 止揚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을 중심적 위치에 놓고 미래를 指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록 북한의 「南北調節委 消滅論」의 주장과 당국간 대화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이 유효함을 강조해 왔으며, 그 이후의 제반 통일정책 제시와 대북제안을 통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이 성명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6·23 선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7·7특별선언」 등을 천명하고, 이어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하여 일관된 실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합의에 서명한 북한 당국이 이를 사문화시켜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恣意的으로 解釋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타도하기 위한 소재로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과 이에 동조하는 우리 體制內의 일부 세력은 마치 7·4 공동성명의 3원칙을 우리측에서 준수치 않는 양 사실을 왜곡 굴절시키면서 자신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이며 비민주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쓰고 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인식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에는 법적 차원을 떠나 2개의 정치적 實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호 확인한 기초 위에서 쌍방이 평화공존의 과정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과도적 조치로서의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남북한 관계가 사실상 평화공존의 초기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平和共存과 統一을 상호 배타적이며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된 과정과 단계의 문제란 점을 인정한다. 7·4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성취하려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잠정적인 平和共存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무력혁명에 의한 統一은 남북공동성명에 명백히 배척되는 방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統一方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원칙은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 포용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은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바 있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自主의 원칙은 우리의 통일 문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의 협의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되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의 분단이 강대국의 권력정치의 소산임을 인정하지만 統一은 전적으로 우리 民族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통일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적 권리인 民族自決權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의 형태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선의의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고립과 폐쇄를 의미하는 폐쇄적 자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집단적 의미의 民族自決權이 개인적 차원에 적용될 때는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통일 과정에 모든 개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적 절차까지도 내포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자주적 통일의 장애 요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반도의 平和體制 유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처리될 문제로서 민족자결권에 내포된 사항의 하나이다.

우리의 統一은 남북한 어느 일방이 전쟁이나 무력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전복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보는 平和統一이란 통일의 방법으로서 전쟁이나 부분적 무력행사, 기타 일체의 폭력적 방법을 모두 배격하고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로서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의 統一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民主原則, 즉 代議民主主義를 떠난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생각할 수 없다.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화해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때에 민족구성원 개 개인의 민주적 권리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민족대단결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통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반드시 민주원칙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民族優先의 논리에 입각해야 한다. 남북한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단결해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韓民族이라면 비록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제 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닌 포용과 화해, 공동번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남과 북에 사상과 이념이 상이한 양체제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 초보적 조치로는 우선 군사적 대결과 비방을 중지하고 대화와 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형성이 가장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자주·평화의 원칙과 함께 민주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수용함으로써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 3원칙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주에 바탕을 둔 민족대단결의 실질적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기회 있을때 마다 성명의 제1항인 평화통일 3대원칙만을 자의적으로 그 뜻을 해석하며 선전에 이용해 왔을 뿐 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인 제반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평화통일 3원칙 해석은 기본적으로 「남조선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공산화 전략 차원

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제1항인 통일 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내세워 주한미군의 철수와 대한민국 정부의 퇴진, 공산당 활동의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자마자 이 성명이 남북한 당국간의 상호 협상과 합의로 발표한 사실을 외면하고 대신 金日成의 통일노선에 대한 한국측의 굴복, 즉 자신들의 승리로 규정하여 대남공산화 전략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주체적인 통일 노선의 위대한 승리」이니 「수령께서 제시하신 통일방도의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하며 제1항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해석을 하며 수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6개항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성명의 합의사항들을 파기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은 통일의 원칙과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남북양측이 합의한 문서로서 제기능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북한은 수차에 걸쳐 「남북조절위원회는 없어졌다」고 공언하며 당국간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같이 남북공동성명의 제도적 실천장치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 성명의 효력 자체를 무력화시켜 왔다.

통일의 방향으로 민족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야만 한다. 나아가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당연히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실천 사항 뿐 아니라, 좀더 명백하고 발전적인 구체적 조치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추진, 제도화 해 나가야 한다.

##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의 주요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南北聯合과 北韓側이 주장하는 聯邦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나 南北聯合과 北의 聯邦은 민족을 보는 시각, 統一에 이르는 접근방법, 지향하는 統一 국가의 형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수용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먼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쌍방간에 가로 놓여있는 장벽을 헐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 민족적인 和음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완전한 재통일을 위한 밑바탕을 하나씩 다져 나간다는 점진적 통일에의 접근 方式을 채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첫째, 과도적 통일기구로 南北聯合을 결성할것을 제시하였다.

즉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룩하기전까지의 南北間의 分斷現實을 관장해나갈 중간 단계적 성격의 잠정적 체제로서 제의한 이 南北聯合은 남과 北이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다같이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달라진 민족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을 마련하는 役割을 담당해나갈 임시 체제를 말한다.

이때 南北韓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統一國家의 未來像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된 祖國의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통일이후 국가의 형태와 국회의 구성방법등에 대한 우리측의 구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즉 統一된 국가는 단일국가 이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聯邦制方式과 같은 미완성형 통일에 대한 우리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北韓側의 입장과 주장을 폭 넓게 수용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입장만을 내세워 北韓側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는 기본정신 아래, 지금까지 北韓側이 주장해온 바와 처하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등 南北聯合에 두는 모든 기구들의 구성을 南과 北에서 똑같은 數가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 南北聯合이 세워지면 민족동질성 회복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交流, 協力 문제와 함께 政治, 軍事문제도 협의해 나갈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北韓側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논하자는 우리側의 폭넓은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1980년 10월 10일 北韓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들고 나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먼저 南韓에서의 反共政策철폐, 주한미군철폐, 反共政府의 퇴진등 이른바 先決條件이 실현되면, 南北의 思想과 제도를 그대로 둔채 쌍방의 대표 및 해외동포로 最高民族聯邦會議과 聯邦常設委員會를 구성하여 이 기구들이 南과 北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聯邦制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첫째,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을 제시해 놓고, 또 思想과 制度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상호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聯邦制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論理에 어긋나는 일이며, 더욱이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고 자진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統一方案이 될 수가 없다.

둘째, 10대시정방침에서 聯邦制로 統一된 뒤에 交流, 協力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실현시켜야 할 南

北韓 社會開放과 交流, 協力을 통한 민족의 화합과 민족공동체형성을 거부하는 論理로써 統一方案이라기 보다는 정치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北韓은 聯邦의 개념을 대외적으로는 공존지향적 통합유형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10대 施政方針중의 민족연합군 창설과 대외정책의 일원화에서 대외주권을 聯邦政府만이 행사하는 전형적인 聯邦(Federation) 형태로서, 이는 결과 속이 다른 기만일 뿐만아니라, 그러면서도 연방에 필수적인 연방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허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北韓의 입장이 애매한 것은 실제 추구하는 대남정책의 기초가 연공합작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선결조건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정치 사상과 제도가 다른 체제 간에는 聯邦을 형성할 수가 없다.

그런 歷史的인 선례도 없으며, 이론상으로도 실현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소련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같은 민족간에 연방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北韓의 정치사전(1973. 12刊, p313)을 보면 연방제는 文化, 풍습, 언어가 다른 異民族間에 실시하는 국가 구조 형태의 하나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南北間에 聯邦制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여섯째, 北韓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연방제를 들고 나올때는 統一이 될때까지 과도적 조치로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더니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들고 나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통일된 최종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北韓側이 꾸준히 聯邦制統一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제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공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내외 여론을 현혹시키려는데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감상적 통일논의를 부채질

하고, 주한미군철수등을 통해 국가안보태세를 약화시켜, “先南朝鮮革命” 후 남쪽에 聯共政權을 수립하고 北韓政權과 合作(聯邦, 聯合, 聯立), 共產化 統一을 성취하겠다는 기본노선에서 나온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평화통일 방안이 아니고 대남적화 전략에 입각한 위장 평화전술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

### 9. 우리가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대남혁명노선의 포기를 주장하는 배경과 이유는?

우리민족은 1945년 日帝의 식민지로 부터 벗어나는 민족해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전에 국제정치의 희생물로서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여 올해로 45년의 분단민족사를 맞고 있다. 민족의 분단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200만 가까운 군사력이 상호대치되어 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비 부담 등 민족적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 가족간에 편지한장 내왕 못하는 민족적비극은 지속되고,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갈등으로 인하여 민족적동질성은 가속적으로 파괴되어 감으로써 민족의 분단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남북한이 영원히 갈라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분단의 극복은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민족사의 소명이다.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차적과업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사상과 제도의 대립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남북한이 냉전구조적 상황밑에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호 적대의식을 청산하고 民族共同體를 구성하는 같은 성원으로서의 동반자관계를 이룩하여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조선'에서 반드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이 포기되어야 한다.

오늘날 베를린장벽이 무너져 동·서독이 통일을 이룩하기까지는 분단상황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서독사이의 교류·협력관계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교류·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2민족·2국가정책으로 압축될 수 있는 동독의 대서독혁명전략의 포기

가 뒷받침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동·서독관계와 한반도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류·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남북한 평화공존관계의 定着을 이른바 ‘두개조선조작책동정책’이라고 매도하면서 한사코 반대하여 왔다. 북한의 이와같은 주장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기본 속셈은 ‘남조선’혁명전략노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명백백한 실증이었으며, 북한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남북대화의 전망은 불투명하며, 한민족 공동체형성을 통한 민족통일로의 접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이 남북한간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통일로 접근하려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노선이 포기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족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갖춘 「근대민족국가」를 형성시키는 과업이며 이 과업이 실현되려면 오늘날 소위 「주체사상」으로 위장된 북한의 독재체제는 청산되어야 한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인민대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허울좋은 「주체사상」을 표방하여 대내외적인 선전·선동을 강화함으로써 마치 ‘인민대중’이 국가사회의 주인인양 철저히 위장되고 있으나 북한의 인민대중(주민)은 「조선로동당」 및 궁극적으로는 勞動黨을 틀어 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북한은 현대문명사회가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나아가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통제된 획일적 사회일 뿐만 아니라 人權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兵營社會이다. 이러한 말살된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지 않는한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통일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개원연설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북한정권에게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였던 바, 이것은 우리나라가 통일정책을 제의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 10. 남북분단의 경위와 분단장기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남북분단의 경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소련에 의해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戰勝國인 미국과 소련은 敗戰國인 일본군의 武裝解除라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南北分割占領한데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 사이에 사전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알타協定」이나 「포츠담會談」의 產物이 아니었다. 이 두 회담에서는 “信託統治에 대한 論議”는 있었으나, “南北分斷에 대한 論議”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戰時的 「聯合國會談」이 한반도의 남북분단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합국회담」에서는 일본의 패망후, 한국의 自主獨立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시켰다는 책임도 면키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한반도의 분할점령을 가능케하는 整地作業과 같은 길을 터 놓았던 것이다.

만약 전시의 「연합국회담」에서 한반도의 즉각적인 獨立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運命을 그 주인에게 맡겼다면, 비록 당시의 民族獨立運動 勢力間에 분열과 대립의 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分斷의 悲劇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소련의 參戰을 받아들임으로써 分割占領의 구실을 주었던 것이 분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 대하여 宣戰布告를 했고, 즉시 대대적인 軍事行動을 개시했다. 소련군은 破竹之勢로 남하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소련군의 南下沮止線을 어디에 획정할 것인가에 苦心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던 중에 美陸軍省 찰츠·본스틸大領과 딘·러스크大領이 공동작성한 “38도선을 경계로 미·소양군의 進駐와 地域內 일본군의 降伏接受”라는 提議를 받아들여, 영국·중국·소련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 「일반명령 제1호」로 트루만大統領이 맥아더司令部에 하달함으로써 남북분단이 실현되었다.

결국 南北分斷은 외세의 책임이지만, 우리 민족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自主力量이 부족하여 일본에게 國權을 빼앗겼던 것이 그렇고, 解放以後 民族獨立運動 勢力間의 분열과 대립으로 獨立의 기회를 잃은 것이 그렇다.

#### 〈분단장기화의 원인〉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는 원인은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저해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실현을 위하여는 쌍방간 政治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自由民主主義 體制와 共產主義 體制의 상극적인 이데올로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형태의 국가로 통일하며, 어떠한 政治體制를 선택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 부터 풀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통일의 저해요인이 된다.

둘째, 남북간 신뢰회복과 平和定着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쌍방은 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하여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불가침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합의하자”고 들고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변화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전적 효과만 노리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북한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믿음직한 행동으로 평화정착의 환경과 여건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호불신과 긴장의 고조는 통일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실현을 위하여는 民族同質性 회복과 民族共同體 意識에서 共存共榮을 위한 人的·物的交流를 증진해야 한다.

統一過程은 經濟統合·社會文化統合·政治統合의 순서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주의의 첫단계인 離散家族의 相互訪問 실현조차 외면하고 있다. 人的·物的 多方位적 交流協力の 실현은 통일실현의 첫 단계가 된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이 모두 그러한 과정을 밟았던 것을 거울삼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교류협력을 외면하고, 북한체제를 남한에 선전하려는 일부 예술인교류에 그치면서, 한국내 반체제 집단과의 교류에 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이 다方位적 교류증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통일실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통일실현은 북한이 하루 빨리 개방하고, 정치적으로 개혁되어 민주화,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소련 및 동구공산제국이 개혁·개방의 역사적 조류에 발맞추어 民主化되고, 自由化되고 있는데 북한만은 오로지 “우리식대로 산

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통일실현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하루 빨리 북한의 사회에도 개방의 물결이 스며들어 주민들이 각성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體制改革의 民主化 運動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金日成父子의 偶像化」가 무너지고, 「神政體制」가 와해된 터전위에 統一協商이 추진되어야만 分斷長期化의 悲劇은 終焉을 告할 것이다.

## 11. 남북한이 서로 「民族史的 正統性」을 내세우는데 그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 〈문제의 제기 및 정통성 개념〉

정통성문제가 제기되었던 시기는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관련된다. 즉 1970년대초에 유엔에서 한반도문제는 당사자문제로 한정시킴으로써 남북한당사자들이 한반도를 누가 대표하며, 어느쪽의 통일 명분에 따라 통일해야 하느냐의 競爭의 와중에서 이것을 판가름짓는 전략개념으로서 남북한 어느 쪽이 민족사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통성의 개념화가 다양하므로 실제 우리 내부에서도 체계화되지 못한 면도 있다. 다만 여기 정리한 내용은 주류를 이루었던 논리를 정리할 뿐이다.

「正統性」이란 어떤 主體가 갖는 正當한 法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족이 主體가 되어야 하는 민족사에서는 그 민족의 정통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民族史의 정통성은 民族이란 주체가 갖는 「주체성」과 國家라는 주체가 갖는 「정통성」위에서 성립되는 것으로서 민족사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하고, 그 위에 국가적 차원의 정통성을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서도 찾아야 하고, 未來까지도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정통성에 대한 합리성, 고유성, 지속성 등을 갖추어야 된다.

### 〈大韓民國의 正統性〉

조선왕조 말기에 淸·露·日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이 그들의 지배권을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정세 속에서 高宗은 1897년 「大韓帝國」이라는 國號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뒤 日本의 강압에 의하여 韓日合邦이 이루어졌으며, 大韓의 國民

들은 1919년 3월 1일 民族代表 33人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을 선포하자 독립운동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해외에 까지 확대되었다. 日帝는 총격으로 강압하였기에 애국지사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국권회복과 民主共和體의 독립한국을 세우기 위하여 上海에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日帝로부터 광복을 되찾게 되자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공정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은 그 헌법전문에서 3·1精神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밝히는 동시에 임시정부의 國號인 「大韓民國」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수립방법면에서나 국내외로부터의 지지획득면에서 북한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다.

물론 「朝鮮」이란 국호도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호칭이기는 하다. 그러나 朝鮮王朝와 日帝侵略下の 통치기관인 「朝鮮總督府」를 연상케 하는 당시의 국민감정으로 보아서 다시 국호로 사용하기에는 달갑지 않았다.

#### 〈북한의 「抗日革命傳統」의 내용과 허구성〉

우리의 정통성과는 달리 북한이 내세우는 正統性이란 김일성이 만주에서 抗日鬪爭을 전개하여 主導的인 역할을 했다고 날조하는 데서 그 기초를 찾고 있다.

이 혁명전통에 대하여 그들의 黨規約과 社會主義憲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黨規約前文: “1926년 처음으로 조직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抗日革命鬪爭을 통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로동당은 抗日革命鬪爭시기에 김일성수령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社會主義憲法 第3條：“조선민주주의人民共和國은 帝國主義 侵略者를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革命傳統’이라는 것은 순수한 민족주의적 항일투쟁의 전통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 팽창을 방조하는 목적으로 소련공산체제를 적용하는 점에서 반민족적 정통성이라 하겠다.

初期 憲法에는 ‘抗日傳統’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 1972年 社會主義 헌법에서 규정되었다.

북한이 소위 김일성의 “抗日革命傳統”이라 내세우는 날조된 역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근대사는 1866년 「서만」號 사건에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를 등장시키는 데서 부터 시작한다. 그후 김일성의 父 金亨稷은 1917년에 평양에서 「朝鮮國民會」라는 항일비밀조직을 만들고, 1919년의 3·1독립운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192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社會主義의 혁명운동에 또한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응우로부터 4대가 되는 金日成은 1926년 14세 어린 나이로 <트·ㄷ>(타도 제국주의동맹)이라는 비밀혁명조직을 만들고 1936년 5월에는 「조국 광복회」를 창립하여 회장이 되었으며, 만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고 이를 이끌고 국내에 들어와 보천보, 茂山地域戰鬪를 주도하여 승리하고, 드디어 1945년 8월에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이 金日成 家系를 독립운동가문으로 날조하여 김일성 우상화와 통치의 정당성을 조작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抗日革命傳統”이란 金日成 1人統治의 정당화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며 民族成員이 총체적으로 살아온 역사의 줄거리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낱 역사날조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外侵을 이기며 살아온 민족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民族의 주체적 차원에서나, 法統性의 차원에서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내세우는 「혁명전통」 주장이 합리성 면에서 설득력이 없자, 근세사의 왜곡, 항일투쟁사의 날조, 심지어는 김일성 부자 및 그의 家系에 대한 우상화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또 文化的 정통성 면에서 고찰해 볼 때 북한은 일부 민족고유의 전통과 풍속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말소되었고 생활패턴도 상당히 달라진 점을 볼 때 문화적 측면에서도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2. 분단국 중, 독일과 예멘은 통일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독일의 통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본격화된 독일통일의 작업은 동독의 변혁과 민주화로 말미암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 동베를린까지 전국적으로 거세게 확산된 국민들의 改革要求는 多黨制導入, 自由總選舉實施, 言論의 自由 등 근본적인 體制改革 또는 공산주의 포기의 수준으로 치달렸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自由總選舉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기집권해온 공산당은 제3당으로 물러나고 非共產勢力인 基民黨이 제1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5월 18일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에 관한 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을 「제1국가조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조약은 동년 7월 1일 발효됨으로써 동서독은 지난 45년간에 걸친 分斷狀態를 사실상 종식하고 새로운 單一經濟社會體制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0년 9월 12일 「2+4회담」이 합의되었다.

이 회담은 동년 5월 5일에 시작하여 4차에 걸친 논의와 협상 끝에 4개월만에 종결되었다.

이 회담에서 가장 큰 장애는 통일독일의 NATO 殘留問題였다.

그리고 소련군의 철수비용문제, NATO軍의 訓練問題, 美軍撤收問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모두 순조롭게 타결되어 통일독일의 位相과 주변국과의 관계정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1990년 8월 31일 동서독은 「제2국가조약」이라 불리는 「政治條約」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0월 3일 동독의회는 “西獨基本法 第23條에 의하여

동독이 서독에 吸收된다”고 決議함으로써 명실공히 통일을 宣布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 2일 통일독일은 역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 〈예멘의 통일〉

북예멘의 국호는 「예멘아랍공화국」으로서 대외적으로 非同盟中立路線을 추구하며 대내적으로는 이슬람교의 原理를 國家理念으로 하는 국가이다.

한편 남예멘은 「예멘人民民主主義共和國」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理念을 추구하며, 대외적으로 親蘇傾向의 국가이다.

남북예멘은 分斷以後 수 차례의 國境紛爭과 武力衝突이 있었다. 이와같은 분쟁의 타결을 위하여 남북예멘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무릅쓰고 쌍방의 政府當局間 대화와 協商을 지속해 왔다.

특히 頂上會談을 통하여 統合에 합의하고 統一憲法草案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90년 3월 19일 북예멘 살레대통령과 남예멘의 알비드書記長은 타이즈에서 「頂上會談」을 열고, 최종적인 統一憲法(案)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 統一憲法(案)이 양국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됨으로써 드디어 5월 22일 통일을 宣布하게 되었다.

현재 통일예멘은 30개월 동안 존속키로 합의한 「過渡中央政府」가 통치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國家組織改編을 끝내고,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도정부는 모든 면에서 「급격한 통합」은 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完全統合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도기간이 끝나면 多黨制에 의한 總選舉의 실시로 完全統合을 이루게 된다.



통일예멘의 統一憲法의 要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호 : 통일예멘공화국
- ② 수도 : 사나(북예멘의 수도)
- ③ 국교 : 이슬람교
- ④ 입법부 : 양국민들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현재 총301명 북예멘 159명, 남예멘 111명, 기타 민족대표 31명)
- ⑤ 행정부 : 「통합각료평의회」 구성(현재 총39명, 북예멘20명, 남예멘 19명)
- ⑥ 「대통령평의회」 구성(현재 총5명, 북예멘 3명, 남예멘 2명)(현재 대통령 : 살레, 부통령 : 알비드)
- ⑦ 경제체제 : 혼합경제체제
- ⑧ 화폐 : 「리알」과 「디알」混用(과도기간 동안만, 「디알」을 24% 평가절하)

〈왜, 우리는 통일을 못하는가?〉

동서독의 통일실현과 남북예멘의 통일실현을 보면서 같은 분단국인 남북한은 왜,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몇가지 理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가 민주화·개방화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

동독의 국민들 같이 북한의 주민들이 밑으로부터 위로 거세게 확산되는 민주화·개방화의 改革要求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라고 하는 폐쇄사회의 특성과 김일성왕조체제의 神政體制가 와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식대로 산다”는 식의 생떼를 쓰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통일접근의 첩경은 상호간 신뢰회복과 상부상조로부터의 시작이다. 非政治的인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急先務이다.

동서독과 남북예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적·물적,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으로 민족공영의 길을 터 놓았던 것이, 통일실현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셋째, 북한이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아래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수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연한 남북당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政治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방법을 摸索해야 한다.

서독의 브란트는 일찍이 「東方政策」의 발표와 함께 “동독을 승인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쌍방간에 互惠平等의 原則에서 民族共同體意識을 바탕에 깔고 統一以前에 풀어야 할 懸案들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 13.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은 적절한 방안인가?

남북 분단이후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이 거론된 시기는 「4·19학생혁명」을 전후로 한 1950년대말과 1960년대초였다. 특히 統一論議의 百花齊放時代라고 일컬어지는 제2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일부 해외동포 사회의 인사와 국내 革新系 그리고 미국의 朝野人士들이 한반도 중립화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해외동포사회의 중립화통일론의 주장은 기존의 남북한정권을 東·西冷戰의 대변기관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한민족의 自主的인 통일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입장에서 미·소 세력을 배제하고 중립국감시·보장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국내 혁신계의 중립화통일론의 주장은 南北直接協商에 의한 永世中立化 統一과 美·蘇등의 강대국이나 유엔등 국제적 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또한 마이크 맨스필드 美上院議員은 미국이 관련강대국들과 협의하에 「오지리식 중립화통일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통일론의 특징은 민족내부적 합의나 분단 이후의 남북의 敵對的 대치상태, 강대국들간의 논의나 합의의 부재상황과 같은 주변상황을 간과했거나 극히 理想論, 觀念論에 치우친 나머지 무조건 南北協商 강행 입장에서 또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1960년대초 張勉 총리는 맨스필드의 「오지리식 中立化統一方案」과 관련, 政府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주요 견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는 오지리와는 달리 소련·중공과 인접하여 전략적 요

층에 위치하고 있다. 만일 중립침해시는 유효한 適時對應支援이 불가능하다.

둘째, 오지리는 4대국점령시에도 단일정부를 유지하여 공산주의세력의 부식이 없었음에 반해 한반도는 북한지역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도발한 공산정권이 엄존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한반도중립화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변국가들의 세력균형과 보장, 민족내부의 당시자간의 합의, 전략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自衛를 위한 군사력의 완비등이 中立化現實條件임을 감안할 때, 당시의 상황하에서 한반도중립화통일론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感傷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 제5공화국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제6공화국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통일후의 정부형태나 대외정책노선을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통일정부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립주의, 비동맹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親西方·親共產圈路線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의 방향을 못박고 있지 않다. 民族自決, 自由, 民主, 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對外政策 路線은 우리에게 적대하지 않은 한 그 누구에게도 적대하지 않는 全方位外交政策路線일지언정, 중립이나 아니냐의 兩者擇一的 선택을 강요받을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 민족자결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南北當事者가 합의하는 통일국가 실현이라는 大義名分에 따라 南과 北이 民族的 입장에 확고히 서는 노력이 急先務인 것이다.

다만 한반도통일의 방법으로 중립화론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립의 의의와 필요성 문제를 포함하여 中立維持의 條件과 中立化의 成功·失敗事例를 냉철히 검토하여 敎訓要素를 導出함으로써 統一祖國의 未來像 정립에 반영하는 것이 意味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오지리의 경우는 소련의 비타협적 태도를 비롯하여 강대국들의利害不一致로 난관이 컸음에도 民族主義 旗幟下에 단결을 이룩하고 안정된 政黨政治등을 기반으로 결국 강대국의 보장합의를 유도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한편, 라오스의 경우는 政治·經濟·社會的 불안정과 국민적 합의·단결의 부재 현상 속에서 東·西冷戰과 월남전등의 국제적 요인이 가중됨으로써 끝내 중립화통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中立化 成功의 관건은 內的 合意와 國際的 保障의 존속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개의 기둥이 튼튼히 세워지지 않고 걸 모양만 갖췄다고 中立化가 곧 統一이라는 等式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오스의 事例에서 보듯이 내적 합의없는 中立的 地位가 내란을 야기시키고, 赤化陰謀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해 나감으로써 결국 中立化統一이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또한 中立化論은 자칫, 국내적 요인을 배제하고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에 의한 보장이라는 국제적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외세배격이 곧 統一이라는 단순논리에 빠지기 쉽다. 자칫하면 非同盟 中立主義路線은 곧 民族自主的인 統一論이고 그 밖의 것은 非自主的이고 外勢 依存的인 統一論으로 매도해 버리는愚를 범하기 쉽다는 말이다.

한반도 中立化 統一方案의 의미와 有效性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상황과 中立化 成功條件이 무엇인가를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최소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 中立을 원하는 나라는 內的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中立 또는 中立化에 의한 統一의 主張은 한반도내외의 현실로는 觀念的·理想主義的 論理의 반영이라고 일단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한반도를 緩衝地帶化하여 中立國으로 하면 兩大陣營의 세력균형이나 주변강대국간의 세력균형과 이해관계에도 아무런 害를 주지 않을 것이므로 分斷狀態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中立化 統一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왔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주변관련국들의 利害가 교차되고 있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도 남북한의 타협과 東·西陣營간의 타협을 교차시키는 타협점으로서 中立化 統一論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상황을 감안할 때, 위의 두가지 중립화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즉 中立化統一方案을 선포한다고 해도 統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상 中立化의 참 뜻은 外交·軍事의인 측면의 中立的政策을 표방하는 것이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한 어떤 새로운 體制·理念의 中立化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이든 실제적이든 「先 統一, 後 中立化 政策路線」의 論議일 경우에만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先 中立化, 後 統一政策路線」의 논의는 非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다.

南北간에 合意에 의해 統一국가가 건설된다면, 統一韓國의 對外政策路線을 어떤 것으로 標榜하느냐의 문제는 검토될 수 있으며, 주변4강의 合意問題도 현실적으로 거론될 수도있을 것이다. 요컨대, 종래의 한반도의 中立化 統一論에 관한한 우선 統一당사자인 南北韓간의 合意(물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됨)가 先行되어야 하며, 그다음 주변4강의 중립보장의 合意와 준수가 뒤따라야 고려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中立化 統一論은 統一論議가 전개되는 가운데 필경 제기될 課題의 하나로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히 주위를 기울여야 할 점은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의한 改革·開放政策의 結果 나타나고 있는 歐洲의 冷戰體制의 解消 현상과 自由民主主義에 의한 독일統一과 예멘統一을 감안할 때, 中立論者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中立化 統一論의 의미와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熟考해 봐야 할 것이다.

永世中立國 스위스에서도 歐洲의 冷戰體制의 붕괴와 자유 인권을 강조한 1990 「파리선언」 이후 현실도피적인 중립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당당한 자유주의 국가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일고 있음을 우리는 直視 할 필요가 있다.

#### 14.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社會의 각계각층 즉, 대학가의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을 비롯하여 勞動界, 宗教界, 教育界, 文藝界, 出版界, 其他分野의 民衆革命論者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우리 일반국민들의 순수한 염원인 민족통일과는 전혀 다른 매우 위험한 내용인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중통일이란 소위 「民衆」(노동자, 빈농, 도시빈민)이 주체가 되어 「民族解放」(자주)의 명분하에 주한미군을 축출하고, 「民衆解放」(민주)의 구실하에 반공정권을 붕괴시켜 「민중정권」이란 이름의 人民政權(共産黨이 主導하는 暫定的인 聯合政權)을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共産政權과 聯合(북한식 표현으로는 協作)하여 共産化統一을 달성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론이며 국내 민중혁명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두가지 해방 즉, 민족해방·민중해방에 의한 「民衆統一·解放統一」論의 正體인 것이다.

이른바 「민중주권」을 내세우고 기층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통일론은 사회를 지배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한 반민족·반평화운동이며, 국민의 수임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정부를 통일방해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自民闘」(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의 약칭으로서 대학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반체제적 반합법조직체)와 「민민투」(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의 약칭으로서 반체제적 반합법조직체) 간에는 多少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자민투」는 민족적 모순을 중시하는 나머지 선 민족해방(자주), 후 민중해방(민주)을 실현한 다음 북한에 흡수통일시키자는데 비해 「民民闘」는 계급적 모순을 강조하는 나머지 선 민중해방(민주), 후 民族解放(자주)



을 실현한 다음 북한과 地域自治에 의한 연방제를 거쳐 합작통일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統一概念은 사실상 超階級的인 국민 또는 민족을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며, 또한 和습에 의한 공존논리가 아니라 혁명에 의한 다른 한편의 征服論理인 것이다.

차제에 「民衆統一」論者들이 기도하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는 북한의 당면 對南革命路線인 人民民主主義革命과 同義語로서, 다만 우리국민의 공산주의 기피사조와 현행 국가보안법의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僞裝名稱인 것이다.

민중민주주의혁명론자들의 분파를 보면 크게 양대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전술한바 「자민투」이고 다른 하나가 「민민투」인데, 이들 양자의 혁명노선을 구체적으로 그 전략계획에 따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社會構成體 평가면에서 「자민투」가 남한을 「植民地 半資本主義社會」로 보는 데 대해서 「민민투」는 「新植民地 國家獨占資本主義社會」로 規定하고 있다. 즉, 「자민투」가 식민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민민투」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있다.

둘째, 당면 주요모순의 規定面에서 「자민투」가 「帝國主義와 民衆間의 모순」으로 보아 민족적모순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민민투」는 「파시즘·매관자본과 민중간의 모순」으로 규정하여 階級的모순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요모순 규정면에서의 차이점은 전술한 社會構成體 評價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셋째, 당면 1단계 예비혁명의 戰略目標策定에 있어서 「자민투」가 「主 帝國主義 逐出, 從 파시즘 타도」로 民衆共和國—실제로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正道라는 것에 대해 「민민투」는 「主파시즘타도 從 제국주의 축출」로 民衆共和國을 수립 하는것이 正道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목표 책정의 차이는 전술한 주요모순 규정면에서의 차이

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넷째, 革命主力軍 책정면에서 「자민투」가 「프롤레타리아 영도하의 勞·農·貧民동맹과 그속에 뿌리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주력군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서 「민민투」는 「프롤레타리아트와 그속에 뿌리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당」만을 주력군으로 책정하고 있다.

다섯째, 혁명보조군의 책정면에서 자민투가 보다 광범하게 진보적 청년학생층과 인텔리, 小資産者 계급 그리고 애국적 民族부르주아지들을 잡고 있으며, 또한 야당도 비록 전략적으로는 打倒對象이지만 與黨과의 갈등을 間接豫備軍으로 활용할 필요성에서 잠정적인 戰術的 제후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서, 「민민투」는 貧農, 도시빈민 및 進歩的 青年學生으로 잡고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 때문에 「自民闘」는 「民民闘」를 左傾的 英雄主義니, 妄動主義니, 모험주의 등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민민투」는 「자민투」를 두고 右傾的 機會主義니, 投降主義니, 改良主義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양파는 서로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정통파임을 자처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을 전개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반제·반파쇼투쟁」면에서 통일전선을 취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민투」, 「민민투」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적어지고, 「전대협」 「서민학련」과 같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며, 그들은 또한 一名 「主思派」(NL派), 「레닌 主義派」(PD派)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사실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政府는 이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고, 아울러 우리국민 모두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15. 과거 統一問題를 국내정치的手段으로 이용하였다는 批判的 見解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에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과 意見의 收斂努力을 결한채, 또 輿와 野의 事前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超黨的 합의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채, 政府가 獨占的으로 統一政策·方案을 수립·추진하거나 對北提議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衝擊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統一問題야말로 민족전체의 문제요, 범국민적·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下向式 統一論議와 「정부독점적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통일문제를 政權安保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과 不信을 자아냈다는 批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統一의 名分을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자세에 있어서 진실성을 상실했다고 지탄받아도 마땅하다. 지나간 40여년의 한국정치사를 회고할 때, 우리는 두가지 경우를 두고 통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접하게 된다.

첫번째 사례는 이승만 대통령의 「武力北進統一論」이다.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이 환상적이며 실현불가능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家父長的 獨裁의 지속을 위해서 武力北進統一論과 「反共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국내정치세력을 거세·탄압하는데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두번째 사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維新體制」를 수립함으로써 長期執權陰謀에 통일문제를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이후 南의 「維新體制」의 출범과 北의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金日成唯一體制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결국 통일과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장기집권시나리오」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발생한 것이다.

통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誘引要因은 무엇보다도 그것은 政權의 民主的 正統性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허약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통성의 기반약화를 통일문제의 독점적 전개로서 보완하려는 시도가 政策立案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났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統治權의 행사」 주장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용공조작사건」 주장, 그리고 북한정보의 독점등에 대한 비판들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對政府 불신·비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民主的 正統性을 부여받은 제6공화국정부는 정통성의 是非라는 무거운 부담으로 부터 벗어난 合法的 정부로서, 통일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發想 자체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민족의 장래, 국민의 死活과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통일문제를 결코 정부 독점이나 密室 政策決定에 의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國會와 與·野지도자, 學界·斯界의 통일문제 전문가, 각계각층 대표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초당적·범국민적 통일정책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統一政策 수립 발표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대통령이 공명한 바와 같이 국회, 여·야, 국민의 지혜와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政黨도 統一問題를 政黨次元의 利益에 利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며, 우리 국민들도 “나는 민족통일을 부르짖으니까 節次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문제를 다른 목적에 利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政府는 앞으로 한편으로는 착실하게 정치의 民主化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 국민의 절대지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政權安保」

나 政派利益을 위한 統一問題의 이용이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發想과 試圖가 더 이상 통일을 향한 한국정치사의 前途에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다같이 警戒해야 할 것이다.

## 16. 정부가 「전민련」등 재야단체의 범민족대회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전민련」 등 재야단체의 범민족대회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먼저 「범민족 대회」란 어떻게 하자는 것이며, 북한측이 이 대회에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부터 알 필요가 있다.

한동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바 있고 현재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범민족대회」는 지난 '88년 8월 1일, 서울에서 일부 재야단체 인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발기한 다음, 북한측에 참가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12월 9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90년 「8·15 광복절」을 기해 남북한의 사회단체, 해외동포단체,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자고 역제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후 '89년에 들어와 우리측에서는 「전민련」 인사들이, 북한측에서는 윤기복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들이, 해외동포 사회에서는 일부 반정부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대회추진본부가 각기 결성되었고, '90년 6월 3일에는 서베를린에서 북한측과 해외동포 추진본부측의 대표들이 모여 제1차 예비실무회담을 가진바 있다. 이 1차 예비회담에서 「8·15 광복절」을 전후한 5일 동안 판문점, 평양, 서울등지에서 본대회를 비롯하여 부대행사들을 조직 시행한다는 것과 본대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등 11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1차 예비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대회의 공식명칭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대회」라 하며 대회의 개최 목적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데 있다. 또 이 대회 참가자는

남과 북, 해외에서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지지하며, 조국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당·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어야 하며 남과 북의 당국 대표도 참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위와 같은 내용만을 본다면 이 대회 성격이나 목적은 대단히 순수한 것으로서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모임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가리워진 진의를 들여다 보면 이 대회가 얼마나 편향된 정치 선전적 목적에 뜻을 둔 집회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첫째 이유는, 「전민련」의 조국통일위원회가 '90년 7월에 간행 배포한 「범민족대회 자료집」에서 「8·15 범민족 대회의 성격」을 “대중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미국과 노정권의 영구분단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동 자료집, P.57, 「전민련 8·15범민족대회 추진 결의」, '90. 3. 3)

둘째로는 이 대회 준비를 위해 결성된 남과 북, 해외동포측의 이른바 「추진본부」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회의 기본성격을 능히 추단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측의 추진본부가 「전민련」등 재야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측은 지금까지 반정부활동을 해 온 인사들 일색이며, 북한측의 「준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인 윤기복을 위원장으로 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문제점이 적지않다.

특히, 북한측의 준비위원회를 이루고 있는 「조평통」(현재 위원장은 허담이며, 부위원장중 이번 서울 예비회담 대표로 나온 사람이 전금철임)이란 북한측의 당국에 해당하는 조선노동당 외곽의 통일선전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셋째로 이 대회의 성격을 가늠하는데 있어서는 그 동안 이 대회의 참가자격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측을 비롯한 추진 본부측이 보여 온 태

도에서 시사되는 바가 큰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범민족 대회」가 이름 그대로 각계 각층을 망라한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내 58개 사회 단체들은 제2차 서울 예비회담에 임박하여 이 대회에 공동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이 뜻을 「전민련」등 추진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민련」측은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고는 뒤에서 이를 뒤엎고 나왔으며, 북한측은 이 대회의 참가대상은 이미 “북과 남, 해외의 추진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하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왔다. 게다가 “반공관계 어용단체, 반통일단체”들이 이 대회에 끼여들려 하는 것은 이 대회를 훼방하기 위한 책동이라 극력 비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1차 실무회담시에 스스로가 합의 공포한 대회 참가자격 규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행위로서, 우리는 북한측이 자기들이 지정하는 「전민련」, 「전대협」, 「전노협」 등 일부 단체만의 참가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북한측이 이 대회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바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회를 열자는 구실 아래 남한측과 해외동포 사회에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일부 반정부 내지 현실비판 세력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대남적화 목적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 나갈 발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북한측은 자기들이 도모하는 바 통일전선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단체들을 적극 배제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두번째로 노리는 바는 우리 사회내에 있는 일부 반정부 비판 세력들을 부추겨 당국과의 충돌을 유발하거나 온건 보수세력과의 불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통일문제에 대한 국론의 분열을 획책해 나가자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기도에서 보면 대회를 성사시키는 일 자체보다는 대남 선동과 선전의 소재와 호기를 포착하는 것이 주된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범민족대회」가 북한측이 뜻한 바 대로 열리면, 우리 당국을 완전 배제한 가운데 이 기회를 이용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두개조선정책 반대」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측이 일방적인 정치선전극을 벌일 수 있는 좋은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범민족대회」의 기본 성격이나 추진주체들의 구성 성향등으로 비추어 보아, 이런 모임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통일문제의 해결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이 대회 개최를 처음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분단된 지 45주년, 광복된 지 45주년이 되는 '90년 「8·15」를 맞이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이 대회가 표방하고 있는 바 대로 남과 북, 해외의 각계 각층을 망라한 대표들이 모여 조국의 통일에 기여할 길을 같이 찾아 보자는 순수한 목적의 모임이 된다면 대회 개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을 '90년 7월 23일에 있었던 3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지난 '90년 7월 26일과 27일에 있었던 서울 예비회담에서부터 우리측의 모든 단체들과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추진본부」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정부가 이같이 이 대회에 모든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토록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대회가 만일 북한측이 지정하는 일부 편파적인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참가하는 가운데 치러지게 되는 경우, 그 결과는 이 대회가 표방하고 있는바,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같은 민족간의 불화와 분열을 심화시키는 북한측 일방의 정치 선전무대로 전락될 것이 틀림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90년 7월 24일에 있었던 통일원과 「전민련」간의 제2차 서울 예비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과정 뿐만 아니라 동월 25일에 있었던 58개 유관단체 대표들과 「전민련」측 대표간의 회합에서 「전민련」측이 받아들여, 3차 평양 실무회담 때부터 관련 단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바 있다.

그러나 그후 북한 준비위원회측이 “남조선의 관제어용단체들이 참가하게 되면 이 대회의 신성한 성격과 취지가 흐려지고 대회의 성과적 진행에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다”는 이유로 이에 극력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전민련」측이 입장을 표변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우리측 대부분 단체들의 참가를 전면 거부하는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지난 '90년 7월 5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내왕을 적극 추진시켜 나갈데 대한 원칙적 입장”이란 제목하의 성명('90. 7. 6. 07:00, 평양방송 발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내왕에는 사상과 이념, 정견을 달리하는 정당·단체·각계각층인민들이 차별없이 다같이 동등하게 참가하여야 한다”는 그들이 내세워 온 기본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8·15범민족대회」가 7천만 민족성원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안팎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됨으로써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뜻있는 대회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대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릴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

## 17. “북한이 6·25 남침을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1950년 6월 25일 분단된 한반도에 民族相殘의 비극적인 南侵戰爭이 발발했다.

만 3년에 걸친 전쟁에서 수 백만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전국토가 폐허의 잿더미로 초토화되었다.

그리고 1천만이 넘는 離散家族과 수 많은 戰爭孤兒, 戰歿未亡人이 생겼다. 6·25의 南侵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休戰線 非武裝地帶의 완벽한 단절과 첨예화한 軍事的 對峙狀態로 인하여 상호간 증오와 적대감만이 팽배하게 남게되었다.

북한의 무모한 南侵挑釁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민족적 悲劇과 손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 왔는가? 또한 이로 인하여 얻은 것 이라고는 民族分斷을 더욱 심화시킨 것과 民族史의 엄청난 後退밖에 무엇을 얼마나 얻었는가? 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통일실현의 과정에서 다시는 同族相殘의 悲劇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6·26 南侵의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후손에게 옳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북한의 金日成集團이 역사앞에 사죄하고, 民族的 良心으로 돌아와 참회하며 진정으로 뉘우칠 때, 우리는 그 罪行을 용서할 수 있으나, 북한이 철면피하게도 적반하장격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여 「北侵說」 운운한다면, 우리는 천인공노 할 그 만행을 영원히 용서치 못 할 것이다.

## 〈남침설의 근거〉

오랜동안 세계의 많은 學者들은 「6·25 南侵說」을 주장하면서, 이는 “스탈린의 侵略的 帝國主義의 전략에 따라 金日成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종용했다”는 論旨를 펴 왔는데, 중요한 것을 정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라파에서의 미국의 對蘇 軍事的 압력을 極東으로 분산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南侵을 종용했다”는 「壓力分散說」

② “미국의 對日單獨平和條約을 체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南侵을 종용했다”는 「美·日條約牽制說」

③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및 미국의 極東防衛線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이른바 「에치슨선언(1950. 1)」을 기화로 南侵을 종용했다”는 「虛點攻擊說」

④ “미국의 저항력과 결의를 실험해 보기 위하여 남침을 종용했다”는 「美國抵抗決意實驗說」

⑤ “중국의 공산화에 이어 아시아 諸國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남침을 종용했다”는 「武力示威說」

⑥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되면 결국에는 미국과 중공이 참전케 될 것이므로 양국의 戰力을 소모시키기 위하여 남침을 종용했다”는 「美·中共對決誘導說」 또는 「美·中共戰力消耗誘導說」

⑦ “소련의 南進政策에 따라 극동지역에 전략적 不凍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침을 종용했다”는 「不凍港追求說」 등이다.

이와같은 學者들의 論旨를 종합해 볼때, 한가지 명백한 것은 6·25 남침은 소련의 스탈린에 의하여 종용되었고, 전쟁수행 능력이 없는 북한에게 軍備支援의 密約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認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1974년 말에 공개된 바 있는 미국의 「情報部覺書」(「北韓政權의 現勢(1950. 6. 19)」)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蘇聯과 人民朝鮮과의 關係(資料集)」 등에서 볼 때,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1970년에 刊行된 「호루시초프回顧錄」에서 6·25 南侵을 위한 음모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의 證言에 의하면 “1949년 말 金日成은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찾

아가서 南侵計劃을 설명하고 스탈린의 동의를 얻고자 했으며, 金日成은 ‘남조선을 총칼로 찌르기만 하면,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폭동이 순식간에 일어나 인민정권은 수립되고, 북조선의 통치하에 접수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스탈린으로 부터 치밀한 計劃樹立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후, 다시 모스크바를 再訪問하여 작성된 南侵計劃書를 제출하였다. 스탈린은 ‘美國介入을 우려’했으나, 김일성은 ‘速戰速決로 전쟁을 끝내면 미국의 개입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回顧錄은 “스탈린의 제의로 김일성을 시켜서 毛澤東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는 ‘김일성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 전쟁은 朝鮮人民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國內問題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6·25 南侵戰爭案은 蘇聯·中共·北韓에 의하여 確定되었던 것이다.<sup>1)</sup>

註1)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 (Boston, Little Brown & Co. 1970, pp. 367-369)

그리고 북한의 6·25 南侵에 관한 共產國에서 발행한 資料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고슬라비아, 學術院發刊「大百科辭典(1978. 第4卷 p.555)」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北韓軍隊가 38선을 넘어 먼저 南侵함으로써 발발되었다.”

② 中國語版「브리태니카 大百科辭典(1986)」“6·25전쟁은 北方軍이 不時에 南進하여 일어났다.”

끝으로 1990년 李相朝씨(6·25당시 北韓人民軍參謀長)가 歸國하여 證言한 내용에서 북한의 南侵은 다시한번 確認된 바 있다.

〈參考事項〉

① 1948. 12. 소련군 철수 후, 1949~1950. 6 소련은 정찰기 10대, 야크전투기 100대, 폭격기 70대, T-34형 탱크 100대, 중거리포 상당수 등 軍備支援.

② 북한은 1950. 6 현재 13만 5천명의 地上軍 확보.

③ 1950. 6. 人民軍精銳部隊 38선 접경 전역에 前進配置 완료.(美國陸軍省資料 參照)

## 18. 남북한 관계가 어느 단계에 가야 우리 사회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허용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體制 안에서 共產黨의 조직과 그 활동을 허용하느냐, 불허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북한 평화관계의 양상과 共產黨의 성격 여하에 좌우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國體를 보존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自由民主體制의 다양성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민족, 민주, 자유, 복지와 개인의 행복을 理想으로 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 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북한의 1인 독재체제의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조직과 활동을 우리 남쪽 지역에서도 허용해야 하는가의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平和共存과 교류·협력관계의 설정은 북한의 내부 정치·경제의 변화와 특히 對南觀의 수정을 요한다. 단순히 1회적인 성격의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對決關係가 清算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북한 간에 상호 內政不干渉의 제도화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北韓의 「조선로동당」과 같은 공산당의 활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條件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쌍방이 그 어떤 思想과 理念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이 허용되고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相互主義原則이 무시된 일방적 요구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사회적·법률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南北韓 쌍방이 다같이 이러한 條件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어떤 이념적 정당도 상대방의 體制를 부인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상대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표나 교리를 내포하고 있어도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면 현 북한의 유일당은 상대편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性格을 지니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당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하고 상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게 탄압 받거나 통제받아도 안된다. 政黨의 조직이나 활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성숙은 남북한이 民族共同體를 회복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정치적 공동체의 형성, 政治的 統合도 가능한 것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民主와 統一」은 모든 단체와 個人이 헌법에 보장된 제반 권리를 행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따라 모두 평등하게 경쟁하는 상태 등 보편적 개념의 民主가 아니다. 그들은 共產黨이 정권을 장악한 상태를 바로 「民主」 내지는 「統一」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북한식 사회주의적 이념 정당의 조직·활동이 보장되었다 하여도 그들은 민주화나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南北韓이 평화공존에 합의를 하고 교류가 부분적으로 있다하여도 北韓이 대남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共產黨은 소위 인민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민주와 통일」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體制는 「金日成의 절대적 무오류성」, 「북반부 사회주의 제도의 절대적 우월성」이라는 두가지 신화에 의해 지탱하고 있다. 이것은 南北韓간의 평화공존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 요인이다.

실질적인 남북한의 평화공존 관계, 진정한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한반도에서 戰爭 위협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북한의 對南共産化 革命의 가능성도 소멸한 상태가 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平和共存의 제도적 장치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우리 南의 정당들과 北의 「조선로동당」의 활동 범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려면 北韓도 실질적인 多黨制를 채택하고 北에서 우리의 政黨活動도 보장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같이 政治體制의 조정은 어디까지나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統一여건의 진전에 따라 우리는 西歐의 共産黨과 같이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 탈취를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와 複數政黨制에 의한 정권교체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용하는 공산당이나 좌익 정당의 조직과 활동도 검토할 단계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民族共同體가 공고히 발전되어 정치공동체로 이행될 단계에서는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하느냐, 않느냐하는 사항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모든 민족성원이 양 체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상태이고 또한 「조선로동당」도 불가피하게 변질되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시점에서는 교조적인 공산당의 활동을 아무리 허용한다 하여도 그 이념과 체제의 허점과 모순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의 對南共産化革命을 저지 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공산화 혁명전략을 완전 포기시킨 후, 평화공존관계와 교류·협력관계를 설정한다면 南北韓 간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포함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19. 분단 장기화에 따른 民族異質化 現況과 그 해소책은 무엇인가?

우리 民族과 國家의 재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 그 하나는 분단에서 연유하는 민족구성원이 겪는 유형 무형의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고, 제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한반도에 平和를 정착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斷絶된 生活을 영위함에 따라 나타나는 民族一體性的의 약화를 치유하기 위한 民族異質化的의 극복문제이다. 이 같은 課題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民族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여 정치적, 체제적 統一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民族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면 외형상의 政治的 統一에 앞서 민족적 信賴를 회복하고, 상호 교류·협력하여 민족적 同質性和一體性的의 회복이 요구된다. 東西獨의 統一도 이러한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한 취지의 하나도 남북간의 이질화를 해소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외형상의 체제적 통일은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통일을 강행한다 하여도 民族內部的의 갈등과 대립은 해소되지 못하고 심각한 民族分裂의 불씨가 생겨날 것이다.

지금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이질화는 분단의 장기화로 상호 다른 지역에서 왕래도 없이 격폐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한 「自然的 이질화 현상」도 있지만 북한 지역에서 共產化革命을 위해 인위적으로 진행시킨 「人爲的 이질화 현상」도 있다. 여기서 통일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인위적인 異質化 현상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共產政權이 들어서자마자, 우리 民族 傳統文化的 변형

과 말살, 民族史의 왜곡 날조, 言語의 변형등 우리 민족 전래의 固有性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이라는 목표하에 人間改造 教育和 思想學習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북한의 共產主義者들은 사회를 완전히 폐쇄시킨 상태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구호 아래 주민을 조직·통제하면서 政治教化를 통해 社會主義的民族을 따로 형성하려 시도해 왔다.

그 결과로 남북한의 民族 成員 간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民族共同體 意識은 사라져 가고, 상이한 가치관에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태를 보이는데 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民族의 근본 바탕이 되는 역사와 전통문화도 共有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北韓에서는 우리 民族史가 金日成 한 개인의 역사로 대치되었고 전통문화도 날조된 혁명전통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윤리 도덕도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이라 하여 혁명성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로 변질되었다. 우리민족의 고유 언어도 「혁명의 무기」로 간주되어 투쟁적이며 저속한 모양으로 변화하였다.

남북 이질화 현상이 주로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이 문을 열고 남북단절의 벽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사회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더 이상의 이질화를 막으며 이를 서서히 해소하여 同質性을 회복하는 첩경이다. 民族一體性의 회복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한반도의 緊張을 緩和하고 평화정착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이 社會開放과 交流協力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政府는 일찍부터 제도적인 보장 장치 마련에 노력해 왔는데, 1982년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한바 있으며, 특히 1988년에는 「7·7 특별선언」을 비롯한 대북 제의에서 民族異質化의 해소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학술, 문화 교류 기반

조성과 北韓産 物品의 자유 반입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나아가 1984년 고향 방문단의 상호방문과 금년 1990년에 성사된 남북한 축구 대표팀의 서울·평양 경기, 남북한 전통 음악단의 상호 교환 연주회등은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남북한의 同質化를 위한 노력과 그 전개 방향을 보다 심도있게 진단하는데에는 인류 문화사의 발전·전개과정에서 시사받는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발전에서 서로 相異한 文化的 要素가 조우하게 될 때, 보다 보편성이 있고 우수한 문화에 다른 문화 요소가 흡수 통합되어 왔다.

우리 南쪽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民族史의 측면에서 보다 正統성이 있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보다 普遍성이 있다면 북한 동포들이 우리 고유의 민족성을 회복하고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기나긴 民族史의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分斷史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또한 거시적으로 본다면 南北韓은 방법은 다르지만 각기 근대화 과정을 거쳐 産業社會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라는 같은 時代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단절된 상태에 있다하여도 의식상 상호 共感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남북한에 사는 민족성원은 같은 時代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호 共通要素도 갖고 있다. 이 공통요소를 발굴하여 확대시키는 길이 바로 민족 동질화를 이룩해 나가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의 형성·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共同體를 형성해 나가려는 쌍방의 노력이 있을 때, 남북한의 同質化는 이룩해 나갈 수 있다.

북한에서 아무리 세뇌교육에 의한 민족 이질화 정책을 실시한다 하여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남북 이질화 상태도 民族의

再結合이 불가능하도록 진척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남북한의 주민이 비록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斷絶된 세월을 보냈다 하여도 한국인의 피에 조상 전래로 부터 이어받은 심층적인 무의식과 基層文化까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血統 意識과 불교나 유교의 영향 요소(이를 북한에서는 봉건적 잔재라고 하고 있지만)는 쉽게 퇴색치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要素들은 民族의 一體性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時空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은 상호 敵對感이나 不信, 反目과 같이 共存의 時間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국 해소될 수 밖에 없는 표피적인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民族異質化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속단은 비현실적이며 비과학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II

---

남 북 대 화





## 20. 남북대화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남북으로 分斷된 조국과 민족을 자주적·평화적으로 統一하는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수단방법은,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 당사자가 상호 체제 존중의 바탕 위에 대등한 입장에서 마주앉아 相互主義 정신으로 민족의 懸案問題를 함께 풀어나가고, 통일조국을 더불어 설계·건설해 나가는 남북대화밖에 없다. 더욱이 오늘날의 우리 統一環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변4강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남북한간의 直接對話로 한반도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만큼 개선되었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분단의 유형면에서나 UN의 연례적 현안문제였던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이 원래는 국제문제였으나, 그동안 우리의 主體的 역량이 신장되는 한편 국제적 지배질서도 多極化·國益優先化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통일문제가 차츰 민족내부문제화되고, 우리민족의 自決領域이 차츰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초, 분단 26년만에 남북적십자회담으로 남북대화의 문이 열린 이래, 남북조절위원회의, 체육회담,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경제회담,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몇 가닥의 남북회담이 여러차례 개최되었지만, 남북한간의 실질관계 개선이나 회담 본연의 생산적 성과를 거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는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한의 입장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른 데 기인한다고 피상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는 南北對話를 호혜적 협상과 타협으로 民族의 현안문제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는 기본수단으로 보느냐, 상대방의 體制를 전복하고 革命을 부추기는 정치선전장으로 보느냐 하는 대화의 본질문제와 연관된다.

물론, 지난날 남북대화에 임한 쌍방의 기본입장의 차이는, 논리적으로는 “先平和, 後統一”을 지향한 우리 통일정책의 기초와, “남조선 혁

명이 곧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나 회담은 호혜·타협의 바탕 위에서 협상하는 協同의 場이지, 결코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한 鬭爭의 場은 아니다.

아무튼, 우리는 남북대화와 접촉의 폭을 넓혀 對決과 斷絶에서 비롯된 민족적 信賴를 회복하고,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에 平和를 定着시켜며, 사회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和合과 共同繁榮을 실현시킬 뿐 아니라 통일조국을 함께 설계하려는 호혜·평등의 입장인 데 반해, 북한측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우리 체제를 비방 선전하고 교란하는 혁명전술로 삼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

북한측이 그동안 모든 남북대화에서 회담의 성격이나 主題에 관계없이, 反共政策의 폐지, 駐韓美軍의 철수, 反共政權의 퇴진,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남조선사회의 자주화·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前提條件化하고 政治宣傳의 場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남북대화를 정치적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그들의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가령, 南北赤十字會談에서는 쌍방이 미리 합의한 대로 ①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 통보하고 ② 그들의 상호방문을 실현시키며 ③ 그들간의 편지를 주고 받게 하고 ④ 희망에 따라 재결합을 시키고 ⑤ 그밖에 인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血肉間 離散의 아픔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른바 ‘조건·환경개선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적십자회담과는 관계도 없는 駐韓美軍 철수와 반공정책 및 법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 다면서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회담을 중단시켰다. 그후 1989년 재개된 적십자회담(실무대표접촉)에서 2차 고향방문단 교환문제는 갖은 난관끝에 교환방문 규모와 日字까지 합의하였으나 사회개방과 교환방문 실현을 기피하는 북한측은 쌍방이 이미 합의한 공연물 선정원

칙을 무시하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꾸며놓은 혁명가극(피바다)을 들고나와 이를 무기연기케 만들었다.

南北經濟會談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역과 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조선 실업자 구제’나 ‘경제적합작’만을 선전하다가, 미리 의견접근을 본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이나 교역통로 개설(경의선 철도 연결 및 교역항 지정) 문제등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된 회담까지 중단시켰다.

'90년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선수단명칭, 團旗, 團歌등에 승意하는등 북한측의 정치적 수요와 입장을 우리가 수용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측 제안에 대해 시종일관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유산시켰다.

國會會談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구다운 정치문제를 다루면 된다. 統一祖國의 未來像이라든지 남북한의 정치체제적 對決의 해소방안같은 것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정부 당국간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군사문제를 들고 나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만 하자면서, 여기에 정당·사회단체 대표와 각계 개별 인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거나,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의제로 제시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다가 중단시켰다.

한편 1년 반에 걸친 예비회담 끝에 1990년 9월 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은 오직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에만 본질적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에 전제되어야 할 교류·협력 및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이른바 「3개항의 긴급문제」로 유엔가입문제, 팀스피리트 훈련문제(완전 중지하거나 2~3년만이라도 중지할 것) 및 밀입북 구축자 석방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과 함께 남북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對美平和協定을 체결

해야만 對決狀態와 停戰狀態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의 대화자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대화자세는 근본적으로 북한측이 평화와 평화적 統一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고 대화에 호응하는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팎의 사정 때문일 뿐, 남북대화를 통한 실질관계 개선, 민족적 同質性 회복, 민족의 화합 등 평화적통일에는 아직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對南革命路線에 변화가 없는 한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을 얼핏 보면 우리는 平和共存 지향적인데 북한은 統一지향적인 것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논리가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은 곧 드러난다. 적십자회담에서 통일만 되면 이산가족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전한다. 그렇다면 통일회담, 정치회담에나 나와야지 적십자회담에 나와 의제까지 합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주’를 내세우지만 미국과의 3자회담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민족대단결’을 표방하지만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10대 시정방침’을 보면, 연방제로 통일된 뒤에나 경제교류·협력도 하고 사회개방도 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宣傳面에 치중한 대화 부정적 입장과 자세는 대남혁명전략이라는 教條的 기본노선의 문제도 있지만 東歐의 급격한 變革에 직면하여 ‘地上樂園’의 虛像이 노출되고 외부의 충격이 두려운 체제내부 사정에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1.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의한 不可侵宣를 우리 측이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지난 1974년 1월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을 북한측에 제의한 이래 이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노태우 대통령은 제 43차 유엔총회 연설(1988. 10. 18)과 제45주년 광복절 경축사(1990. 8. 15)에서 불가침선언이나 불가침협정의 체결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북한측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1989년 9월 11일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할 「민족공동체 헌장」에 통일을 위한 기본법안과 평화를 위한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월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돌연 「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 초안을 제시하고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요구하고 나왔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우선 채택하고 그 토대위에서 「불가침」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공히 「不可侵」 문제를 논의, 합의하자는 것인데, 남북한의 기본입장과 방안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북한측의 방안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 「不可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

첫째, 남북한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이고 이름만의 「선언」을 하자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남북간에 현존하는 대결구조의 해체와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하여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수반된 「불가침」의 약속을 하자는 것

이다.

둘째, 「불가침」의 실천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까지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의 왕래는 커녕 이산가족들이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 주고받을 수 없는 단절과 불신의 상태에 있으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남과 북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 방안에 관하여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불가침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상호실체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채택이야말로 불가침합의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치·군사 분과위원회와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류협력 실시 문제와 통행·통신·경제교류 협력문제, 그리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불가침 방안을 협의하여 구체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는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포함하여 남북 쌍방간에 관계를 개선해 나갈 기본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침 협정과 불가침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불가침협정의 이행보장을 확인하는 증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북한당국이 명실상부한 불가침협정의 내용을 체결하고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고 비방·중상하지 말며,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상봉방문을 즉각 실현하여 그

들의 고통과 불행을 해소하며, 군비경쟁지양,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비 감축을 실시하며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무력불사용, 침략·파괴·전복 행위금지등)를 채택할 것과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및 국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해 놓고 있다.

▲ 「불가침 선언」 발표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과 저의

첫째, 북한이 내놓은 「불가침선언」 초안은 보장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침」의 실천의지의 표명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북한이 아직도 불가침협정의 전제가 되는 상호실체 존중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기피하면서, 대남혁명노선을 포기치 않고, 인도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이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을 합의했다는 사실만을 얻어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숨은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북간의 「불가침」합의를 명분으로 하여 이를 그들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대미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과 연계시켜 나가며,

- 군축에 대한 여론 조성을 통해 그들의 우세한 전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위력 강화를 저지하는 한편,

-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우리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우리 내부의 법질서 도전세력을 선동하며 안보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이와 함께 경제난 등 그들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름만의 선언을 내세워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획득해 보자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불가침선언」을 하자고 하면서 들고 나온 주장의 내용과 그것이 가지는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체결하려는 불가침협정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조류에 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과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이 아

나라 아직도 대내외 선전과 정치심리전 차원의 불순한 목적에서 「상징적 선언」을 유도하려는 저의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측 제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쳐놓고 「불가침선언」의 합의만을 서두르고 있을 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상호 신뢰의 토대 마련에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화해와 협력의 물결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총리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제를 파괴·교란시키기 위한 적대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즉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우리측 회담대표들을 중상·비방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 「식민지예속정권」 등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비난을 마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진정으로 「불가침선언」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대화의 상대이며 「불가침협정」의 체결 당사자인 우리측을 존중하고 최소한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회담에 임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 특히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 우리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내부의 범법자들을 부추기면서 파괴적 선동을 일삼는 시대착오의 대남노선을 포기하며,

-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불가침」의 보장장치를 강구하는 데 흔쾌히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1)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확인,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 추진, 신뢰 구축,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공동노력 등

제 1 조 : 상대방 체제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비방 · 중상 중지

제 2 조 : 신문 · 라디오 · TV ·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

제 3 조 : 통행, 통신,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제 4 조 :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 · 상봉 · 방문의 무조건 즉각 실시  
및 재결합 추진

제 5 조 : 군비경쟁 지양, 군사적 신뢰 구축 및 단계적 군비 감축

제 6 조 :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무력 불사용, 침략 · 파괴 · 전  
복행위 금지)

제 7 조 :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국제적 평화보  
장장치 마련

제 8 조 : 국제무대에서의 경쟁 · 대결 중지

제 9 조 : 합의서 발표 후 1개월 내 교류 · 협력 및 정치 · 군사 분과  
위원회 설치

제10조 :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 통고 후 발효

※ 참고2) 「정치 ·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우리측이 제시  
한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

1.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 불사용 및 어떠한 형태의 침략행위도 하지 않  
음.
2. 상호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은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으로 해결함.
3. 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각각 관할해 온 영역으로 함.
4. 상대방을 파괴 · 전복 · 교란하려는 일체의 정책노선 포기
5.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상태의 해소 및 불가침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함.

① 군사정보 교환, 군 인사의 상호 방문 및 교류 실시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부대 기동훈련이나 이동의 사전 상호 통

보 및 참관단 교환 초청

- ③ 군사적 긴급사태 예방 및 확대 방지를 위해 군사당국자간에 직통 전화 설치·운영
  - ④ 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력의 불균형 시정
  - 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완충지대화 및 평화적 목적 이용
  - ⑥ 보장조치 이행 검증과 기습공격 예방을 위해 현장검증단과 상주 감시단 교환 운영
6. 불가침에 관한 합의사항 실천방안 강구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7. 불가침에 관한 국제적 보장조치 강구
8. 쌍방이 이미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2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의 성격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1990년 8월 1일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을 제정· 공포했다.(法律 第4239號)

## 〈性格〉

이 法律은 南北間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공존공영의 디딤돌이 되고, 통일실현의 잠정적인 접근단계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 領域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 예술적인 것이든, 인도적인 것이든, 체육적인 것이든 그것이 民族共同體임을 확인하고, 통일에의 意志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에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民族共同體를 회복하는 것이 통일실현을 위한 제1차적 先決課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많을수록 좋고, 그 교류· 협력의 窓口도 많을수록 좋겠지만, 百家爭鳴式의 무질서와 混亂은 아무런 결실도 없이 民族力量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 7월 20일 「7·20 民族大交流」를 宣言하게 되었다.

이 宣言은 광복 45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정부의 平和統一政策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기려는 憧憬에서 나온 역사적인 宣言이었고 응당한 措置였다.

앞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남북간의 다방면적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국자의 保障과 支援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人的·物的交流의 실현은 분단의 장벽인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감안하여 通行保障, 身邊의 安全, 便宜提供問題 등 정부당국에 위임된 固有機能과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指導, 案內, 調整의 역할을 마땅히 담당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장치인 法律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은 民族共同體를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人的·物的交流와 協力を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交流·協力에 대한 承認·申告節次」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特別法の 性格」을 갖는다.

#### 〈主要内容〉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은 全30個 條項과 附則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목적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② 他法律과의 관계 :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他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함.
- ③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설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함.
- ④ 協議會의 구성 : 위원장 1인,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함.(幹事 1人 包含)
- ⑤ 協議會의 기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정·기본원칙 수립.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許可·承認,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 交易對象品目の 범위 결정.
  - 協力事業에 대한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支援.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협조 추진.
- ⑥ 實務委員會：協議會의 議案準備, 委任事務의 處理.
- ⑦ 南北往來
- 남북왕래를 할 때는 證明書(통일원 장관이 발급)를 소지해야 함.
  - 在外國民은 在外公館長에게 申告해야 함.
  - 남북한 주민의 會合·通信·接觸時에는 통일원 장관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 ⑧ 海外同胞의 出入保障：旅行證明書를 소지해야 함.
- ⑨ 남북왕래에 대한 심사：出入場所에서 남북을 왕래하고자 할 때, 審査를 받아야 함.
- ⑩ 物品의 반출·반입 승인：物品, 去來形態,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⑪ 交易對象物品의 공고：協議會의 의결을 거쳐 공고 함.
- ⑫ 協力事業의 승인：協力事業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⑬ 결재업무의 취급기관：취급기관을 지정함.
- ⑭ 수송기관의 운행：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⑮ 통신역무의 제공：우편·전기통신의 역무를 제공 함.
- ⑯ 남북교류·협력의 支援：필요에 따라 政府補助金·其他의 지원을 제공 함.
- ⑰ 他法律의 準用：외환관리법·외자도입법·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보험법·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감면

규제법 ·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법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을 준용.

⑱ 벌칙 : 이 법률을 위반 했을 시에는 벌칙을 적용, 양벌규정, 형의 輕減을 시행.

⑲ 북한주민 擬制 :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구성원은 이를 北韓住民으로 본다.

이 밖에 2개 항의 附則을 두었다.

<參考事項>

- 1990. 8. 9 大統領令 제13071호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施行令」을 公布 했다.
- 이 施行令은 제6장 제53조로 되어 있다.
  - ① 제1장 총칙
  - ②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③ 제3장 남북한 왕래
  - ④ 제4장 교역
  - ⑤ 제5장 협력사업
  - ⑥ 제6장 보칙

## 23. 북한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북한 개방화의 의미는 대내 정치의 민주화와 대외 문호개방, 그리고 대남 관계개선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북한이 지난 45년간 견지해온 1당 독재체제와 혁명일변도의 고립폐쇄정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를 확립하고 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 선진사회에 문호를 개방하여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기술및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관계에서도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북한사회의 발전은 물론 민족의 번영과 통일조국을 이룩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을 개방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노동당 1당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강화하는 명목으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고립 폐쇄적인 자주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산화를 이룩한다는 허황된 선전을 계속하고 한국내의 일부 급진좌경운동권의 반정부적 소요를 부추겨 반미지주화니 친북연공이니 하면서 선전·선동하고 또 남한 사회의 부분적 모순을 부각시켜, 자신의 폐쇄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개방화는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허구와 대남 소요선동의 모순이 스스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북한은 개방화 그 자체를 체제의 붕괴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방을 두려워하고 폐쇄정책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북한체제가 안고있는 내재적 모순을 고려하여 개방화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인내와 자제, 그리고 포용력으로 북한개방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개방

하기 위해서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비록 북한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허구적이고 선전적인 협상 수단으로서 소위 “통일전선 구축전술”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꾸준히 두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비공개리에 무상으로 경제적 지원도 강구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북한의 이념종주국인 중국과 소련을 통해 북한의 고립폐쇄정책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24. 남북적십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전망은?

북한측은 198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본회담 이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쌍방간에 합의한 제11차 본회담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우리측의 거듭된 회담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외면해 오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회담자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기본입장이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려는 인도주의 입장이라기 보다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통한 대남적화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같은 북한의 입장과 기도는 다음과 같은 그동안의 회담경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쌍방이 이미 합의한 의제5개항에 따라 순수한 인도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른바 「조건·환경개선론」이란 것을 들고 나와 적십자회담과는 거리가 먼 주한미군철수와 반공정책 및 관련법규의 철폐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회담을 중단시킨바 있다.

또한 북한측은 80년대 중반 재개된 적십자본회담 역시 3차례의 진행끝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중단시켜 놓고 있다. 우리측은 1988년 7월 13일 적십자 본회담의 재개 및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했으며, 1989년 1월 24일에는 제11차 적십자 본회담의 개최촉구와 함께 4,346건의 尋人依頼書까지 동봉해 보내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절박성을 강조하고 본회담 재개를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이러한 우리측 제의에 대해 거부입장만 표시하다가 1989

년 5월 갑자기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해 적십자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고 이는 이른바 「문익환 목사와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간에 합의한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는가 하면,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밀입북하였던 임수경양의 귀환문제를 둘러싸고 판문점을 정치 선전장화하고 적십자사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 회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남북간에는 1989년 9월부터 12월 사이 남북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7차례 갖고 ①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1989년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하며 ②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을 1989년 12월 8일 교환한다는데 합의를 보고, 이와 관련한 방문기간, 방문지, 규모, 예술 공연의 실황중계문제 등 거의 모든 기본문제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러한 실무대표접촉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미 쌍방간 합의한 공연물 선정원칙을 무시하고 계급성·혁명성·정치이념성을 고취하고 특정사회건설을 선동하며 심지어 김일성 위상화를 위해 꾸며놓은 혁명가극(피바다)까지 서울에 와서 공연할 것을 들고 나오므로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은 물론, 합의된 날짜의 제11차 본회담 개최마저 무산시켰다.

북한측이 이렇게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결렬시킨 배경에는 당시 동구 공산권의 일대 변혁의 바람이 일어나 공산정권들이 붕괴되자 이러한 변혁의 바람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유입가능성을 예방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 응해 나온 이면에는 동접촉의 성사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남쪽에서의 「계급혁명여건 조성」이라는 정치적 伏線이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과 기도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쌍방 합

의에 따라 이루어진 제 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90. 11. 8)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바, 同接觸에서 우리측은 혁명가극의 공연이 예술공연단 교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쌍방이 합의한 예술공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民族歌劇이나 순수한 民族傳統의 가무극 같은 것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은 「꽃파는 처녀」를 서울에서 공연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변하면서 혁명가극 공연문제를 고향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화하는 한편, 제11차 적십자본회담 개최문제도 「先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後 本會談開催」 입장을 내세워 본회담 재개를 거부함으로써 1년여만에 재개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또다시 결렬시켰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적십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단순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회담자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십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기본입장이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려는 순수한 인도주의 입장이 아니라 남쪽에서의 계급혁명여건 조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데 보다 더 큰 이유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소를 주축으로하는 東·西間의 대결구조가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길로 나가는 세기적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국제적 기류는 한반도 주변환경에도 그 영향이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더구나 이제 이산가족문제와 같은 인도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정치·이념 이전의 문제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와 소련·중국간에도 이미 이산가족의 문제는 해소된 상황이나 다름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만이 언제까지나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묶어두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등 전반적인 남북한관계발전예 비추어 그 전망을 내

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제 북한도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 해결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더이상 되풀이 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25.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 ‘민주’, ‘민족’, ‘평화’란 용어는 우리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共產主義者들이 사용하는 용어, 특히 북한에서 우리와 같은 어구들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政治的 用語인 경우에는 그 뜻과 概念은 우리와 다르다. 그 말의 표현과 형식은 같지만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허다하다.

共產主義者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어를 교란 전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언어의 二重戰術이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言語를 「혁명의 무기」로 규정하여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표현, 전달하려는 이미지에 현혹되거나 속아넘어 가는 수가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人民’이라는 단어를 기본 용어로서 즐겨 사용한다. 이들이 말하는 인민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國民이나 民衆과는 다른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낱말이다. 자유 민주체제에서 국민이라면 어떤 階級이나 階層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다른 공산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이란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민」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인민이란 지배와 착취를 받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 공산당에 동조하는 사람에 국한하여 인민의 개념을 적용한다. 따라서 人民이란 총체적이며 보편적 개념이 아닌 계급적 개념인 것이다. 요는 共產革命의 主動者와 그 혁명활동에 동조할 수 있는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북한에서는 특히 「인민」이란 말을 전한반도의 공산화 혁명의 전략적 차원에서 사용한다. 그들에게 인민이란 통일전선 형성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계급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공산화 혁명의 추진 단계에 따라 그 범위가 항상 바뀔 수 있는 가변성도 갖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 혹은 「민주주의」는 인민, 즉 공산혁명을 지지·찬동하는 집단을 본위로 하는 정치방식이나 사회조직 원리를 뜻하는 개념이다. 그들이 말하는 民主란 집단주의 원리 또는 민주집중제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에 個人的 존재는 부인되며, 다만 집단이나 階層的 組織을 통한 인민에 대한 지도 관리를 말한다.

북한이나 다른 공산국가에서 말하는 민주에는 但書로서 人民이라는 한정어가 반드시 따라 붙는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民主主義는 우선 개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민주체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규정하고 이런 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민주주의로 매도한다. 반대로 그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피착취계급의 민주주의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黨組織등 모든 정치기관의 운영관리를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의 민주주의 역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서 집단주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民主란 중앙집권제의 내용을 합리화시키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때 북한에서 사용하는 민주혹은 민주주의란 용어는 개인의 人權이나 自由·平等을 기본 내용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민주 개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民族」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전한 반도의 共產化 統一의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 혼란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대남제의를 할 때에나 남북 회담 석상에서 민족이란 말을 항상 강조하는데, 그 용어의 사용 빈도는 오히려 우리보다 많다. 북한에서는 6·25 남침을 「민족해방 전쟁」이라 부르며, 1970년 까지는 소위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反帝·反封

建 민족해방」으로 규정하여 민족해방을 계급혁명과 함께 강조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부르짖는등, 민족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듯 선전하나 「民族主義」 그 자체는 본질에 있어 부르주아적이고, 과도적이며 반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도 대남혁명전략을 구사할 때에나 「民族」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대내 주민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항상 民族보다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우선시 한다. 스탈린은 “민족이란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資本主義의 타도와 함께 소멸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원래 民族이란 혈연, 지연과 같은 自然的 共通性의 기초위에 언어, 전통, 풍습, 종교와 같은 문화적 공통성을 갖는 運命共同體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특정한 민족의식, 민족성, 민족정신을 共有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종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 民族의 統一을 한반도의 공산화, 혹은 계급혁명의 일환으로 보는 바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신봉하면서도 「民族」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共產化戰術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 목표의 하나는 전한반도의 공산화에 주요 장애물로 보고 있는 駐韓美軍의 철수, 미국의 對韓安保支援 중단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反美鬭爭을 선동·고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내에서 민족주의 혹은 자주와 민중을 표방하며 반체제·반정부 활동을 전개하는 일부 세력을 포섭하여 聯共合作이나 통일전선의 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平和」는 물론 다른 공산국가들에서 이제까지 사용하던 바와 같은 의미와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말은 글자 그대로 서로가 화목하며 평온한 상

태를 뜻하는, 즉 전쟁이나 다툼, 소란에 반대되는 靜의 概念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平和의 개념은 전세계에서, 또는 한 국가 사회내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일체의 要素가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動的이며 투쟁적인 개념인 것이다. 그들의 발상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포함한 모든 비공산주의적 요소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살된 상태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한다.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平和는 곧 反動인 것이며, 공산혁명을 위한 人民戰爭의 수행은 平和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共產主義者들이 平和를 강조할 때는 물리적인 힘이 부족한 경우로, 양성적이고 노골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적대와 비방, 파괴와 내부 교란등 음성적인 전쟁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양성적이건 음성적이건 공산정권의 수립때까지 전쟁은 무단히 지속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平和觀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란 어디까지나 전쟁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 26. 북한이 김일성연설을 통해 주장한 이른바 『통일 5개방침』이란 무엇인가?

북한은 1990년 5월 24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김일성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른바 “통일과 남북한간의 대화 및 인적교류문제를 새롭게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통일 5개방침”을 제시했다.

여기서 제시된 “통일 5개방침”의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미·북한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사이에는 “불가침선언”을 하며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은 “전면개방”하고 “자유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에 구축된 소위 “콘크리트 장벽”을 제거하고 보안법 철폐 등 한국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법을 어기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구속된 밀입북자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정책도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해온 이른바, “단일국호”와 “단일의석”으로 남북이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차승인” 정책과 북방외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대화와 교류등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대화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남과북의 각계 각층 사람들이 함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범민족대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의 대화를 “전민족 대화”로 부르면서 정당·사회 단체 대표가 만나는 “정치협상회의”와 민간인들이 만나는 “민간급대화”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반대하고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주장을 남쪽의 통일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소위 전민족적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을 각각 대표하는 당국간의 대화를 통한 통일협상보다는 남과 북을 구분하지 말고 민간차원에서 통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속하고 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공식화해야 당국차원의 통일주장을 극복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북한의 주장은 우선 국제정세 변화와 연관시켜 볼때, 다음과 같은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공산권 각국들이 1당독제 체제를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로 개편하면서 구라파 사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추세이며 동서독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도로 통일되는등 국제사회에는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세계각국들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고 남북한 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도 남북대화과 교류, 그리고 평화의 노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고조된 때문에 이른바 “통일 5개방침”이란 것을 발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상기 5개항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이 반복주장해 온 사항들인바,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한국측에 있다는 것으로 매도한 것들이다. 첫째, 한반도의 군사긴장은 한국의 한·미군합동군사 훈련과 주한미군때문이라는 것이며 둘째, 남북한간의 자유왕래, 개방이 안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등 한국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때문이라는 주장이며 셋째, 남북대화는

한국정부가 민간차원의 접촉과 대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탄압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넷째, 남북대화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즉,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이와같은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소위 “통일 5개 방침”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인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대화교착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바,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화를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을 희석시키며 남북대화외 교류·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긴장완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대북제의를 계속 거부할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27. 統一論議를 개방하고 民間交流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對北窓  
口를 一元化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정부는 1988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논의의 적극개방과 활성화  
화를 뒷받침하되, 對北提議와 接觸의 窓口는 政府로 일원화되어야 한  
다는 基本立場을 공식 정리·발표한 바 있다.

민족통일로 향한 전진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을 비롯 남북한 주민의 人的 交流와  
함께 物的 交流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1990. 7. 14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은 남북간 인적왕래, 교역, 협력사업에 관한 전면개방을 실현  
하려는 정부의 통일의를 천명한 것인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북  
한 주민간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접촉 승  
인을 신청하면 법적하지가 없는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남북한 주민간 접촉·방문에 관한 승인절차 및 정부의 조치  
사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7. 14)에 근거))

그러나 統一論議는 憲政秩序에 기초를 두고 實定法의 테두리 안에  
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對北提議나 접촉의 창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북한측을 상대로 對  
北提議나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은 통일논의의 자유화와 실질적인 남  
북관계 改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대북제의나 접촉  
에 관한 限, 자제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함으로써 중구난방적이고 국론분열적인 주장과 행동의 가능성을 예방  
하고, 북한의 對南統一戰線戰術에 이용될 소지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그리고 남북통행과 신변보장 안내를 전담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주선·조정·안내 없이 특정 개인과 집단이 임의대로 休戰線을 오가는 대화제의와 접촉을 무조건 강행하려 할 때 나타날 혼란과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남북대화, 접촉, 교류의 主體는 분명 정부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또 독점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남북간에 진행되어 온 多方面의 對話가 이를 웅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적십자회담은 적십자사와 대표들이 중심이 되고, 체육회담은 체육계인사들이 대표가 되며,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되어 진행되어 왔다. 또 이 모든 회담의 경우 사전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의·의견조정·협조를 거침으로써 남북관계의 현황, 북한측의 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예상상태 등을 사전검토하고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정립하여 회담에 대응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회담을 용의주도하게 이끌어 올수 있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대화는 自然人 사이의 대화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어떤 형태의 대화·접촉이든 공식적인 것인 한 그것은 곧 민족적 양심과 민족이익 우선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명예를 대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0년도에 남북한 정부당국의 협조하에 원활하게 실현된 통일축구 교환경기, 통일 전통음악제 교환공연의 경우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은 統一의 名分을 절대가치로 인정한 나머지 그 名分을 獨善의으로 利用하는 愚를 犯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個人이든 集團이든 직접나서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特權的 發想은 이미 責任性과 節制로 부터 이탈한 행위임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다. 대화와 통일에 대한 신중론이

反統一的인 것으로 매도되고, 體制와 政府를 반대·배척하기 위한 政治鬭爭의 手段으로 ‘무조건 대화’, ‘무조건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統一志向的인 것으로 옹호되는 현상은 결코 통일에 이로울 것이 없다.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提議·對話·접촉·교류의 진행은 책임있는 정부의 주선과 협조안내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건설적이라 할 것이다.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통행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교통순경이 존재하고, 그의 역할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북접촉의 창구와 신변 안전보장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민간·국회·정부·사회단체등의 접촉·교류를 원활히 추진, 보장할 수 있는 「통일교통순경」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統一論議는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 하는 진실성, 합목적성, 목표지향성, 현실성과 함께 합헌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주체는 국민의 수임기관인 정부이다.

따라서 통일논의를 확대개방하고 자유화하면서, 동시에 民間交流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民間交流協議會를 活用하고, 대북창구를 정부로 일원화 한다는 기본입장은 결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남북한 주민간 접촉〉

#### ○ 신청방법

접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접촉승인을 신청함.(시행령 제19조 제2항)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함.(시행령 제19조 제3항)

※ 남북한 주민이 접촉(왕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 장관의 승인(증명서 발급)을 득해야 한다.(재외국민은 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법제9조 3항, 2항)

○ 구비서류

- ① 북한주민 접촉신청서
- ② 신원진술서
- ③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사후 신고로 사전신고를 갈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시행령 제19조 제4항)

- ①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자
- ②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③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함)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④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⑤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통일원장관에게 구비서류 제출(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 구비서류

- ①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신원진술서
- ③ 사진 4매(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 ④ 병역대상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하는 허가서 혹은 신고서
- 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예, 초청장)

⑥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시행령 제10조 제1항)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

○ 구비서류

- ①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사진 4매(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 ③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재외국민의 북한왕래 경우에는 출발 5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함(시행령 18조 2항)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18조 3항).

○ 증명서 발급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사항 : 중요사항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사항

- ① 100인 이상의 단체 왕래
- ② 정치적 목적의 왕래
- ③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시행령 제12조)

○ 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한간 왕래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

○ 출입심사

남북간을 왕래하는 주민에 대해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를 함.(법 제



11조)

출입심사의 내용

- ① 신원확인
- ②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 ③ 검역
- ④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 ⑤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심사확인

출입심사공무원은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을 날인하여야 함.(시행령 제23조)

## 28. 통일문제 접근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것같이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북한의 통일접근자세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일전략과 접근방법, 통일노선과 전술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적극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적극성이라는 것이 어떤 價値 실현을 위한 적극성이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바꾸어 말해서, 민족의 염원에 부합하는 통일정책인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통일접근 방법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적극성이라는 것은 正反對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분단의 역사와 현실 속에 투영된 북한의 통일논리와 행태의 「적극성」을 남북 비교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통일전략과 노선이 이른바 「남조선해방」을 전제로 한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교조적, 비타협적인 征服의 논리, 혁명의 논리이기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북한체제의 최고규범인 「로동당 규약」(前文)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노선에 따라 북한공산집단은 공산화통일의 수단으로서 ① 무력에 의한 ‘남조선해방’과 ②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도와서 남쪽의 인민민주정권과 聯共合作하여 공산화하겠다는 두 가지 방법을 써왔다. 그들은 前者를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後者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자 공히 전쟁과 폭력이 수반되는 反平和, 反文明的 노선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통일전략과 노선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모험주의

적 노선인가를 드러낸 증거로서는 민족적 참화와 국토의 초토화를 가져오고 오늘날까지도 민족화합과 평화적 통일의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6·25 남침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지금까지도 이른바 ‘남조선해방의 결정적 시기’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정복·해방·공산화를 추구하는 통일노선은 적극적인일수록 反平和, 反民族, 反文明的인 해악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서, 상호 체제 인정의 바탕 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족의 공존 공영을 도모하고 민족사회를 통합하여 국가적 통일까지 완성시키지는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같이 보이지만 합목적성과 현실성이 있고, 민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의 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이같은 교조적 통일노선에 따라, 통일만 되면 이산가족 문제도 교류·협력문제도 일괄 타결된다는 식으로 통일지상주의적 명분론을 펴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려 정치군사문제의 先決을 주장하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쌍방 정부당국의 대화보다는 “각당, 각과, 각계 각층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아래 위장 평화공세를 펴으로써, 신뢰구축,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사회개방을 통한 민족사회의 통합, 정치적 통일이라는 단계적 점진적 통일접근 방법을 추진하는 남한보다 통일에 더 적극적인 것같은 정치선전을 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우리의 통일접근자세를 “두개 조선 조작 책동”이니 “영구분단책”이라고 왜곡·비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측은 남북대화도 실질관계 개선이나 교류·협력·사회개방을 통한 민족의 공동번영 실현과 같은 생산적 대화에는 뜻이 없고 이를 통일선전전술 차원의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폐쇄 속에서 기만과 억압으로 통제해 온 북한 체제의 취약성과 이른바 “地上樂園”의 허상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 한 세습

독재체제의 屬性에서 비롯된 사회개방의 거부논리, 교류·협력의 거부 논리이지, 결코 통일접근자세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남북사회의 전면개방과 자유왕래를 표방하지만, 이것도 많은 콘크리트 장벽의 철거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뿐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거부하여 왔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이 참가해야 한다는 「범민족대회」”를 선전했지만, 남한의 58개 사회단체를 “반통일 어용단체”라는 구실로 그 참가를 거부하고 반체제적인 「전대협」, 「전민련」만을 선호한 행태를 보였으며, 4대국 교차승인과 한·소수교를 영구분단책이라고 왜곡·비방하여 왔지만, 그들은 日·美와의 관계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추구하는 것 등이 바로 대남전략적 통일 선전논리의 虛實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셋째,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더 명료하고 적극적인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 통일방안은 민족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당사자가 협의·결정·해결해 나가자는 상호주의적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고려」라는 國號도, 「聯邦制」라는 국가형태도 일방적으로 결정 제시하고, 남북체제의 공존을 표방하였으며, 연방기구에 해외동포 대표까지 포함시켰으니 外見上 포용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 實體는 「남조선 해방」을 전제로 한 聯共合作方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화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실은 국호와 국가형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 평화적이다.

끝으로, 남북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해도 북한이 훨씬 적극적이고 一色化되어 있다. 「혁명의 神話」, 「統一의 신화」, 「행복의 신화」라는 이른바 3大神話로 세뇌되어 노래하고 춤추는 꼭두각시 사회가 바로 오늘의 북한폐쇄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은 이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이라는 이름아래 통제 동원되고, 억압·착취 당하고 있다.

어떻든 이같은 否定的 적극성은 적극적일수록 민족의 비극만을 연

장시킬 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29.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제 2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90. 11. 13-17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양국대표단은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방어훈련이 전쟁억지력의 유지에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방어적 훈련은 어떠한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계속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배치하고 거의 사전경고 없이 한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아직도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항이 아직 한·미 양국의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계속 요구해 오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은, 최근 지구상의 해빙무드를 바꿔놓은 걸프 사태와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 거부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60년대 이후 소위 4대군사노선을 강화함에 따라 대폭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전 지상병력의 75%이상을 휴전선 부근에 실전배치해 놓음으로써 대남무력도발의 가능성을 尙存케 하고 있다.

韓·美팀스피리트 합동 훈련은 이와같이 북한의 4대군사노선강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증강, 월남의 공산화, 김일성의 북경발언, 거기에다가 '76년 8월 18일 도끼만행사건 등 한반도에서 緊張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자위적 對應措置의 하나로 실시해왔다.

우리는 한·미 팀스피리트 合同軍事훈련을 사실상 공개리에 年例의 으로 실시해 왔다. 즉 훈련의 규모, 일시, 作戰地域 등을 공개리에 실시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1982年 부터는 매년 북한측에 팀스피리트 훈련계획을 事前通報해 왔을뿐만 아니라 參觀人을 초청까지 했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 참관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팀스피리트훈련이 공개적인 自衛的 수단으로 年例行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침도발이니 北侵준비중이니 하면서 악의에 찬 비난을 가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때마다 이를 구실로 북한에서 ‘전쟁준비총동원령’을 내려 북한내부를 긴장케 하고, 북한주민 총동원의 수단으로써 악용하고 있으며 金日成體制에 대한 불만을 그들 내부의 전쟁준비총동원령과 주민동원체제로써 호도하려는 술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우리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김일성체제유지의 名分의 하나로 利用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삼아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왔다. 즉, 그들은 남북대화와 훈련은 兩立될 수 없다는 主張下에 팀스피리트 훈련계획발표에 맞추어 진행중인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延期 또는 중단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대남전략상 남북대화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에도 북한의 先提議로 남북간에 會談이 進行된 때도 있었다.

즉, ① 1979년 2월-3월 남북조절위 變則對坐, ② 1979년 2월-3월 탁구회담, ③ 1980년 2월-8월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④ 1984년 4월-5월 남·북체육회담 등이다.

이렇게 볼때 북한측은 그들의 대남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팀스피리트훈련기간중에도 그들의 선제의로 회담을 제의해 왔고, 그들의 내부사정상 불리하면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

없이 인내심을 갖고 순수히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데 노력을 다해 왔던 것이다.

북한은 '90년에 들어와서 3차(9월, 10월, 12월)에 이르기까지 남북 총리회담에서의 선결조건중의 하나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남북간의 대화는 불신과 오해문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인만큼 팀스피리트 훈련문제 역시 대화를 통해 훈련이 필요치 않은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팀스피리트훈련이 남북대화의 장애요소가 된다는 주장은 북한당국이 그들의 내외여건상의 불리로 대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원활한 지속을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팀스피리트 훈련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다.



### 30.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올 시기를 언제로 전망하는가?

남북한관계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문제와, 이 대화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문제는 별개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하거나 이에 호응해 왔다.

첫째는, 대남도발 등 그들의 企圖를 은폐하는 위장수단으로 對話攻勢, 즉 위장평화공세를 펴왔다. 6·25남침을 은폐하기 위해, 그 18일전인 1950년 6월 7일에 이른바 ‘평화통일호소문’을 발표하여, 남북총선거에 의한 입법기관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海州나 開城에서 열자고 제의하고 6월 10일에는 그들이 억류하고 있는 曹晩植선생과 남한에 잡혀 있던 남로당 대남총책 李舟河, 金三龍을 교환할 것을 제의한 것이라든지, 아웅산 폭발만행 하루전인 1983년 10월 8일에 중국을 통해 「3者會談」을 미국측에 제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우리의 정치적 혼란기나 과도기에 대남제의를 적극화하였다. 4·19직후의 정치적 혼란기인 1960년 8월에 「연방제」 통일을 위한 남북회담을 제의하고, 10·26사태 이후의 과도기에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한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남북대화를 통해서 이른바 ‘남조선 革命’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주객관적 정세라고 판단하였을 때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남제의를 적극화하거나 우리의 제의도 곧 받아들였다. 1970년대초의 제1기 남북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닉슨독트린 등)이나 월남전에서 비롯된 미국내의 反戰무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측은 남북대화에 호응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할 수 있고, 한국의

안보태세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넷째,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규탄받고 고립화되었거나 대내적 政策需要가 생겼을 때 이미지改善을 위하여 위장평화전술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였다. 아웅산 폭발만행 뒤에 “3자회담”을 공개 제의(84. 1. 11)한 것이라든지 습營法 시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1984년 가을부터 적극 호응해 온 제2기 남북대화가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우리의 정치적 과도기에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수단으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인 경우인데, 이 때는 당국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각당·각파·각계 각층의 대화를 내세웠다. 1980년 11월 11일, 당국을 배제한 정당·사회단체대표 및 각계인사로 ‘고려연방국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개별인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나, 1981년 8월 6일의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제의, 1982년 2월 10일의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제의, 1983년 1월 18일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제의, 1988년 6월의 학생회담 수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섯째, 한미관계가 불편한 시기에 편승하여 韓美 이간책동의 일환으로 對美 평화협정체결 제의 등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빈번히 제의하였다. 한미관계가 불편했던 1974년 미국의 上下兩院에 편지를 보낸 것도 그 예이다.

끝으로, 그러나 우리 정국이 安定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무력이나 폭력의 수단에 의해 대남전략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통일전선 전술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1970년 대초의 제1기 남북대화, 1985년 4월 9일의 ‘남북국회회담’ 제의, 1987년 1월 11일의 ‘고위급정치군사회담’ 제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1989년의 ‘남북정치협상회의’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 및 1990년 1월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의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수뇌 협상회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유형의 남북대화는 아무리 적극성을 보이고 대화 빈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신뢰회복, 관계개선, 평화 정착, 민족의 화합 등 평화와 平和的 統一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宣傳을 위한 정치심리전 내지는 대화속의 대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展望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북한측의 對南觀과 對南路線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 남한이 “美國에 의해 지배·수탈되는 해방되어야 할 식민지”가 아니라, 본받고 도움을 받으며 어우러져 살아야 할 선진국 수준의 신흥공업국이라는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북한측이 민족공동체를 함께 형성해 나가야겠다는 實用的인 노선으로 수정하였을 때, 관계정상화, 평화구축, 민족의 공동번영, 통일조국의 설계를 위한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의 남북한관계와 통일환경의 발전추이에서 보면 그 시기는 빠르면 1990년대 초에서 늦어도 중반으로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북한에도 平和와 經濟發展의 수요를 느낄 때가 되었다. 한국이 결코 북한에 의해 해방되어야 할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세계가 알고, 차츰 북한의 동포들도 깨닫게 되었다. 북한의 배후에 있는 소련·중국·동구공산권까지 한국을 發展模型으로 삼겠다고 한국에 접근하면서, 북한당국에도 남북한간의 관계정상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나아가서는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남북대화밖에 없다고 권장하고 있다.

북한측으로서는 대화와 접촉의 폭이 넓혀짐에 따른 體制的 충격을 이겨낼 만한 면역조치를 갖추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인 남북대화 시기를 1990년대초로 보는 이유는, 그밖에도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우리 북방정책 성과의 可視化, 남북한의 발전격차,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 및 개방의 물결과 북한에의 압력, 東西間 화해

구조의 정착 등 여러 요인과 맞물려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최근의 남북대화 자세를 볼 때 남북간에는 몇가닥의 대화나 인적교류 및 경제교역과 교류의 폭은 차츰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중에 있으며, 제11회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1990년 9월)를 계기로 남북한 축구선수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통일축구대회를 가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동년 10월에는 남북 영화인이 미국 뉴욕에서 남북한영화제를 가졌는가 하면 이어서 남북한 전통음악인들이 서울·평양을 오가며 전통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종래의 대남혁명노선에 변화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탈냉전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북한만이 언제까지나 이데올로기의 대결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북한의 입장과 수요를 대국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비록 변수가 있고 한 정적이기는 하겠지만 1990년대 초 머지 않아 회담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

국제관계와 한반도



### 31.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이들 국가간의 사전합의나 양해없이 自主的인 統一이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美·蘇·中·日 등 강대국 틈바귀에 위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의 戰後 처리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달리 국제정치적 희생물로서 분단이 강요된 이른바 「국제형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주변강대국의 대 한반도 政策은 우리 민족의 統一問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통일문제의 主人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자신으로서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합의하면 주변강대국은 이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주변강대국의 對韓半島 긴장완화정책과 統一에 대한 立場을 보기로 한다.(분단 원인 및 중립화 문제 등에 대하여는 별도문항을 참조 바람)

미국은 “직접 협상을 통하여 1953년의 한국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시켜야 한다”는 北韓側의 이른바 「三者會談」提議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軍事·政治 問題는 남북한간의 直接對話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월남의 「티우」 정부대표를 배제시킨 채, 당시 「키신저」 安保特補와 「레·독·토」越盟政治局員사이의 비밀협상방식이 결국 월남공산화를 재촉하였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한반도에서 재현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해 南北韓間의 직접대화를 중용하는 한편, 自國 外交官에게 北韓外交官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 개방하기 위한 우리의 對北政策과 7·7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對中·蘇接近을 위한 「北方政策」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일방적인 접근을 경계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85. 3) 이후 페레스트로이카(개

혁), 글라스노스트(개방) 그리고 新思考정책 전개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및 평화공존정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소련의 新思考정책 전개는 결국 한반도에 두개의 주권국가가 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또는 단독가입도 지지하는 입장으로까지 나오게 되었다.

'90년에 들어와서 한·소수교가 있었고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간의 역사적인 「모스크바 선언」('90. 12. 14)은 양국의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과 한국민의 통일염원을 간절히 담고 있다. 즉 동 선언의 前文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남북한간의 총리회담을 포함한 남북접촉의 확대를 환영하고」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민의 자주적 통일 노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은 소련보다는 더 엄격히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여 아직까지는 북한의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중국지도층은 분명히 남북간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누누히 천명한 바 있다.

공산권의 이데올로기 퇴색과 체제붕괴로 중국은 마지막 사회주의 연대국을 북한과 다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연방제를 지지하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1989년 11월 5~7일 김일성이 북경을 극비리에 방문했을 때 중국지도층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90년 9월의 북경아시아경기대회후 한·중관계는 보다 긴밀해 졌으며, 무역사무소설치에 합의하는 등 한·소관계 급진전과 더불어 한·중수교도 전망되는 등 중국은 결국 對북한 명분유지보다는 한반도정책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소련·중국은 모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4강중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감정, 지리적 근접성,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동북아에서 남북한이 강력한 민족통일 국가로 자리잡게 된다면 일본에 위협적 요인이 될수도 있으며 따라서 일본 국익에도 反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하에서 政經分離 원칙하에 등거리 外交로 국익을 도모하지는 속셈을 갖고 있다.

동서독이 조기통일 되니까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경향이며 심지어 일부경제 연구소는 통일비용까지 산출 독일통일과는 달리 우리는 역부족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 남북한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주변강대국의 對韓半島 政策의 공통점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의 平和定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주변강대국은 각기 自國의 국가이익을 정면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결정적 이유는 없다. 원래 제2차 世界大戰 전후처리 과정에서 강대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입장은 독일문제에 대한 입장과는 다르다. 또한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점차 「民族內部問題化」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우리 민족은 冷戰構造的 對決意識을 하루빨리 탈피하고 民族자주역량을 결집시켜 통일여건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크게 진전되지 않는 것은 주변4강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對南赤化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 국민(민족)의 自主的 統一意志가 강력히 구축되어 있다면 주변국가는 우리의 自主的 統一노력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 32. 한반도의 통일문제 해결에도 독일과 같이 「2+4회담」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통일독일의 위상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문제가 「2+4 회담」의 합의로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미·영·불·소 등, 4大聯合國의 점령하에 있던 東西獨이 이제 통일된 獨逸로서 한 主權國家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1990년 5월 5일 본에서 시작된 제1차 「2+4회담」은 동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2+4회담」을 끝으로 4개월만에 종결되었다.

이러한 네 차례의 「2+4회담」에서 가장 큰 장애는 통일독일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잔류 문제였다.

이 문제는 1990년 7월 17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2+4회담」에서 소련측이 대폭 양보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때부터 「2+4회담」은 실무적인 문제만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더구나 독일측이 폴란드와의 국경선문제(오데르·나이세선 인정)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준 것도 회담의 큰 돌파구를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제4차 「2+4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에서의 蘇聯軍撤收費用 負擔問題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서독이 1994년말까지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와 再定着을 위해 76억\$을 소련에게 지불할것에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둘째, 소련군의 철수후 東獨領土內에서 核武器配置禁止와 NATO 軍事訓練禁止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미·영·불 3개국은 소련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통일독일의 主權事項”이라고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서독은 “통일독일의 軍隊를 37만명 이하로 유지하고, 통일독일은 化生放武器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셋째, 西獨駐屯 미군의 追加撤收問題이다.

이 문제는 “소련군이 동독에서 완전철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독 주둔 미군도 7~8만명으로 減縮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90년 2월중순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NATO와 WTO회원국 「外務長官會議」에서 합의한 내용(유럽배치 소련군은 19만 5천명 이하로, 미군은 22만명이하로 하는데 합의 함)에 따르기로 잠정합의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러한 경과로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독일에 관한 최종 합의조약」이라는 이름으로 調印되었다.

서독은 이 회담의 합의로 독일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희망했지만 각국 議會의 인준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2+4회담」의 協定要旨〉

① 통일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영토 및 전체 베를린으로 구성되며, 통일독일과 폴란드는 國際法上的의 구속력을 갖는 協定을 통해 현재의 國境線을 인정한다.

② 통일독일의 헌법에 국가간의 平和關係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의도아래 수행된 특히 侵略戰爭 준비와 같은 행위는 違憲이며 응징해야 할 違反行爲임을 명시한다.

③ 통일독일은 化生放武器의 생산·보유·통제에 대해 포기입장을 재확인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3~4년내에 통일독일의 군대를 37만명선으로 減縮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④ 통일독일과 소련은 현 東獨領土 및 베를린에 있는 蘇聯軍의 駐屯條件 및 기간, 그리고 1994년을 시한으로 한, 撤收完了 등의 문제를 협정을 통해 해결한다.

⑤ 현 東獨領土 및 베를린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동안 미·영·불의 군대는 통일독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베를린에 주둔할 수 있다. 외국군, 핵무기, 핵미사일 등은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주둔·배치할 수 없다.

⑥ 戰勝國들에 歸屬돼 있던 통일독일의 權利들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한 및 의무와 더불어 본 協定の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⑦ 미·영·불·소는 현 시점부터 베를린과 전독일영토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발동을 중지한다.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도발한 독일의 통일에 따른 주변국들의 불안은 대단하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東北亞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美·日·中·蘇의 구도도 지금 통일독일에 관여하는 美·英·佛·蘇의 구도처럼 복잡하지 않다.

최근 소련은 기존의 북한관계와 새로이 진전된 남한관계를 근거로 南北統一에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동시에 미국도 남한에서 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비롯한 軍事的·外交的 協商을 북한과 개시할 것을 요구하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尙存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련의 提議를 거부했다고 外信이 전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緊張緩和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은 독일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유럽에서와 같은 긴장완화의 징표가 극동지역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여건이 성숙되는 시기가 오면,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등 독일과 비슷한 政治數學的인 「集合論」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미국의 「2+1」의 문제 해결없이 곧바로 「2+4회담」

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外勢라는 의미에서이다.

### 33. 동·서독의 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教訓은 무엇인가?

동·서독은 분단이후 同族相殘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전승국인 4대강국의 점령하에 있으면서도 민족화해를 일찍이 이룩하여, 인적·물적교류와 다방면적 제반 협력을 이룩하면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성취해 왔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동서독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 실현의 길로 내 달렸다.

소련 및 동구권의 改革·開放 바람에 슬기롭게 편승하여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국경의 전면개방”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구한 동독시민들의 自由化·民主化 改革意識은 점차 라이프히치에서 동베를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거세게 확산되어 급기야 共產主義의 과멸로서 종언을 告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독의 自由總選舉實施를 비롯하여, 동서독은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條約」의 締結, 「2+4會談」의 성공적 합의도출, 「東西獨政治條約」의 締結, 統一宣布, 全獨自由總選舉의 實施, 統一政府의 樹立 등 일사천리로 명실상부한 統一을 완수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실현을 “서독의 「東方政策」의 勝利다 또는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開放政策의 도미노현상과 소련의 압력에 동독이 굴복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실현에도 같은 論理로 접근하여 “「北方政策」의 성공”, “體制競爭의 勝利”, “주변국가들의 對北韓에 대한 壓力加重”, “北韓內部로부터의 挑戰에 의한 붕괴 가능성”등의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統一接近理論의 我田引水의인 비약은 禁物이다. 다만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동서독의 통일실현의 과정을 겸허하게 통찰하면서 배워야 할 教訓을 찾아야 마땅하다.

첫째, 서독은 敗戰과 分斷의 쓰라린 역경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渾然

一體가 되어 모범적인 民主國家를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서독은 참다운 民主主義의 실천을 통해 軍國主義의 復活 가능성과 나치독일로의 回歸 가능성, 國粹主義의 부활 가능성을 말끔히 씻는 한편, 동독보다 우월한 體制임을 증명해 보여 주었다.

우리는 북한을 향하여 “동독을 닦아라” 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참다운 民主主義의 실천을 통해 體制의 우월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서독을 닦아야 한다”는 教訓을 찾아야 한다.

둘째, 서독은 國民統合을 이루는 가운데 國力伸張에 매진했다는 점이다.

民主政治의 역량 뿐만 아니라 經濟成長의 역량을 비롯하여 명실상부한 體制力量을 착실히 키워나감으로써 결정적인 統一力量을 결집해 왔다.

이와같은 총체적인 國力을 바탕으로 하여 일찍이 「東方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외적 統一環境과 대내적 統一與件을 조성해 왔다.

우리도 총체적 國力伸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統一論議의 통일”부터 이룩하여 國論統一을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民主政治의 역량과 經濟成長의 역량을 비롯한 體制力量을 배양해야 한다는 教訓을 찾아야 한다.

셋째, 서독의 「東方政策」은 迂迴接近方法을 채택하여 동독의 盟邦들을 먼저 끌어들이므로써 종국적으로 동독과의 協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브란트는 소련에 이어 폴란드와 「獨·蘇不可侵條約」 및 「獨·波友好條約」을 차례로 체결하여 동독과의 「基本條約」 체결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東方政策」은 통일실현에 결정적인 계기를 열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즉 「2+4회담」에 있어서 그랬고, 소련군 철수비용



등에 관한 「獨·蘇善隣友好協力條約(1990. 11. 9)」의 체결이 그랬다.

우리의 경우, 중국과 소련을 향한 「北方政策」의 基本方向은 서독의 「東方政策」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북한과 협상이 용이치 않을 때는 서독의 迂迴接近方法의 발상이 教訓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동독의 民主化를 요구하는 改革運動이 밑으로부터 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동독의 경우, 일찍이 서독과 다방면적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인적왕래를 비롯하여 방송·TV·통신의 자유시청 및 통화 등으로 동독시민들이 서독의 자유세계와 체제의 우위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밑으로부터의 改革運動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인적·물적교류는 물론 남한체제 및 사회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하루 빨리 사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教訓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서독의 일관된 統一政策과 民族自決權에 의해 통일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서독은 獨逸民族의 自決權이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일민족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일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民族自決의 先例를 남기게 되었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民族自決의 原則」은 통일방안의 基本原則이 된다.

분단은 外勢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미·일·중·소 4대국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의 자결영역을 넓히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는 독일의 先例에서 배워야 한다.

### 34. 북한·일본의 접근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최근의 북한·일본접근은 한·소관계의 급진전 한·중무역사무소 설치합의등 한·소, 한·중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여파라고 할 수 있다.

'90년 9월 25~28일 일본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신(金丸信)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사회당대표들이 평양을 방문, 북한 노동당과의 3당회담을 가진바 있는데 9월 28일 김일성·가네마루 신(金丸信) 2차 회담에서는 김일성이 일본에 戰後 45년의 배상을 요구하고 조기수교를 제의했으며 이자리에서 조기수교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사죄문제, 재일조선인의 차별철폐문제, 아시아에서의 핵위협철폐문제, 3당의 상호협조”등 8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8개항 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측은 '83년 10월 간첩혐의로 억류된 일본 후지마루호 선장 및 기관장을 석방했다.

곧이어 북한 노동당창건 45돌 경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 사회당도이 다카고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일 자민당 오자와 간사장도 10월 10일 김일성을 면담했는데 이자리에서 김일성은 조·일간의 조속한 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일본과의 관계성장화에 「速度戰」을 적용했다. 그는 단 1개월내에 국교수립을 실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하자 5개월을 연장 6개월 시한부로 매듭짓도록 수정 지시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본은 '90년에 들어와서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우리의 북방정책이 가시화 됨에따라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 용의표명을 하기 시작했다. 동년 6월 15일 가이후 총리는 중의원 외무위 답변에서 북

한정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다고 표명했고 7월 14일에는 美 CNN방송회견에서 “남북대결종식에 일본이 기여하기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김일성이 일본에 조기수교를 제의한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① 한소관계 급진전(수교, 정상회담등), 한중조기수교의 가능성 ② 소련과의 관계악화 및 석유, 전력등 일체의 원조중단 뿐만 아니라 동구도 개혁과정에서 북에 원조를 중단한 상태에 있다. ③ 소련으로부터 한·소수교계획을 통고받고 '89년 11월 허둥지둥 瀋陽을 찾아가 김일성에게 江澤民 총서기는 중국이 더는 북한을 지원할 형편이 못되며 북한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개방과 개혁뿐이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江澤民총서기의 이 충고에 김일성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고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북한은 일본카드를 활용, 남한을 견제하고 한·소, 한·중접근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전술이다.

한·소관계 진전으로 받는 북한의 난경을 일본과의 교섭으로 회부해 보려는 데있다.

일·북한 수교회담의 주요의제는 일본의 대북한 전후배상 문제와 북한의 핵사찰 허용이다.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은 물론 일본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일본수교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북한의 군사력강화 비용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북한이 수교를 최대 당면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교섭과정에서 남한과의 대화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일본의 對北수교의도가 對北원조에 의한 남북한간의 이간 또는 견제의 수단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우리 통일의 진정한 협조 우방국이라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북한·일본수교는 미국·북한관계정상화를 촉진케 될 것이

고 결국은 남북한에 대한 4강의 교차승인을 가져오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 교차승인의 단계가 오면, 그리고 교차 승인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은 결정적으로 대남모험을 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의 통일전선에 입각한 혁명적 통일도 그 여건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 35. 한·소 수교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소련은 戰後 동·서냉전체제에 따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1990년 9월 30일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이룩한데 이어 1990년 12월 13일 부터 노태우대통령의 소련방문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제2차 한·소정상회담을 개최,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모스크바宣言」을 채택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2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6공화국에서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결정판을 이룩하였을 뿐만아니라 동북아정세는 물론, 그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한관계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한국이 한·소修交로 이어진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크게 보아 2가지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정책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어 중국·소련 나아가서 동구권등으로 자원공급원과 시장을 확대하려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며, 둘째는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제동시키려는 통일정책적 목적이었다. 동구권과 소련에 이어 중국 마저 우리나라와 修交를 할 경우, 북한의 대남전략 논리는 국제적 호소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련이 한·소수교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우선 경제적동기로 보여진다. 한국과의 경제교류로 심각한 소비재난을 해소시키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어 합작투자를 통하여 경공업을 육성시킬 뿐만아니라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을 함으로서 21세기 아시아·태평양 경제시대에 대비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소련측의 생각은 1986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과 19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소련은 이러한 정책을 구현시키려면 구라파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었듯이-1970년 독·소조약,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1975년 헬싱키 체제, 1990년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발전을 통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생각들이 한·소수교를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한·소수교는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후 동·서 냉전체제를 탈냉전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같이 한·소수교와 이에따른, 경제 교류·협력을 위한 일련의 법적조치가 이루어짐으로서 개혁·개방과정에서 소련에서의 투자환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소양국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가속적으로 추진될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전문가는 1990년대 중반 한·소교역규모가 현재의 10억달러 수준에서 100억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같은 한·소수교의 파장은 한국의 대외정책 비중이 소련쪽으로 경사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미·일등의 반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우선 중국을 자극하여 한·중관계개선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30억 달러 규모의 방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이른바 血盟關係를 강력히 의식하여 「政經分離原則」을 내세워 「무역대표부」를 겨우 유지시키려는 중국은 한·소수교를 선례로 한·중국교수립을 서두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한편, 한·소수교의 직접적인 餘波는 북한·소련관계의 악화이다. 한·소수교는 이른바 「2개조선정책」으로서 「하나의 조선정책」이란 북한 대남전략의 기본구도를 허무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경제적으로 對蘇依存도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소련과 斷交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북한은 소련이 한반도 분단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지적하면서 「2개조선조작책동」에 연연하고 있다는 對蘇외교비망록을 발표하는가 하면 소련유학생을 소환시키고 평양주재 소련통신·언론사를 폐쇄시켰다. 한편 소련은 원유공급을 삭감시키고 북한과의 무역에서 硬貨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이미 침체되기 시작한 북한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정권존립 명분을 위협당하면서도 경제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對日修交를 서두르게 되었다. 북한의 對日接近이 가속화된다면 아무리 「2개 조선정책」이 아니라는 북한의 억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반도 주변국가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현실화된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다만 북한·일본접근이 남북대화의 진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남북대화의 진전속도를 앞지름으로써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대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핵시설 사찰허용 및 남북대화의 진전등을 제기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 및 한민족의 통일에 기여하는 입장임을 실증 시킴으로써 한민족에 대한 식민통치의 죄과를 진실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아야 할 것이다.

### 36. 유엔加入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과 주변국의 태도는?

우리나라는 1948년 유엔결의에 따른 총선거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소련의 비호하에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한반도에 사실상 2개의 政府가 실제로 존재하여 40여년이 되도록 남북쌍방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유엔에 가입조차 되지않아 세계의교무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73년 발표한 「6·23 外交政策宣言」에서 ① 南北韓의 동시 유엔가입을 반대하지 않으며 ② 상호주의의 원칙이라면 中·蘇 등 공산권국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제6共和國에서도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나, 그것이 여의롭지 못하면 韓國의 단독 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國際的 여건조성을 위하여 외교력을 기본적으로 排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對中·蘇 交流를 가속화하기 위한 「北方外交」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6·23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던 날 공교롭게도 북한을 방문중인 체코공산당 제1서기 「구스타프·후사크」를 환영하는 군중대회 석상에서 金日成은 ① 군사5개항(군사력 증강중지, 군비축소, 무기반입중지, 주한미군철수 및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 ② 多方面的인 교류·합작 ③ 大民族會議 ④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을 주장하면서 ⑤ 高麗聯邦共和國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정책을 표방한 이래 韓國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정책을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분단고정화책동”이라고 강력히 비방했다. 더욱이 북한측은 1952년에는 UN동시가입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단일국호하에서 남북한이 단일의석으로 공동가입하자고 하고 있다.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은 북한측 주장과는 달리 ‘두개 조선 조작책동’도 아니며 ‘조국의 영구분단정책’도 아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다음 統一이 되면 단일 국호로 변경하면 된다. 소련은 유엔창설과정에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聯邦政府이외에 백러시아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공화국 등 3개 의석을 갖고 있는데 북한측 논리에 따르면 소련은 3개 공화국으로 분단되었다는 말이 된다.

한편, 北韓은 1973년 부터 한국이 이미 가입한 유엔산하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직속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만국우편연합」(UP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유엔전문기구—11개의 유엔산하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북한측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유엔산하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도 조국의 ‘영구분단정책’이 될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政府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의와 동시가입경우 한반도에 두개의 한국이되어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의한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조선」이 유엔에 가입되어 국제적으로 국가승인을 받으면 革命이 制動 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의 유엔가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북한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남북한이 유엔가입은 하되 단일국호의 한개의의석으로 공동가입하자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는 이미 남북한이 각기 별도의 국호로서 유엔산하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정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어긋나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모든 국가의 한결같은 태도이다.

### 37. 우리가 추진하는 「北方政策」과 서독의 「東方政策」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北方政策」과 서독의 「東方政策」은 分斷國으로서 다같이 상대적 국력우위에서 오는 自信感을 바탕으로 하여 천명된 정책이다.

통일대화의 상대방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民族共同體로 인식하여 民族自害의인 대결관계를 지양하고 民族自尊과 共存繁榮을 위한 「할 슈타인원칙」의 포기선언인 것이다.

#### 〈북방정책〉

우리나라에서 「북방정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沿革은 1973년 6월 23일 「6·23宣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朴正熙大統領이 對共產圈 門戶開放을 처음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83년 6월 李範錫外務長官이 國防大學院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北方政策」은 그 실마리가 풀릴 것이며, 「북방정책」의 진전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 다음이 된다.

그리고 1988년 7월 7일 「7·7宣言」으로 盧泰愚大統領이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特別宣言”을 천명한 것이 세번째가 되는 셈이다.

이 정책은 「6·23선언」 이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는 情勢에 부응하여 남북관계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고, 북한을 국제적 孤立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사회를 開放시킴으로써 한반도에 平和定着과 통일실현을 도모하는 民族共同體意識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되었다.

1988년 崔侑洙外務長官은 “「북방정책」의 근본목표는 중국 및 소련과의 접근을 통한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북방정책」의 目標은 과거의 對美依存外交라는 일방통행식 외교에서 탈피하여, 自主外交, 多邊外交의 일환으로 東歐의 共產諸

國 및 中國·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하려는데 있다.

첫째, 북방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동북아 및 한반도의 영구적 平和와 안전의 추구.
- ② 교역확대를 실현하는 국익증대를 최대한 도모.
- ③ 국력신장과 국제적 地位向上.
- ④ 평화통일의 여건과 환경조성.

둘째, 북방정책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북방정책은 북한의 同盟體制를 약화시키고, 북한과의 外交競爭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다.
- ② 남북이 다같이 民族共同體意識의 바탕 위에서 우리 민족이 國際社會에서 상호협력 공동번영을 모색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가려는 것이다.
- ③ 우리가 대승적 입장에서 양보하고 설득해서 통일의 길을 찾자는 것이 북방정책의 철학이고 기본방침인 것이다.

셋째, 북방정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다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同伴者關係로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북방정책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북방정책은 정치적 교류와 非政治的 교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북방정책은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기존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북방정책의 추진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북방정책협의조정위원회
- ② 북방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③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부총리)
- ④ 국제민간경제협의회(위원장:민간경제 4단체장)
- 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⑥ 안보장관회의
- ⑦ 전략기획단회의

우리나라는 북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소련과의 수교를 비롯하여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를 갖게 되었다.

#### 〈동방정책〉

서독의 社民黨首 브란트가 首相으로 취임한 후, 1969년 10월 28일 「東方政策(Ostpolitik)」을 발표하였다.

- ① 동독내 2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 이는 國際法的인 承認이 아닌 國內法的인 承認이다.
- ② 동서독은 상호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이다.
- ③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 입각한 不可侵條約을 체결한다.
- ④ 독일에 대한 4大國協定을 존중한다.
- ⑤ 상호간 경제·문화 등, 다방면적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 ⑥ 「할슈타인원칙」을 폐기한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독일의 통일이 국제정치와 군사적 여건변화, 구라파에서의 勢力均等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直視하고, 동서독간의 交流協力을 우선 실시함으로써 共存共榮의 實利追求와 信賴回復 및 緊張緩和로 平和定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결국 동방정책의 성공으로 소련과 폴란드와 不可侵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차례의 「동서독 頂上會談」에서도 큰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자, 주변국가 외교로 우회적 접근을 펼친 동방정책의 성공으로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제반교류협정」이 순조롭게 체결되어 “분단은 있으나 고통이 없다”는 말과 같이 인적·물적교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오늘의 독일통일은 동방정책으로 부터 예정된 결과의 귀결이라 하겠다.

### 38.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방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북한과의 차이는?

남북간에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해있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도록 정치·군사적인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구축조치부터 먼저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남북간에 오랜기간 긴장상태와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상호불신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의 정치적 신뢰구축의 기초는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보적인 노력부터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데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방안」을 제안하고 이와함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해 놓고 있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 신뢰구축방안의 내용으로서는 첫째, 상호체제 인정 및 존중의 바탕위에서 상대방 지명공격, 비방·중상 등을 중지하지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특정인사에 대한 지명공격이나 상대방의 체제 및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 등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이행하는 것은 상호간 불신의 누적과 긴장상태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신문·방송 및 출판물을 상호 개방하여 민족성원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서로 상대방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서울·평양에 상주연락 대표부를 설치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상대측 지역에 상주시킴으로써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음 군사적 신뢰구축의 방안으로서는 첫째 군인사 상호방문 및 교류를 실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남북의 군사실무자들이 상대방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시키며 침략의사가 없음을 확인토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군사정보를 상호 공개 및 교환 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군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을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해 주고 상대방을 초청·참관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쌍방 군사동향의 투명도를 높여 서로 불신감과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부대 이동과 기동훈련으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다. 넷째,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에 직통전화선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사고의 확대를 방지해 나가자는 것이며, 다섯째,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 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으로 이는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완충기능을 확대하고 평화적 이용을 통해 평화적·개방적인 완충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및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방안」의 합의·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우리측은 이상의 방안들을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이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즉, 공격형 전략구조를 방어형 전략 구조로 전환하고, 군사력 상호 균형유지의 바탕위에서 동수

균형감축을 실현해 나갈 것과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유사 군조직을 함께 감축하도록하고,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을 위한 현장검증과 감시를 실시하도록 하며,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상과 같은 남북간 군비감축이 진척됨에 따라 현 휴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반도 관련국가들이 참가하는 구체적 평화보장 조치의 강구도 아울러 제안해 놓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과 함께 남북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대결상태와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핵무기 철수 및 남북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호비방·중상증지, 군사훈련 사전통보, 군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운영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일부 내용에 있어서 우리측 제안내용과 같은 내용을 내놓으면서도 기본적으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군축 등 정치·군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등 이른바 「결과로서의 군축」을 주장,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축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및 방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데서 우리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아직 정치선전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그들이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종래 추구해 온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양면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 39. 주한미군은 우리와 어떠한 利害關係가 있는가?

북한이 기습남침(6·25)하였을때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었던바 유엔군(주로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한은 공산화 되어 있었을 것이다.

6·25이후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토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유엔군의 힘이 컸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6·25전쟁이후 북한이 재남침하지 못한 이유는 주한 미군 때문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북한은 駐韓美軍이 그들의 安保에 위협이 되고 全韓半島共產化 戰略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의 철수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에서 “민족의 自主性”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國際權力政治의 냉엄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물론 長期的이고 원칙적인 견지에서 한국의 防衛는 한국인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단계로서는 남북한간의 軍事的不均衡, 상호간의 敵對感과 不信, 그리고 군사력집중, 북한의 南侵가능성 등의 이유로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한반도 安定과 平和에 필요하다. 또한 그 철수시기는 북한의 南侵에 대한 한국의 獨自的인 抑止가 가능하거나, 북한이 對南赤化革命戰略을 포기했다는 객관적인 확증이 선 연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 〈북한의 駐韓美軍撤收 주장의 內容〉

북한은 한국전쟁에 介入了던 中共軍이 철수하자('58. 10) '59년 10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2기6차회의에서 南日 副首相이 “주한미군을 철수” 할 것을 주장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같은 주장을 되풀

이 하고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주장에서 名分으로 제시하고 있는 論理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統一은 물론 南北對話의 전제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은 民族自決權을 유린하는 등 국제법원칙의 위반이란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은 7·4공동성명 3原則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美軍의 한국주둔이 UN헌장 및 決議事項(外軍撤去)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여섯째, 주한미군은 모든 外國軍의 철거를 예견한 休戰協定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근거가 되고 있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이 不法的인 것이라는 것이다. 여덟째, 주한미군의 철수는 時代的 요구라는 것이다.

####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의 底意〉

북한의 對南戰略·戰術,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제의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특징은 모든 것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주한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이 존재하는한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도 무력남침에 의한 赤化統一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하고자 기도한다.

둘째, '60년대이후 추진해온 남조선혁명전략의 일환인 남조선에서의 革命力量強化는 한국의 현존 政府를 전복하고 주한미군을 축출한 상태에서 民主政府(容共政府)가 설립되어 북한과 合作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고 또 국제무대에서의 革命力量強化 역시 주한미군이 제국주의적 침략으로써 한국을 강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주한미군을 撤收하도록 壓力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한국이 美國의 식민지라는 주

장하에,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非正統的 政府로서 미국의 도움에 의하여 집권하고 있으며 한국민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만 철수한다면 한국정부는 자동적으로 붕괴하고 소위 ‘민주인사’들에 의한 ‘民主政府’가 수립될 것”이라는 논리체계를 구성해 놓고 있다. 북한이 제안하는 統一方案이나 對話提議에서도 역시 주한미군 철수요구가 不變의 요소로, 그 전제조건이거나 목표로 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나 「3者會談論」등이 다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기본정책이 한반도의 共產化統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 對內的 政治的 觀點에서 金日成이 북한사회를 동원하고 북한주민을 통제하며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면서 軍事力을 증강하는 이유를 南朝鮮解放에서 찾았으나, 그 실현이 멀어져가는 시점에서 그들이 對內的으로 공약한 한반도 公산화 統一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에서 그 이유를 찾고 주한미군을 속죄양으로 이용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약점을 국내정치적으로 호도하고 변명하려는 것이다.

#### 〈駐韓美軍의 意味와 役割〉

주한미군은 원래 UN군의 일부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UN군이 한국에 파견된 것도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무력으로 기습남침을 감행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파견되었다. UN의 派兵決定은 북한의 무력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국정부의 개입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UN헌장이나 일반 국제법 理論上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오직 북한의 무력남침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法的地位와 관련,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은 휴전협정 조인 직후인 1953년 10월 韓美 양국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이유 자체가 북한에 그 책임이 있고 또한 파견 경위나 주둔형식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이상, 북한으로서는 이에대한 適法性 여부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은 ①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UN측을 대표하는 휴전협정 감시자 ② 북한의 再侵역지 ③ 남북한간의 緩衝役割담당 ④ 東北亞 세력균형의 유지 등 4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 〈북한측의 主張內容別 對應論理〉

첫째, 주한미군 철수가 統一對話의 前提條件이라는데 대해서는 美軍이 우리의 統一政策 수립이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철수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북한이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측에서 한국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內政干涉이고 성실한 대화자세로 볼 수 없다. 35만이나 되는 西獨의 美軍주둔이 동서독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동·서독 긴장완화 촉매제가 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전쟁위험의 원인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北韓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한 尙存하며 한국과 미국은 전적으로 방어적인 전략에 입각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사태와 6·25전쟁의 책임을 묻고, 현재 남북한 군사력 比較面에서 북한측이 훨씬 우세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한국수준으로 감축하고 남북한간에 신뢰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이 국제법 원칙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UN軍과 주한미군의 파견경위의 설명으로 合法性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넷째, 7·4共同聲明 원칙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統一의 原則이지 國防의 원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해야하고 북한이 공

격적인 자세를 완화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를 쌓아가면 駐韓美軍을 계속 주둔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이 유엔헌장 또는 UN 決議事項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파견된 UN군의 일부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한의 南侵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북한은 UN의 統一案을 拒否해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미군의 한국주둔이 休戰協定の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美軍이 철군하면 협정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結核가 초래된다. 그것은 미국이 휴전협정의 준수를 감시할 법적인 責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對美平和協定締結이나 3者會談을 갖자는 근거와도 상치된다.

일곱째, 韓·美相互防衛條約이 不法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가는 자유로이 外國과 조약을 맺을 권리가 있고 이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內政干涉이 된다. 북한이 외국과 맺고있는 조약에 한국이 폐기나 내용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여기에 북한은 순응할 것인가를 반문해 본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미군이 언제나 이땅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동서해방무드가 증대되고 있고 미·소는 각기 군사력을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그 위험이 가지지 않고 있다. 22차 한미안보협의 회의('90. 11. 13-17)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하여 “양측은 향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나 재조정은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의 안보환경을 면밀히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결의하였다.

'90년 4월 4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3단계 감축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1단계('91-'93) : 공군 병력 2천 및 지상군 비전투요원 4천 감축

2단계('94-'95) : 당시상황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추진

3단계('96년 이후) : 추후 계속 논의

위의 단계적 감축사항을 보면 사실상 1단계만 병력감축현황을 밝히고 있고 2단계, 3단계는 당시의 북한의 대남위협도 정세평가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그레그 주한 미대사도 '90. 12. 22일에 '92년까지 7천명(공군 2천, 비지상병력 5천)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북한이 대남 무력적화 노선을 포기했다는 실증이 확인되고, 성실한 자세로 남북대화해 임해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감을 쌓아가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오기를 우리가 보다 더 바라고 있는 것이다.

40.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잠재역량은 어느정도이며, 북한의 「한반도 非核地帶化」 주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한 국가의 핵개발 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관련요소를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대체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강한 국가의 지, 핵물리학을 포함한 핵기술의 수준, 핵의 평화적인 이용시설의 규모, 그리고 경제력의 뒷받침 등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북한의 경제역량이나 원자력의 이용수준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능력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意志의 강도와 오늘날의 핵개발은 기술적으로 그 難度性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개발 임박설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영국의 군사정보문제 주간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가 89. 9. 20자에서 “현재와 같은 발전속도라면 북한은 5년 이내 핵실험 폭발장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뒤는 실전용으로 사용가능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고 밝힌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① 1955년 4월 : 북한과학원 제2차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 ② 1956년 2월 :모스크바에서 朝·蘇과학기술원조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고 연합핵연구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 ③ 1956년 9월 : 朝·蘇간 원자력평화이용 협정조인 및 고주파 질량기 제조에 성공 ④ 1961년 : 평북 寧邊에 대단위 원자력연구소 착공 ⑤ 1961~67년 : 약3천명의 과학자를 소련의 드부나 핵연합연구소에 연수시키는 한편, 金日成 대학과 金策공업대학에 핵물리학및 핵공학과를 설치 ⑥ 1963년 10월 : 방사능 동위원소를 興南비료공장의 암모니아 합성 및 과인산 석회 생산공정에 도입 ⑦ 咸興·雄基 및 海金剛일대에서 양질의 우라늄광 발견 ⑧ 1964년 이후 : 北京의 番山초대소에서 朝·中 핵물리학자의

수시회합 및 우루무치(烏魯木齊) 핵실험장에 북한의 핵 전문가 파견  
 ⑨ 1965년 : 소련으로부터 1천Kw급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 ⑩ 1974년 :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국은 1957년 가입) ⑪ 1980년 : 寧邊에 3만 Kw급 원자로 제2호기를 설치하여 86년에 완공 ⑫ 1985년 : 20만 Kw의 제3호기를 착공하여 90년말에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이며, 12월 12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국은 1975년에 서명)과 함께 소련과 176만Kw급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도 합의하여 90년에 착공예정 ⑬ 1986년 12월 : 소련 수상 리즈코프와 북한 총리 姜成山 간의 핵기술협정 조인 및 政務院 부서로 원자력공업부를 신설하고 핵전문가인 崔學根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1985년 12월 핵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한 이후부터 소련에 의한 핵기술 제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이 高威力의 전략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의 대량생산은 소련만이 감시기능으로 제재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전술핵 제조에 충분한 소량추출은 북한의 축적된 단독기술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플루토늄만 제공받으면 테러단체도 핵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원자력위원이던 J. 테일러 교수는 원료만 있다면 핵전문가가 아니더라도 TNT 1백톤급의 소형핵탄은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핵탄의 원료인 이 플루토늄의 획득이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농축 및 재처리작업으로 임계량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및 기술면에서 낙후된 중국이나 인도가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0년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寧邊 원자력 연구단지내에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1~2년후 본격적으로 가동시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어 1995년 이후에는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수 있는것으로 평가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그 후속조치로 조약가입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북한은 현재까지 이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각종 ‘성명’, ‘담화’와 국제회의·군중대회·보도매체의 논설 및 사설등 각종 可用手段을 총동원하여 「한반도 非核平和地帶」 창설 주장을 끊임없이 선전하면서 이와 연관된 이유들을 부각시켜 對韓·對美 비방공세를 극렬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확대·유포하여 주한미군의 최신 장비 반입을 중단하고 그 철거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인 反戰·反核 단체들과의 연대적 활동을 유도하며, 한국내 사회일각에 反核·反戰 운동을 부추겨 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은 처음부터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대내외 선전 선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비핵지대화」 문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련의 전체 核戰力の 3분의1내지 4분의1이 극동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각종 核投發手段, 作戰機, 군함이 한반도 주위에 전개되어 있는 상황을 차치하고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결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非核地帶化論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화해와 신뢰구축 및 주변 四強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現實化되기가 어려운 과제라고 볼때, 북한의 선전·선동전략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제의를 현 단계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美·蘇간에 實質의 군축을 통한 데탕트 무드가 조성되어가고 있고, 소련이 한반도 非核化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時點에서, 우리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南北間의 軍事的 對峙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政治·軍事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 41.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88년도 日本의 무역흑자는 \$1,000억을 초과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국제경상수지의 흑자를 기록한 나라치고 軍事力增強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볼 때, 일본은 이제 그들의 經濟力에 상응하는 軍事力 건설에 박차를 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88년도 예산에서 GNP의 1.013%, 세출예산의 6.5%를 방위비에 반영하고 있는바, 이른바 「GNP 1%의 벽」을 넘는 방위비를 쓰고 있는 셈이다. '75년도의 GNP대비 0.84%의 방위비가 매년 서서히 늘어나 드디어 GNP대비 1%가 넘는 액수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89년도 예산에는 군사비를 \$290억(3조9천억엔)로 책정하였는데 美國에 비해서는 1/8정도이지만 英國의 \$250억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상과 같은 방위비 증가에 힘입어 그들의 自衛隊 戰力을 괄목할 만큼 향상시켰다. 現在 兵力은 육상자위대 약16만명, 해상자위대 약 4만4천명, 항공자위대 약4만5천명 등 도합 24만9천여명에 이른다. 주요 장비로는 戰車 1,150대, 裝甲車 590대, 各種砲 5,980門, 각종 艦艇 161척(호위함 52척, 잠수함 14척 등), 各種航空機 약1,000機(F15전투기91기 등) 그리고 나이키, 호크, 샘 등 각종 誘導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日本은 '86년~'90년을 기간으로한 中期防衛力 정비계획을 마련, 自衛隊 戰力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美國과도 '54년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을 체결했으며 '78년에는 「美·日 방위협력을 위한 指針」까지 책정하여 긴밀한 軍事協力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정부간 군사관계자 협의를 자주 갖고 있으며, 合同軍事訓練을 陸上·海上·航空자위대별로 각각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장비 및 기술협력은 물론 일본은 駐日美軍의 주둔을 원활히 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日本의 군사력 증강과 美·日군사협조체제는 첫째, 소

련의 亞太地域 군사력팽창을 일본을 내세워 抑止하려고 하는 미국의 戰略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측 입장에서 볼때는 미국의 核우산 밑에서 安保무임승차를 하고있는 現狀態를 自衛體制로 바뀌가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은 蘇聯을 잠재적인 敵國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소련이 北方 4개도서를 군사시설로 요새화하고 있고 일본주위를 소련의 전투기가 年平均 350회, 함정이 年平均 575 척이 돌면서 心理的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美·蘇間에 中立的 입장에 일본이 있어주기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이상과 같은 소련의 의도와는 상치된다고 볼 수 있다.

韓半島 문제와 관련, “일본은 앞으로 美日安保條約의 틀내에서 韓·美사이의 安保體制를 이용, 한국안의 美軍基地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려 할것이다”고 지적한 컬럼비아大 제랄드 커티스 교수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美·日合同軍事訓練에 駐韓 美空軍 소속 A-10 비행단이 참가한 사실은 이같은 태도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日本의 軍事政策은 「신데탕트」 시대에도 불구하고 東北亞地域의 平和定着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일본은 현재 經濟大國에 걸맞는 발언권을 4強과의 관계에서 행사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군사력 증강과 함께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련하여 4強과의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만약 美國의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美軍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대공산권과의 군사력균형의 공백을 일본이 맡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42. 오늘의 주변정세를 舊韓末과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민족이든 그들의 역사, 특히 그들이 겪은 受難史에서 교훈을 얻어 반성하고 대처하는 슬기가 없다면 그 민족은 살아남지 못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민족의 수난사에서 교훈을 찾아내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남북한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의 對韓半島政策, 그리고 남북한의 對4強政策을 포괄하여, 구한말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그 유사성을 지적하고 警戒論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더욱이, 우리 북방정책의 결실로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90. 9. 30),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한 한·중 수교가 可視化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북한의 대미접근 움직임과 대일접근 시도로서 관계개선을 약속한 「朝·日 3黨 共同宣言」이 나온('90. 9. 28) 상황을 두고, 19세기 말엽 한반도에서 일본·러시아·淸國 등 列強이 각축하며 패권다툼과 야합을 거듭하여 마침내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라는 민족수난사를 겪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遠因이 되어 국토분단과 민족단절이라는 半世紀의 민족분단사가 강요된 우리의 처지에서, 이들 주변4강의 세력균형에 바탕한 한반도의 현상고착화 정책이라는 국제권력정치의 속성을 염려하고, 역사적 교훈을 일깨우는 것은 민족의 자각과 正氣에 바탕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생을 영위하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주변정세에 대처하는 데 있어 시대와 상황의 변전에 관계없이 항상 고려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시말해서 세계 사상사조가 어떻게 변천하든, 국제지배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든, 이웃나라들의 對한반도정책이나 對外的志向이 무엇이든 간에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정립하거나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유념하고 대처해야 할 진리

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교훈이고, 국제질서의 밑바탕에 흐르는 鐵則이다.

1) 국제사회의 主體는 국가일 수 밖에 없고, 국력은 곧 국제적 영향력이다.

2)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敵도 없고 영원한 友邦도 있을 수 없다.

3) 국제사회의 유대관계는 국익에 좌우된다.

4) 국제권력정치의 속성은 분할·통치(Divide & Rule)이다.

5) 국제사회에는 「이웃 4寸」 보다는 「시샘하는 놀부」가 더 많다.

6) 半島의 지정학적 성격은, 힘이 없으면 패권다툼의 징검다리로 희생되기 쉽지만, 힘이 있으면 교두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다.

7) 미래 세계의 국력은 국토·자원·인구·경제력·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 보다는, 내부적 결속력·보편적 문화·과학기술능력·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같은 「소프트 파워」가 중요시될 것이다.

8) 국제사회의 앞날에는 국제적 고립은 고사하고 永世中立의 실익이 없어질 것이다.

위와 같은 역사법칙과 假說을 준거로 하더라도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우리가 銳意 경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00년전인 구한말의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으로서의 오늘의 주변정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그 변화추이는 경계와 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적 추진력으로 가속화시켜야 할 발전 방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구한말의 주변정세는 우리가 안에서 수구파·개혁파, 친일파, 친로파·친청파로 사분오열하여 주체적 수용능력이 없이 강요된 外勢로서 주어진 주변정세였다면, 오늘의 주변정세는 우리의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의지와 역량으로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통일환경의 조

성이라는 의미에서 主體역량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더욱이 피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外壓은 억지할 수도 통제할 능력도 없기에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對外政策을 펴는 데 있어서는 방향설정과 속도조절도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그 부작용이나 역기능은 예견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전술한 주체적 대응역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100년 전과 오늘날의 주변정세로서의 外勢는 質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구한말의 그것이 艦砲外交로 상징되는 列強의 식민지 쟁탈을 위한 패권다툼이었다면, 오늘의 그것은 國益을 위한 실리추구와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을 主軸으로 하고 있고, 인류문화 수준이 국제질서에서 主從관계를 거부하고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수 밖에 없을 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소관계와 한·중관계의 흐름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셋째, 통일환경으로서의 주변정세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오늘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주변4강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되는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에는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고 기여해야 하겠지만, 그 기반 위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풀어야 할 민족내부문제라는 점이다. 이것이 동서독 통일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하다.

주변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나 「동북아 6개국 평화협회의회의」의 창설을 평화통일의 교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당면한 경계사항은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 과정이 과연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가 디딤돌이 되는가, 그 향방과 속도를 예측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 43.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온 미·소양국의 軍事戰略과 이른바 「신데탕트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美·蘇양국은 치열한 軍備競爭을 해왔다. 특히 1979년 소련이 11만 의 정규군을 투입하여 아프가니스탄침공을 감행한 이후 미·소관계는 新冷戰關係로 돌입하였었다. 1975년 헬싱키체제로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권간의 군사적균형이 이루어진 다음 蘇聯의 군사력은 극동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현저히 팽창하였으며, 「밤철도」의 준공은 군사력 팽창을 뒷받침하였다. 소련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여 美國은 방대한 군사비를 투입하여 MX미사일, SDI(전략방어구상) 등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을 결속시켜 對蘇聯군사 동맹망을 강화시켰다.

이상과 같은 끝없는 군비경쟁과정에서 미·소양국의 경제적부담은 가중되었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는 대체로 3,000억달러선을 오르내렸으며, 소련 또한 1,400억 달러내외의 군사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은 美·蘇양국의 군사비 부담의 가중을 경감시키려면 끝없는 군비경쟁에 제동을 가하는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에서 미·소양국은 마침내 이른바 「신데탕트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한편, 이른바 ‘절대무기’인 核武器를 중심으로한 군사력경쟁은 實戰에 사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면 敵과 我側의 구별없이 인류가 全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기중심의 군비경쟁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국제정치의 한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월남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통하여 각각 군사력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마침내 미·소 군사대국은 1987년 12월 7일 사정거리 500~5,000km

의 지상배치 中距離核을 3년내에 전면폐기시키는 이른바 「중거리핵전면폐기협정」(INF)을 체결하고 이미 집행단계에 돌입하였다. 이 협정은 인류軍縮史上 획기적 진전이며, 이를 계기로 핵군축이 본격화되어 미·소간에 협상 진행중인 대륙간탄도탄(ICBM) 각각 50%감축협상마저 진전된다면 이는 실로 인류 군축사상 「혁명적」 사변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軍事大國인 미·소양국간의 신데탕트시대의 개막은 일단 수많은 「地域紛爭」(Local Conflicts)의 종식을 가져왔다. 지역분쟁은 이란-이라크戰의 예에서 보듯이 분쟁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분쟁의 이면에는 미·소 군사대국이 직·간접적으로 간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월남전에 직접 개입하였지만 소련은 월맹을 지원하였으며,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직접개입하였지만 미국은 回教叛軍에게 최신무기를 제공하였다. 미·소군사대국은 대부분의 「지역분쟁」에 이와같은 방식으로 직접·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美·蘇間 신데탕트시대의 개막은 사실상 지역분쟁의 종식을 이룩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소간 「신데탕트시대」를 맞으면서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룩되고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이 진행되었고, 쿠바군의 앙골라철군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범세계적 긴장완화 분위기는 마침내 이란-이라크전쟁을 휴전시키기에 이르렀다.

다만, 미·소간 신데탕트 시대의 개막 후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미·소 신데탕트시대는 지역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명제에 예외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정책에 보조를 같이하고 유엔 「安保理」 또한 이라크 제재결의안을 가결시킴으로써 국제정세가 탈냉전으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소 군사대국간 신데탕트 기운은 한반도에도 서서히 미치기 시



작하는 듯 하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한반도는 세계군사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정러시아 이래 不凍港을 얻기 위해 「南進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의 세계군사전략적 관점에서나, 소련태평양함대의 태평양 및 인도양진출을 「대한해협」에서 봉쇄시킨다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미·소군사대국은 공히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唇亡齒寒」이란 독특한 대한반도관을 지켜온 中國의 전략관까지 곁들여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된다면 모처럼 조성된 신데탕트를 沮害할 것이므로 미·소 군사대국 등 한반도 주변세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위에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전략문제연구소와 소련과학 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등 美·蘇의 연구기관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美國은 북경에서 北韓외교관과 접촉을 가진 바탕위에서 미국무성의 시거 전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對美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으나 남북한 당사자간에 對話를 통하여 긴장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주변강대국이 保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4. 『6·4天安門事態』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向方은 어떠한가?

改革, 開放政策의 推進方向에 있어 中國과 蘇聯의 差異點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경제개혁」,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反해, 중국의 鄧小平은 「경제개혁」은 추진해 왔으나 「政治改革」은 등한시 해왔다.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 보다는 오히려 정치개혁에 주력, 자유선거, 복수정당제(多黨制) 허용등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기해 결과적으로 經濟改革을 이룩할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은 “10年前보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무엇을 더 원하느냐?”며 經濟改革만을 강조하고 政治改革은 뒷전으로 미뤘다. 이에 많은 지식인 학생, 노동자,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 天安門사태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다시 단적으로 지적하면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 정치의 민주화를 함께 추진했으나 鄧小平은 經濟改革은 해 나갔으나 ‘정치적 민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天安門 사태가 터진 것이다.

6·4 천안문사태후 6개월이 지난 '89년 12월 중순에 와서 비로소 李鵬總理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뜻을 비쳤는데('89. 12. 14) 그 개혁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中國의 대표적인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家이며 중국 社會科學院 首席研究員인 蘇紹智(6·4 天安門사태발생시 國外탈출. 現在 美國 위스콘신주의 마르케트 大學에서 강의)는 말하기를 “西歐學者들은 鄧小平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鄧은 경제개혁은 해 왔지만 정치사상 전선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것은 鄧小平 個人的 모순인 동시에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保守強硬 세력들의 모순”이라고 했다.

오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은 두가지 면으로 연관되어 있

다. 하나는 이데올로기면이고 또 하나는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면이다.

改革派와 保守派간의 국가운영, 국가정책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개혁을 보다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입장과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그다지 급격한 變化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입장의 차이이다. 改革派나 保守派나 改革 그 自體에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保守派라 해도 개혁과정의 보수파이며 그에 대립하는 사람들은 개혁급진파인 것이다.

中國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이데올로기면과 연관된다는 것은 개혁급진파들의 급격한 改革 개방정책은 결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의 후퇴 내지 소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권력투쟁과의 관련면은 이번 天安門사태는 바로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등소평 명령하에 李鵬總理, 江澤民 總書記, 楊尙昆國家主席 등 保守強硬派들이 改革派인 趙紫陽, 胡啓立政治局員들을 제거시키고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中華人民共和國 建國 40周年을 맞은 1989년 10월 1일 등소평은 4大基本原則을 固守할 것을 선언했다. 즉 ① 社會主義國家 實現 ② 共產黨指導 ③ 독재 및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④ 毛澤東主義의 이 4가지 기본원칙의 固守이다.

毛澤東主義의 否定的인 면을 비판·비난해온 鄧小平이 다시 이데올로기에의 固守를 선언하고 나온 것은 앞의 蘇紹智가 지적한대로 鄧小平自身の 모순임과 동시에 정치사상전선에 있어 保守強硬派의 權力장악을 위한 명분과 정통성 고수를 위한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中國은 지금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88년부터 실시한 經濟調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는 '89년 상반기에 25.5%를 기록, 인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출도 극히 부진하여 '89년 6월말 現在 5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西方國의 자금동결로 4백억달러에 이르는 外債도 상환 불능의 危機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中國은 지금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 '89년 11월 6일 개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긴축정책을 강화하지는 측과 침체에 빠진 경제의 活性化를 위해 긴축정책을 완화하지는 派간의 黨內異見으로 對立되었다.

고령의 鄧小平은 '89년 11월 9일 마지막 공직이었던 黨中央委軍事委員主席職을 사임하고 그 후임에 江澤民總書記가 겸임하게 되었다.

비록 鄧小平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죽을때까지 실권자로서 막후 영향력은 계속 행사할 것이다. 鄧小平이 살아 있는 限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으로 나갈 것이며 사회주의를 벗어난 어떠한 개혁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치의 민주화도 鄧小平이 살아 있는 한 東歐의 政治民主化모델을 결코 中國內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鄧小平은 “소련과 東歐의 변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올바른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89년 10월 1일자(建國40돌) 人民日報(黨기관지)에서도 「역사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렇게 볼 때 中國의 개혁, 개방정책의 방향은 鄧小平이 살아 있는 限 保守強硬派가 黨權을 장악하면서 社會主義 노선의 堅持下에서 漸進的 경제개혁으로 나갈 것이며 政治改革도 東歐와 같은 政治變革(共產黨 당독재체제의 종식스타일)을 中國內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鄧小平이 建國 40돌의 4大基本原則 固守선언에서도 明白히 나타나 있다.

중국은 天安門 사태후에도 제2의 天安門사태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국제여론이 있었으나 '90년 9월의 북경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음을 自評, 등소평의 現執權體制는 安定을 일단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후에도 제8차 5개년 계획('90-'95)을 둘러싸고 강경 保守派(李鵬총리, 姚依林부총리등)와 保守新改革派((江澤民 총서기, 李瑞

環 중앙 정치국위원)의 대립이 지속되었으며 이런 가운데 덩소평은 '90. 10末 연설을 통해 「中央 계획과 市場경제의 調和」를 강조하면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중앙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희생시킬 수는 없으며 시장 경제를 주장하기 위해 중앙계획을 경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덩소평은 「中央계획」과 「시장경제」 조화로 나가되 대세의 흐름은 「主 市場經濟 從 中央계획 體制」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덩소평 死後 中國은 갑작스러운 變化가 오는것이 아니라 서서히 改革派에 의한 開放·市場 경제체제로의 進入이 本格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 45. 중국·소련의 僑胞實態와 이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오늘날 海外에서 거주하는 韓人들은 약4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방 세계에 약170만, 공산권인 中國과 蘇聯에 약 220만 동포가 이국 땅에서 한민족의 뿌리를 내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중국에는 180여만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하나,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中國같은 광대한 지역의 多民族國家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구조사가 부정확한 통계이고, 더욱이 1979년부터 엄격한 산아제한(1자녀 낳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나타내기란 어렵다. 그러나 우리 동포에 한해서는 2년 터울을 두고 2자녀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는 동포들이 근면성실하고 중국에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이다.

1981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漢族을 비롯한 56개 少數民族의 服制手工藝品 전시회에서 발표한 우리 동포인구는 소수민족중 13번째인 183만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동포들중에는 250만명 이상을 주장하는 설이 있다.)

中國은 地理的으로도 가장 밀접하여 17세기중엽부터 移住가 시작되다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등의 수탈때문에 國權回復運動을 위해 급격히 늘어 지금은 중국전역에 살고있는데 인구분포를 보면 약 98%가 동북 3성(만주)인 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에 集團的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두만강 건너편에 위치한 길림성에는 110만여명의 동포가 延邊朝鮮族自治州(1市·6縣에 75만명 거주)를 비롯하여 長春(길림성 省都, 4만2천여명 거주), 吉林市, 輯安縣, 通化地域 등에 살고 있으며, 흑룡강성에는 43만여명의 동포가 할빈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요녕성에는 19만명의 동포가 瀋陽(구 봉천)을 비롯해 대련, 무순 등에 살고 있다. 이외에도 내몽고 자치구에 1만8천여명, 북경시에 4천여명,

천진을 비롯한 하북성에 1천8백여명, 그리고 上海, 南京등에도 1천여명은 넘지않으나 각기 同胞村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우리글, 우리말이 중국어와 共用으로 공식문서와 각종 표지판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말 신문·방송과 1, 230개의 民族小學校, 181개의 중학교, 3개의 大學이 있다.

이들 만주지역 동포들은 거의가 中國국적을 취득했으나 民族意識이 특히 강해 韓人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民族固有의 특성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祖國의 統一問題에도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中國의 小數民族政策은 日本과 달리 自治와 同化를 병행하여 점진적 동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 관광객의 중국방문이 러시를 이루면서 일부 부도덕한 행위가 빚어져 중국교포들의 비난이 자주 일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포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선박편도 열리자 방문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련영내에는 약 43만명에 달하는 동포가 소련이란 複合民族國家의 특수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1979년 소련당국의 통계로는 약 38만 9천명이라고 하며,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약68%가 中央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약30%가 극동지역(사할린 포함)에, 그리고 극소수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서부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다.

오늘날 在蘇聯同胞들은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그리고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소련당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宥和政策 즉, 諸民族에 대한 그들 고유의 言語와 文化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도 한국어 사용비율이 68.6%였으나 1979년에는 55.4%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점은 주목된다. 교육면에서 보면 대부분 소련 市民權을 取得하고 있는 동포들은 여타민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그들은 국비로 9년간의 각종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소련당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러시아어와 함께 한국어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해도 그 교육내용은 공산주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社會主義的 人間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되어 왔다. 이들중 특히 中央아시아 地域同胞는 2~3世로 蘇聯 國籍을 취득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고려인의 後孫으로 과반수가 우리말을 사용하며 傳統文化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할린교민의 4萬名 정도는 南韓出身으로 歸還이 요청되고 있고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사람만도 4千名으로 再會만을 고대하고 있다.

소련에 살고있는 同胞들은 民族同化政策으로 소련화 해도 소련계 韓人(Sovetskikh Kioreitsev)이지 完全同化될 수 없는 人種的 문제가 있다. 한편 이들은 직업면으로 보면 1959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동포의 약 48%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알마아타市에 10萬) 194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지역에 정착하여 주로 농업에 종사했었으나, 최근 도시집중경향은 비농업분야 즉, 각종 기능직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으며, 주요업종은 노동자, 연구원, 예술인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소련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일찍이 帝政러시아 치하인 1860年頃부터 滿洲北方과 沿海州 변경지방에 살다가 日帝의 中國本土 侵略期에 日·蘇關係가 악화되자 蘇聯의 國境政策으로 1937年 中央아시아로 強制移住당했거나, 日帝下에서 강제로 勞力動員된 사람들(사할린 교포의 경우)과 그 후손들로서 오랜 세월이 걸친 현지생활을 통해 그 체제에 적응하게 되었으나, 民族에 대한 共同意識과 民族文化에 대한 향수로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존속시켜주고 있다.

그들중 일부는 공산당 또는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적응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동포들은 일본에 대한 증오감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경향은 한민족의 일본에 대한 잠재의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동포들은 북한을 김일성에 의한 1人獨裁體制이며 스탈린주의적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고 특히, 日本軍國主義의 통치와 스탈린의 독재통치를 실제로 체험한 동포들은 북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며, 오히려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근래에 중국과 소련의 개방화 추세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동포들에게 한국이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들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한·소협조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90. 12. 13-16)로 재소한인 동포들은 크게 고무되고 사기가 진작되고 있다.

또한 '90년에 들어와서 동포들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바는 15개 공화국의 분리독립요구가 증폭하자 재소 한인동포들도 자치주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즉 소련 각지 한인 대표자들이 하바로프스크에서 “在蘇韓民族 代表者 會議”를 개최 “조선자치 공화국” 수립문제들을 논의한 것(소련 노보스 통신 '90. 4. 28) 등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한인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IV

---

북한실상



46.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을 우상과 같이 떠받들고 통일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에서 김일성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그는 헌법상 국가의 주석이며 노동당 총비서이다. 그는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했고 “당과 국가를 창건 한 수령”으로 불리워진다. 그리고 북한의 정통성은 김일성의 혁명전통이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모든 가치의 척도이며 주민들의 생사고락이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자로 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일성을 두고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최덕신 저술)이라고 부르는 등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것으로 예찬한다. 물론 김일성을 예찬하는 어구, 즉 “절세의 애국자”니, “민족의 태양”이니 하는 극찬의 용어들이 무려 87가지나 되는 등 최고의 경칭과 찬양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뿐아니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보고 “통일의 구성”이니 하면서 통일의 장래 운명까지 김일성에 의존할 정도이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의 정신상태는 김일성을 떠나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김일성주의화되어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의식화 교육에 김일성어록을 사용하며 모든 정책을 “김일성 교시”에 맞추어서 결정한다. 즉, “김일성수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했다”느니 한다.

그리고 김일성은 북한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결정할 뿐아니라 자신의 “교시”를 당의 지침으로 하달한다.

이와같은 철두철미한 김일성주의화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김일성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일을 외칠 때는 열광적이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나치스 독일등 강력한 독재체제하에서 볼 수 있는 예로서, 독재권자가 대중을 통괄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조작정책

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김일성의 권위를 조작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해 열광케하는 의도적인 선동선전 때문이다. 그리고 김일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 혁명적 세계관, 혁명가다운 품모, 혁명적 사상의지 등으로 찬미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을 추앙하는 마음이 극한적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광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는 경쟁적으로 또 서사시적으로 감격한 상태에서는 눈물로 표현되며 이를 충성심이란 말로서 찬양된다.

그 뿐아니라 북한에서는 균중적인 행사를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개인에게 역할분담을 시키고 있는바, 꽃을 열광적으로 흔드는 그룹, 목소리를 열광적으로 내는 그룹, 펼펼뛰는 그룹,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등으로 세밀하게 조직을 편성 하고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게 눈물을 흘리고 미친듯이 열광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실상 인간의 내면 세계의 진실된 감정표시인 오욕칠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며, 정치적 목적의 계산된 표현방식의 일환이며 자기과시를 위한 형식적이고 위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 47. 북한주민의 基本權은 헌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원래 헌법상 기본권문제는 個人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이를 어떻게 충족하고 伸張시키고 제약하고 있는가를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된다. 따라서 自由民主主義體制에서 基本權은 人間의 權利 또는 自由權을 중심으로 명시되고 있지만, 공산주의체제에서의 기본권은 社會主義秩序에 의해서 비로소 창조되고 그 범위와 실현의 정도는 공산당의 利益과 관련해서 명시된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본권은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는 국가 사회제도아래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사회생활은 集團主義에 기초하여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基本權이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중심으로 평가가 될진대 私有財産이 허락되지 않고, 個人의 權利가 全體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희생된다면 공산주의 헌법에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장식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언적」의미일 뿐이다.

## ○ 북한헌법에서 기본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북한은 1972년 12월에 기존의 헌법을 고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 기본권의 특성은 헌법 49조에 잘 나타나 있는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기초한다”고 되어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도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집단주의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명시된 권리와 의무도 노동계급적 본질과 사회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公民의 權利와 義務가 集團主義 原則에 기초한다는 이 헌법적 규정은,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 담보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상 기본권리를 세가지로 나누어 명시하여 ① 정치적 권리 ② 사회적 권리 ③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公民의 政治的 權利」로서는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52조) ② 언론·집회·출판·결사·시위의 자유(53조) ③ 신앙의 자유 및 反종교 선전의 자유(54조)가 있고 「公民의 社會經濟的 權利」에는 ① 노동에 관한 권리(56조) ② 휴식에 관한 권리(57조) ③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58조) ④ 教育을 받을 권리(59조) ⑤ 과학·문학·예술활동의 자유(60조)가 포함된다.

상기한 북한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헌법규정과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實際에 있어서는 그들의 소위 사회주의적 規範인 「재산공유제, 집단주의 원칙」과 「통제와 조직의 조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人民’의 자율권과 기본권은 있을지 모르나 ‘個人’의 基本權과 自由權·參政權, 幸福追求權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① 헌법상 宗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산주의교육과 계급의식화로 종교를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교회를 짓고 성도를 모아 예배를 본다고 하지만 전후 세대는 없고 50대이상 사람들만 모였다고 하며, 심지어 「로동신문」에서도 일체보도하지 않고 있다. ② 또 ‘人民’의 주체를 선전하면서 金日成의 주체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해 가는 것으로 ‘충실성교양’, ‘주체사상교양’이 人民보다도 首領에 대한 충성심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서 잘 입증된다.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거부된 것도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의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자유를 인정한다면 個人의 利害관계가 직결되는 자유이니 만큼, 그들의 사회주의규범의 원칙들



이 그 근처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 북한헌법의 특징중 하나인 「主席制」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의 기본권 규정은 장식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主席制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김일성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人 支配體制를 명문화한 것이다.

북한의 ‘주석제’에 대한 해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석제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수령님을 唯一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구현할 것이며,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모습 이 그대로 국가정치권력조직으로 표현된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주석제는 헌법에서 국가주석에게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켜 놓은 것이 마치 사회주의국가체제상 당연한 것으로 美化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나아가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한 개방사회에 있어서 個人의 基本權과 集團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北韓의 폐쇄체제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그 差異가 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당국에게 북한동포의 自由와 人權保障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에 연유한다 할수 있다.

#### 48. 북한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 권리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는가?

어느 사회에서나言論등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은 대단히 크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여론을 조성하며, 각 개인의 사고와 행동 및 생활양식을 일반화시키거나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 출판, 보도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權으로서 최대한 보장되며 확대되는 것이 역사적 추세이다.

북한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를 黨의 완전한 統制하에 두어 정치 선전과 住民政治敎化의 도구로만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北韓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집단적 선전선동자, 집단적 조직자, 집단적 감시자」로 일관한다. 북한은 언론의 성격을 黨性, 革命性, 階級性의 구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 언론의 성격이나 기능은 공산주의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에 따르면 “모든 신문은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특정 이데올로기의 소산으로 당파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의 언론은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한다.

金日成도 “신문, 잡지, 서적같은 출판물이야 말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하는 혁명 과업 실천을 위해 노동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선동의 도구”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北韓에서는 黨性을 이탈한 매스콤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제53조에서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마치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이 헌법의 다른 조항들인 제4조(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10조(계급노선과 균중노

선을 관철한다), 제49조(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기본 권리 자체를 부정하여 언론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刑法도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 정보의 획득과 전달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

북한의 言論, 즉 보도매체는 기본적으로 金日成 父子의 세습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이 박탈된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북한 주민 개인이 알아야 할 것, 혹은 표현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개인 자신이 아니라 바로 黨인 것이다. 북한 주민은 黨이 알려 주는 대로, 표현하라는 대로만 따를 수 밖에 없다.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言論이나 輿論은 존재할 수도 없으며, 또한 언론이나 여론과 같은 용어도 사용치 않고 있다. 다만 보도매체란 용어로서 언론과 여론의 말을 대체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과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출판사는 모두 黨과 政權機關의 소유가 아니면 黨의 지도 통제를 받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문은 勞動黨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정권기관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대표적 일간지이며, 그 밖에 「인민군 신문」, 「로동청년」, 「평양일보」와 같은 정무원의 각 부서와 黨의 외곽단체나 地方黨에서 발간하는 기관지만 있다. 잡지는 黨 기관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로동자」, 「천리마」, 「조선문학」과 같이 정치, 사회, 문화 단체에서 발간하는 것등이 있으며, 주요 단행본 출판물은 金日成 저작선집과 혁명 전통이라는 이름이 붙은 金日成의 행적을 날조한 것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放送도 강력한 革命의 무기로서 기능 하는데에는 신문등 출판물과 다를 바가 없다. 방송은 「정무원」 직속 기관인 中央放送委員會와 그 산하에 道, 市, 郡 방송위원회의 일원화된 체제하에 운용되고 있다.

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텔레비전방송을, 그리고

지방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의 중계 및 자체 방송의 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모든 보도매체를 관장하는 기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전선동부이다. 신문·방송의 제작과 편성, 보도 내용등은 黨機關에서 만 아니라 정무원의 관련 부서나 특수기관으로부터 검열을 받는다. 북한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金日成 父子의 선전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며, 모든 신문의 1면 머리 기사는 그에 관한 기사가 차지한다. 모든 인쇄물은 金日成 父子에 대해 최대의 경칭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의 글자만은 다른 글자보다 큰 활자체로 인쇄하고 있다. 다시 말해 金日成 父子와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합리화하는 표현은 무제한으로 강요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낼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바로 反動으로 낙인 찍히어 숙청과 탄압의 대상이 된다.

북한 신문·방송의 역할은 事實과 眞實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보도매체에는 북한 사회 안의 많은 문제점과 사건·사고 소식과 같은 기사가 일체 보도되지 않으며, 최근의 東歐 社會主義國家의 변화 사태, 중국의 천안문사태에 관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나아가 黨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진실이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金日成의 혁명전통이라든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관한 보도 내용을 들 수 있다.

北韓 住民들의 주요 정보원은 다이얼이 고정된 가정용 라디오나 마을과 직장에 설치된 확성기인 것이다. 유선방송체계, 확성기 방송, 고정 다이얼의 라디오는 북한 당국에서 공급하는 그릇된 정보 이외에는 접하지 못하게 하며 진실이 담긴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로 오직 한가지의 소리, 마을의 확성기를 통한 선전·선동의 목소리만 싫건 좋건 들어야 한다. 이 밖에 일반 주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있다.

北韓에서 여행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통제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유통을 차단키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 지역에서는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소식과 정보도 완전 차단하려 한다.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 5호담당제, 인민반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체제에 불리한 정보의 유통을 막고 있다.

북한의 모든 주민은 黨의 결정 사항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으며, 이웃간에도 서로가 내심의 말을 잘 하기가 어렵다. 가족이 아니면 黨의 방침과 어긋나는 견해나, 뉴스에 관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토론하지 않는다.

북한의 일부 특권층과 간부들은 별도의 특수자료를 통해 국내외 뉴스를 전달 받고 있으나 이들도 이를 비밀로 간주하여 전파하지 않고 있다. 항공기의 조종사도 항공기에 설치된 라디오를 통해 청취한 외국 뉴스를 전파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조선의 출판보도는 전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조선혁명에 부응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이는 북한의 「매스 미디어」가 黨과 政權機關이 주민을 지도, 감독, 통제를 하며 학습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여 일반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된다면 1인독재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 49.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은 형법(형사법)의 본질에 대해서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을 보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지도하는 김일성 부자 즉 이른바 “위대한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1950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스탈린의 독재 형법을 모방하여 23장 301개조문으로된 형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후 1974년 12월 19일에 김부자세습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 17장, 215개 조문으로 개편하고 1975년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형법의 내용은 “반혁명범죄”와 “일반적 범죄”로 대별된다.

이중에서 “반혁명죄”는

①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전복음모(동제51조), 반동적선동선전(동제56조), 조국반역죄(동제52조, 제53조) 등으로 되어 있고

②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죄로는 민족반역죄(동제63조), 반혁명법의 은닉죄·불고지죄·방임죄(동제65조, 제66조) 등이다.

그리고 일반 범죄로는.

① 부르조아 문화의 반입·유포죄(동 제111조)이며

② 불신고죄(동제139조), 허위풍설 날조 및 유포죄(동제120조), 데모 등 집단적소요죄(동제118조)이고

③ 노력낭비죄(동제108조), 불량제품생산죄(동제91조), 원료·자재 낭비죄(동제87조), 김일성훈장·메달등 불법착용죄(동제152조) 등이 있다.

이같은 북한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북한등 전체주의 독재체제 하의 형법은 국가의 혁명목표와 권력의 집중화, 폐쇄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개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은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가운데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북한의 형법은 혁명과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형법이 독재권력을 위한 무기라는 사실은 범죄에 대한 잔인한 처벌규정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북한형법에는 반국가적 범죄, 반혁명적 범죄, 강력범죄, 성폭속사범들에 대해서는 주로 “사형”, “전재산몰수”, 그 가족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고 규정해 놓았고 심지어 공개 “인민재판”등 비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로 일벌백계주의식으로 다스림으로써 범죄 행위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무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가 해당되는 법률조항이 없어도 그와 유사한 조항을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 형법 제64조의 “반국가 행위”에 대한 죄의 범위에는 북한 뿐아니라 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동법 제65조에서는 “반국가 행위”의 죄는 범죄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도 그 나타난 죄의 현상만으로도 처벌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 뿐아니라 “반국가 행위”에 관한 범죄는 죄의구성요건이나 형벌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처벌권자가 임의대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형법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

“반국가적 행위”의 경우, 북한 형법(제64조·제65조)은 “공화국 주

권을 전복·문란 혹은 약화시킬 목적의 일체 행위는 3년이상 징역(무기징역도 가능) 또는 사형·재산몰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보안법(1987. 12 개정)은 “2년이상 징역또는 사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잠입·탈출”의 경우, 북한 형법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재산몰수”등으로 처벌 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의 보안법(제6조)은 “2년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무·찬양”의 경우, 북한 형법(제36조)은 “2년이상의 징역(무기징역도 가능), 사형”등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나 한국의 보안법(제7조)은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합·통신”의 경우, 북한 형법(제67조, 제71조)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한국의 보안법(제8조)은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불고지죄(不告知罪)”의 경우, 북한 형법(제81조)은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으나 한국의 보안법(제10조)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 형법은 바로 한국의 보안법과 같은 법률이지만 그 처벌내용은 오히려 보안법보다 훨씬 중벌로 규정되어 있다.



## 50. 북한주민들은 어느정도의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지가 오래된다. 유엔 인권위원회 등 많은 인권운동단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어떠한 초보적인 경우도 찾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인권”이란 바로, 프랑스인권선언(1789. 8)에서 볼 수 있고 유엔 인권선언(1948. 12)에서 천명된 것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평등한 권리이다. 이같은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국가에서 지켜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인권”의 개념을 “사회주의적 인권”으로 간주하는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혁명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자연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부르쥬아 인권”이라고 비판한다.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은 북한 정권수립이래 전개된 “피의숙청”, “주민성분 분류와 차별대우”, 주민감시, 강제노동등 일련의 비민주적, 비인간적인 폭압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 45년동안 김일성독재권력구축과정에서 수많은 정적들이 “반혁명”이라는 애매한 죄목으로 처참하게 숙청당했으며 전체주민들을 이른바, “핵심계층·기본계층·적대계층”으로 분류하고 또 50여 계층으로 세분하여 감시·통제하고 차별대우를 해 왔다.

북한주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라면 그것은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것만 인정된다. 헌법상 규정된 이른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김일성과 노동당 독재체제를 위해, 소위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하에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북한헌법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등의 조항과 참정권 조항이

있어서 마치 민주주의적 제도를 견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어디까지나 당의 혁명노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 찬동하는 것일 뿐이며 당의 혁명노선을 비판하면 바로 “반혁명분자”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다. 그리고 선거는 당이 내세운 단일후보에 대한 100% “찬성”을 표시 하는 것이며, 복수후보에 대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각종 사회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것처럼, 당의 혁명과업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자, 선동자”이며, 당과 주민을 연결하는 “인전대”일 뿐이다. 그 이외의 사설 정당·사회단체는 제도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마련된 이른바 “혁명의 무기”이며 이같은 무기는 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정치사상범으로 일단 지목되면 그나마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처벌되기 일쑤이며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간에 그 처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웬만하면 “사형과 전재산 몰수”,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정신병자로 취급하여 “공민권”(참정권)이 박탈된다. 그뿐 아니라, 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 이른바 “특별독재대상구역”(현재 확인된것은 12개정도), “노동교화소”에 강제수용한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일 수도 있으나 솔직히, 주민전체를 공포분위기속에 몰아넣는 공포정치의 실상이다.

북한 주민들의 개인생활면에서도 자유나 권리를 찾아볼 수는 없다.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조건은 “배급”제도에 의해 한정되어 있으며 “군”단위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허가를 받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궁금한일, 답답한 일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인적인 모임이나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친목회를 조직할 수 없다.

이와같은 형편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오직 시키는 대로 일하며 “당과 수령”을 지지·찬양하는 것 뿐이다.

### 51. 이른바 「주체사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를 계승·발전시켰다”고 대대적인 宣傳戰을 전개하고 있다.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계기로 개최된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나름대로 체계화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로 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결정한다”는 사회·역사적 원리로 구체화 되면서 사람의 사회·역사적 속성으로 ① 자주성 ② 창조성 ③ 의식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와같이 주체사상은 “上部構造(정치, 철학, 역사, 문화 등)는 下部構造(물질적 생산 관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물사관을 사람중심의 사상으로 대치시킨듯이 가장하여 김일성의 창시를 과시하면서 ① 사상에 있어서의 主體 ② 정치에 있어서의 自主 ③ 경제에 있어서의 自立 ④ 국방에 있어서의 自衛라는 이른바 「주체사상의 지도지침」을 제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장하는 무소불능·만병통치의 무기로 등장되었다.

그러면 「주체사상」의 形成背景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본질을 규명해 보자. 북한은 오늘날 「주체사상」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그 창시를 1930년대 김일성의 抗日빨치산투쟁시기까지 소급함으로써 역사날조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김일성이 ‘주체’를 처음 거론한 것은 원래 1955년 「선전·선동일꾼대회」에서 행한 한 연설이었다고 주장하였었다. 이때는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론을 제기하면서 스탈린격하운동을 전개하기 직전이며, 동시에 박헌영등 남로당파를 숙청한 직후이며 「延安派」,

소련파]의 김일성제거음모(8월宗派사건) 직전이기도 하다. 김일성은 ‘주체’를 내세워 이들을 「종파분자」로 매도, 전면 숙청을 단행하였다. 이와같이 주체사상은 반대세력을 숙청하여 김일성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유력한 무기로 출발하였으며, 오늘날은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을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사상의 천재”로 부각시킴으로써 결국 「주체사상」은 김일성독재체제와 김정일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주체사상은 북한주민의 勞動力을 착취하기 위한 手段으로도 기능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도한다”는 주체사상의 이른바 사회·역사적 원리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인이므로 주인답게 일하라는 것이다. 강제동원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인민대중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만이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이른바 「수령론」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중·소공산대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시키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블럭불가담외교」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주목할 사실은 「남조선」을 美帝의 식민지로 매도, 민족해방을 통한 민족통일의 실현이란 구호밑에 對南革命戰略의 핵심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부 반체제세력이 「주사파」로 호칭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퇴락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이른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 밑에서 오늘날 북한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非主體的인 인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명령일하에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주민은 가장 비창조적인 인간이 되었으며, 창조성이 없는 곳에서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업장마다 일일

이 「경제선동대」가 동원되어 나팔을 불어대어야 겨우 움직이는 실정  
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란 허울좋은 명분을 내  
걸고 세계경제발전의 추세를 외면한 채 폐쇄경제체제를 강행하고 있  
으니 비록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부분적으로 대외개방경제체제  
를 시도하여도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까닭이 없다.

다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걸고 대남선동면에서 다소 성과를 나타  
내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주체사상이 남북한 평화공존관계의 정착을  
통한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의 민족사 전개  
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에 매력을  
느꼈던 일부 좌경세력마저 그 허구성과 실상을 알기 시작한 이후로는  
주체사상을 외면하고 있으니 북한의 대남전략의 수단으로서도 이제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 52. 지난 40 여년간 북한에서의 김일성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권력세습 정도는?

### 〈김일성의 長期執權 요인〉

김일성은 제2차 세계대전후 소련의 대극동정책의 일환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서 제한적인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을 하다가 1941년 일본군헌병대의 토벌에 쫓겨 소련으로 도피한후 그곳에서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편성된 소련첩보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소련에 의하여 발탁, 정권을 장악한 이래 40여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일성은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따라서 40여년의 북한정치사는 한마디로 숙청사로 일관되었다. 북한주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의 巨頭인 조만식선생을 反託을 이유로 숙청하고 이 보다 앞서 대표적인 토착공산주의자 현준혁을 평양대로에서 백주에 테러를 감행, 처단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의 거물인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세력을 한국전쟁의 패전 책임을 물어 숙청하였으며,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을 계기로 「연안파」, 「소련파」가 중심이 되어 김일성제거음모로써 이른바 「8월종파사건」이 일어나자 김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宗派分子」라는 낙인을 찍어 깨끗이 숙청하였다. 이어서 김일성은 1962년 이른바 「4대군사노선」 실시와 더불어 이에 반대하는 군부세력을 自派(빨치산파)임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숙청하였다. 이리하여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로동당」 대회 이후로는 북한의 정치세력을 자기에게 맹신하는 빨치산파로 완전히 일색화시켰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1972~3년경부터 김정일로의 권력후계작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김정일과 동창인 만경대혁명학원 및 3대혁명소조출신자들이 권력의 핵심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김일성이 오늘날과 같은 「神政體制」를 구축하고, 代를 이어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은 강권정치 때문만이 아니다. 교활한 김일성은 이른바 「항일빨치산투쟁사」와 「주체사상」의 날조를 통하여 북한 주민의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우선 성공한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 역사서인 「조선전사」는 총33권중 16권이하의 현대편을 이른바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사와 김일성의 家系史로 완전히 분장시킴으로써 김일성 신격화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창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북한을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터무니없는 정치 선전·선동이 북한주민에게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이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김일성은 북한을 유례가 없는 폐쇄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김일성이 「주체사상」, 「자주노선」등을 표방하면서 아무 거리낌없이 북한주민을 마음대로 주무룰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소 공산대국이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을 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오히려 중·소분쟁을 역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중·소양국의 경쟁적 지원을 유도해 낼 수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권력세습정도 및 展望〉

金日成은 그동안 共產諸國 獨裁者의 權力承繼 과정에서 발생한 암투, 혼란, 갈등 사례를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史上 유례없는 장기 독재자로 군림해온 자신의 死後 문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사로잡혀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死後를 보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한편으로는 金日成主義를 날조하고 이를 代를 이어 實現해야한다고 強辯하면서 자신을 神格化하는데 주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死後 格下를 방지하고 북한 특유의 권력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편으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확고하게 구축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하여 1973년 9월 黨中央委 제5기7차 全員會議(祕密會議)에서 長男 金正日을 후계자로 내정한후 7年餘의 3大革命小組활동을 통한 기반구축 과정을 거쳐 1980년 10월에 있었던 당6차대회에서 金正日을 당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 등 중책을 맡게하여 후계자로 公式化함으로써 공산주의 역사상 최초로 父子世襲體制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80年代初부터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사실상 의 북한 제2의 實權者가 되었고 김정일의 영향력은 각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일이 政治哲學思想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며, 主要政策會議와 行事를 직접 주관하고 있고, 외교분야에서도 1983년 6월 中國訪問을 계기로 외교무대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여 매년 訪北하는 外交使節들을 영접해 왔으며, 1988년도에도 中國, 소련의 사절단을 직접 영접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은 자기의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공장기업소, 군부대등을 現地指導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박성철, 연형묵, 오진우등 黨·政·軍의 고위관계자를 대동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방송, 신문등 宣傳媒體들은 金正日 후계논리의 합리화 宣傳과 그의 영도력 찬양선전 및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같은 김정일 찬양부각 선전은 '88년 9.9절(북한정권수립 40주년 기념일)이후에 더욱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金正日 후계체제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특히 김정일은 1990년 5월 개최된 제9기1차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되어 격상된「국방위원회」에서 김일성위원장 다음으로 제1부위원장이 되어 당에 이어 정권기관(군권)을 장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김일성은 40여년 1人體制를 유지할 수 있었고 김정일후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김일성이 사용했던 수법들이 대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오히려 체제유지에 역작용함으로써 부담요소로 돌변해 가고 있다. 일례를 든다면 김일성 獨裁體制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북조선은 사회주의 지상낙원, 남조선은 생지옥”이란 선동구호가 만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북한주민이 알게 되면 북한정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한체제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북한 교류를 반대하고 더욱더 고립주의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북한의 체제유지에 결정적인 위협은 東歐, 중·소등 공산권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改革·開放의 물결이다.

한편, 김일성의 고령화로 김정일로의 공식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면 김정일 政治力量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북한체제는 결정적인 도전에 직면케 될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개방, 정보개방을 확대시켜 가면서, 국민경제생활의 향상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확산시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권력상실만을 겁낸 나머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북한정치와 북한체제의 앞날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할수 있으며 자발적 변화에 한계가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도 변화 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 53.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체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黨 支配를 명시하고 있음이 공통사항이다. 그러나 個別 공산국가들은 통치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

북한 역시 중국·소련과는 달리 소련점령군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체제 기틀을 김일성집단이 인계받아 북한공산주의체제로 변형시켜가고 있으며 '80년이후부터는 金正日에게 權力을 세습함으로써 독특한 체제로 移行하고 있다.

북한의 權力構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권력구조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정치권력구조는 내용으로 볼때 支配와 服從의 구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력구조는 權力의 핵심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權力裝置로서 구성된다. 權力核心이란 權力組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권력장치란 행정간부·상비군·정당간부등으로 구성되는 支配圈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는 범주에서 규정하면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이며, 權力의 構造的 측면에서 보면 「수령」이라는 절대권력자가 그들의 上位에 있으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總體를 영도하고 있다. 이른바 首領(金日成)의 唯一的 指導體制로 되어 있다. 이를 북한은 “수령·당·대중의 일체”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共產黨이 영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行政機關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집행하고, 黨과 大衆을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引傳帶이며 黨의 외곽단체로서 軍중을 교양하고, 黨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黨의 權威 體系가 정상적인 통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프롤레타리아 黨獨裁體制의 上位에 「수령」이라는 절대권자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가 독재체제의 총체를 유일적으

로 움직이며 영도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黨의 權威보다는 個人的 權威를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물론 북한은 黨規約에 “조선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獨裁期間은 中·蘇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바탕으로 김일성 수령을 어떻게 떠받들고 있는가? 그 명분과 논리는 무엇인가?

북한은 權力承繼에서도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제도화된 직위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인 ‘수령’ 자리를 주고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북한에서 수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즉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영도자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의 總體를 영도하는 최고뇌수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 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首領의 뜻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人體의 뇌수에 비유하여 쉽게 설명한다. 즉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集團의 生命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됩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규정하여 북한주민은 완전히 수령의 손아귀에 의존된 것으로 좀 지나치게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수령에 대한 관점도 주관적으로 강조되어진다.

즉 「혁명적 수령관」이란 용어를 만들어 북한주민 누구에게나 「혁명적 수령관」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

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식화된 관점을 「혁명적 수령관」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은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의 생명으로 간직하는 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 품성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수령론」에 의해서 주민의 충성과 헌신의 필연성을 유도하는가 하면 首領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수령의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정치강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수령의 통치강화를 뒷받침하는 논리인 것이다.

북한은 정치를 사람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능이라하며 과거에는 하부구조인 경제에 정치가 종속되었으나 이제는 정치가 경제·문화모두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가 되어도 정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억지 논리를 펴 수령체제강화를 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54.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실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統治者 1인을 個人崇拜토록 하는 것은 그 이념과 완전히 모순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통치자 한 사람을 英雄視하고 神格化하여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은 黨과 階級과 人民이라는 집단적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理論과 體制의 性格에 비추어 서로 상응할 수 없는 모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실제 정치상황에서는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毛澤東을 「인민의 태양」이니 「중원의 별」이라고 지칭했던 바가 있어 共產主義란 그 이념과 체제가 각각 따로 노는 현상을 보였다.

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에서 북한체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김일성에 반대하는 세력이 숙청·제거되고 1人支配體制의 기반이 구축된 1950年代 末부터였다. 1963년을 전후해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등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실은 책이 쏟아져 나왔다. 예컨대, 어부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회상기를 수습회 읽었더니 삼시간에 파도가 조용해졌다는 奇蹟같은 이야기등을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백두산 정기를 타고 나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전설적 영웅”, “술방울로 총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며 가랑잎 한 장 띄어 큰 강을 건너갔다” 등이 있다.

1966년 부터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더욱 확대되어 「절세의 영웅」이니 「위대한 영도자」, 「백전백승의 영장」이니하는 식으로 극단의 찬양어구와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1969년에는 金日成 우상화의 「聖典」으로 집대성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김일성혁명활동력사」 등의 책이 나온 뒤부터 民族의 太陽이라고 공공연히 선전했으며 「革命家의 家譜」를 출간한 이후는 家系美化, 家系偶像化의 단계로 발전해

갔다.

1970년이 경과하면서 김일성의 神格化는 더욱 그 농도를 더해 갔다. 특히 1972년 金日成의 60회 생일을 기하여 나타났다. 이때에 金日成 동상들이 우후죽순 같이 여기저기 세워져 지금은 무려 3만6천개가 되며 제일 높은 동상은 20m가 넘는 것도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에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기 시작하고 이를 영생불멸의 사상으로 선전하면서 「유일사상 확립 10대 원칙」(1974년)을 공포하여 우상화 교육에 치중했으며,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하였다.

「유일사상 확립 10대 원칙」은 ① 김일성주의에 의한 전사회의 일색화, ② 충성, ③ 절대성, ④ 신조성, ⑤ 무조건성, ⑥ 통일단결, ⑦ 품모·방법·작풍 ⑧ 정치적 생명, ⑨ 조직·규율 ⑩ 代를 잇는 제원칙을 말하는데, 이들은 각기 여러개의 細則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동상 및 초상화나 이것이 실린 모든 작품을 정중히 모시며 철저히 보위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해서도 안되며, 이에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투쟁할 것을 강요 당했다.

이 때부터 家系偶像化도 점차 열기를 더해 갔다. 그것은 金正日의 권력세습과 맞물리고 연결되어 金正日에 대한 우상화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일의 생모인 金正淑을 「혁명의 어머니」라는 말로 호칭하며 그녀에 대한 우상화도 함께 나타났다. 회령에 그녀에 관한 사적지를 만들고, 평양 근교의 「혁명 열사능」을 확장·미화하여 그 한 가운데 김정숙의 흉상을 세워 많은 주민들을 참배케하였다. 이후 신파군을 김정숙군으로, 신파고등중학교를 김정숙고등중학교로, 회령 교원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개명하였다.

金正日은 1980년 이전에는 단순히 「黨中央」으로 호칭하다가 1980년을 전후하여 「향도의 별」, 「미래의 태양」이니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

하였으며 金日成의 우상화를 모방하여 그에 관한 사적지와 학습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金正日의 노래, 그의 逸話集, 그리고 「인민의 지도자」란 책을 발간하여 학습을 시키는 등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86년 부터는 出生地를 백두산이라 조작하고 그의 생가라는 「귀틀집」을 세우고 「김정일화」, 「정일봉」, 「구호나무」(북한 각지에 있는 나무에 김일성, 김정일등의 찬양 구호를 새겨 놓고 이것이 마치 일제시대 때 새긴 것 처럼 날조 선전)를 만들어 이의 발굴운동이란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김정일 우상화도 김일성과 같이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정일 우상화는 그의 아버지인 金日成 우상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방법의 유사함은 다음과 같은 비교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이름에 「日」字를 넣어 사용

- 金聖柱 → 金日成 : 민족의 태양
- 金正一 → 金正日 : 미래의 태양

② 별과 연결시키어 존칭

- 金日成 : 백두의 장수별
- 金正日 : 향도성(嚮導星)

③ 혁명전적지, 사적지의 조작

- 金日成 : 보천보 전적지, 삼지연 사적지 등
- 金正日 : 장자산혁명사적지, 어은 혁명사적지 등

④ 「꽃」을 지정 보급

- 金日成花 : 인도네시아에서 입수
- 金正日花 :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입수

⑤ 백두산과 연결

- 金日成 : 장군봉
- 金正日 : 정일봉

## ⑥ 「출생지」의 성역화

- 金日成 : 만경대 고향집(평양근교)
- 金正日 : 귀틀집 「밀영」(백두산)

기타 詩, 小說, 노래등으로 찬미와 찬양케 하는 것, 경제 건설 현장의 시찰도 「현지도」(김일성), 「실무지도」(김정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양자의 우상화 방법과 내용에서 비슷한 점은 많이 있다.

金日成·金正일에 대한 우상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이들의 독재기반을 적어도 북한 땅에서만은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어 어떠한 반대나 비판 세력도 대두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는데 본 뜻이 있다.

이렇게 황당한 우상화가 북한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사회를 외부 세계와 완전 차단시켜 밀폐화하고, 이렇게 밀폐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 학습등으로 일방적인 사상개조를 실시, 愚民化 政策을 쓴데에 그 주된 요인이 있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개방된 사회에서 외부 세계의 문물을 접하면서 생활했다면 이런식의 金日成 父子의 神話 造作은 벌써 큰 저항에 부딪쳐 파탄이 났을 것이다.

이런 우상화는 共產主義體制에서 모순과 갈등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어떠한 개인 숭배도 혐오, 배격하여 권위의 숭배를 조장하는 어떤 조항도 黨의 규약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소련에서 흐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할 때, 스탈린이 폭력과 테러에 의해 그의 생각에 모두를 절대 복종시키는 것은 레닌적 방법이 아니라고 규탄하였다. 중국에서도 인민 일보(1980, 9. 18)를 통해 “인민들이 모두 봉건 황제에 충성하듯이 프롤레타리아 首領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치적 우상화 방법에 의존해야만 통치가 가능한 처지라면 북한의 政治가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더욱, 김일성 수령에서 김정일 수령으로 이행되는 상황이고 보면 북한 정치권력체제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 55. 『3大革命小組』란 어떤 組織인가?

3大革命小組는 1973년 3월 14일 노동당 중앙위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金日成이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구호 제시와 함께 노동당의 經濟政策을 관철시키고, 당면한 經濟課業을 달성하기 위한 선봉대 역할 수행이라는 명분아래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장, 광산, 농촌등 각 부문에 파견된 지도 소조를 말한다.

그러나 3大革命小組운동은 특히 思想革命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상혁명의 주대상은 北韓體制를 形成하고 있는 地方黨 및 行政, 經濟관료들의 낡은 사상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3大革命小組운동은 단순히 경제 건설의 촉진에만 그 目標을 둔것이 아니며, 政治的 大변혁을 目的으로 한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3大革命小組員들은 노동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과학기술부문의 간부및 청년인텔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小組員의 數는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작은직장은 20~30명, 그리고 큰 직장에는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小組員의 전체숫자는 46,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3대혁명소조원의 전체구성비율에서 약90%가 黨性이 강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3大革命小組員의 임무가 각 급기관의 간부들속에 만연되어 있는 보수주의, 소극성, 경험주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려는데 있음을 알수 있다.

北韓의 最近 출판물을 보면 사회기강의 해이, 보수와 침체, 나태를 경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선봉대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金日成이 1974년 1월 10일에 있는 전국농업 대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종합대학과 농업대학을 비롯하여 여러대학에서 자라난 청년일꾼들이 농촌에 나가 3대혁명을 도와주고 있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우리의 大學에서 자라는 청년인테리들은 지금 농촌에 내려가 농업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 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라고 한것으로 보아 北韓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3大革命小組운동 때문에 농촌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金日成은 “黨中央委員會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에 파견하여 일꾼들을 도와주게한 결과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3大革命小組員들이 인민경제 각분야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北韓은 3대혁명소조결성 15주년을 맞는 1988년에 평양에서 중앙보고 회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黨비서인 계응태는 보고연설을 통해 3대혁명소조원들은 黨員,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선동활동을 대폭강화함으로써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동원토록 하였으며, 또한 낙후된 과학기술향상과 경제사업지도, 관리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생산부진을 타개토록 하였음을 역설한바 있다.

또한 北韓선전매체들도 3大革命小組 결성 15주년에 즈음해 3대혁명소조운동의 강화를 선동하는 논조를 폈는데 평양방송(1988. 2. 8)은 3대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을 없애기 위한것이며,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方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하면서 北韓住民들을 共產主義 새 人間型化하는데 주력토록 할것과, 金日成父子 세습체제 확립을 공고히 하기위해 수령과 黨을 中心으로한 統一단결을 백방으로 強化 대중의 革命的 열의를 드높일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신문(1988. 2. 10일자)도 “3대혁명 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자”라는 題下의 사설을 통해 3대혁명소조운동의 계속

적인 추진을 촉구한 가운데 소조원들은 제3차 7개년 경제 계획과 社會主義完全승리를 위해서 혁명의 정수분자, 견결한 투사가 될것을 선동, 경제과업수행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강조하였다.

1988년 5월 24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200일전투에서 3대혁명 소조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라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200일 전투는 청년들을 더큰 偉勳으로 부른다”라는 사설을 계속 싣고 “3大革命小組員들은 金日成, 金正日 父子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전투에 떨쳐 나서되 맡겨진 課業을 수행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3大革命小組員들이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추진하기 위해 北韓經濟 各部門 현장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지도방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어떠한 근본적인 變革을 目的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지시, 교시, 명령 또는 소수인원으로 구성되는 지도등의 方法으로는 黨이 구상하는 그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은 1970년대 이후부터 對外活動의 強化로 국제무대에 적극진출하게 되었으며, 공산권이외의 西方 또는 중립국들과의 經濟, 文化交流가 확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北韓經濟의 폐쇄성에서 오는 낙후성, 특히 기술적 낙후성을 깨달았고, 이들과의 폭 넓은 기술혁명체제를 추진해 나가자면 思想革命을 더욱 강화하여 金日成思想으로 北韓住民을 무장시키고, 기술도입을 위한 전면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을 비롯한 黨 責任者들은 노동당이 요구하는 3大革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은 北韓의 老幹部들이라고 생각했던것 같다.

그리하여 이들 幹部들을 改造 또는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革新

이란 不可能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金日成父子 세습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黨·行政機關 및 經濟部門에 이르기까지 成分 위주로 간부를 기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하고 특히 제3차 7개년 경제계획(1987~1993)에서 예견된 경제과업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발전과 비약을 하기 위하여는 黨性만이 강한 老간부는 保守와 소극성, 그리고 경험주의에 사로 잡혀 과감한 政策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본것이다.

따라서 진취적인 청년인텔리들에게 金正日이 장악하고 있는 中央黨에서 파견되었다는 큰 권한을 부여하여 地方간부들을 누르고 새로운 것을 대담하게 창조토록 한것이였다.

그러나 당초와는 달리 이들을 金日成父子 세습체제의 政治的 전위대, 근위대로 변신 운용함으로써 金正日 후계체제 구축의 核心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老幹部들은 물론 黨組織 및 여타 조직원들과 끊임없는 반목과 대립을 극도로 축적 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 56. 오늘의 북한체제는 다른 공산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북한은 中·蘇와 마찬가지로 그들 헌법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비록 창조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였지만) 정치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다른 共產國家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主義的 이념의 黨이 1당독재를 실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형태와 중앙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는 集團主義 原理에 입각하여 주민을 조직 통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北韓 共產體制는 중국, 소련, 동구등의 과거 共產國家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北韓의 共產政權은 자생적인 공산주의 운동, 자력에 의한 共產革命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지원에 의해 성립되었다. 소련이 내세운 金日成이 정권을 장악한 집권 초기에는 소련 군정의 지원에 의해 체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내외 정책을 수행했다.

1953년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는 중·소양국의 제도와 정권 운영 방식을 흉내내었다. 이때부터 北韓은 中·蘇의 틈바구니에서 양국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두 공산국가의 체제와 제도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하에 정권을 구축하면서 金日成 革命傳統이란 신화를 만들어 나갔다. 「김일성의 혁명전통」 또는 주체사상을 모든 활동의 규범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공산체제는 특유한 형태로 변모하면서 이단적인 공산주의 정치·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화된 국가들은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했음에도 1950년대 후반부터는 아시아나 동구라파의 많은 공산국가들은 다소 서로 상이한 유형의 공산주의체제로 발전했다. 같은 공산주의 理念을 추구해 왔음에도 공산국가마다

體制의 相異性을 드러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 ① 정치문화를 포함한 상이한 역사·문화적 전통과 국민의식면.
- ② 자체 革命에 의했는가, 혹은 외부로부터 강요에 의한 혁명인가 하는 共產黨의 정권장악 방식의 차이와 권력 구조면.
- ③ 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
- ④ 지리·환경적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인 이외에도 북한의 경우는 金日成의 개인적 성품과 그와 함께 소련에서 들어온 소위 「빨치산 1세대」의 性格이 그 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金日成 개인의 무자비한 성품, 기만적이고 교활한 성격이 오늘의 北韓共產體制의 性格을 형성하는데 많이 작용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날조된 항일혁명투쟁이란 「金日成의 神話」, 다시 말해 허위의 혁명전통을 기반으로 한 「金日成 主體思想」 체계와 개인 우상화의 전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공산체제에는 다른 共產國家에서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등과 특이한 점들이 나타났다. 北韓의 政治體制는 표면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칙마저도 모두 팽개치고 金日成 1인을 우상숭배하는 兵營體制化시켰다. 나아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전연 인연이 없는 金日成·金正日 부자의 봉건세습왕조체제로 발전하여 자유세계는 물론 공산진영으로 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은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金日成·金正日을 絕對神으로 모시고 내부 사회를 밀폐시킨 상황에서 神政體制를 구축하여 놓고 홀로 개혁과 개방과 같은 세계사적 변화의 조류를 거역하고 있다.

기존의 共產國家는 대부분 共產黨 1당독재를 실시해 왔으나, 1985년 소련의 집권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노선과 개혁 정책으로 다수의 공산 국가가 변혁의 물결을 타고 共產黨이 지도적 위치를

포기 내지는 해체되어 다당제를 실시하거나 아예 사회주의 國家임을 포기했음에도 유독 개인숭배에 의존하여 부자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共產主義 獨裁를 실시하는 곳은 北韓 뿐이다.

共産黨의 조직 관리 원칙인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다른 공산국가에서는 다소나마 민주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그런 요소를 갖고 있었으나, 북한에서는 민주란 없고 오직 중앙집중제만 적용하여 권력의 1인 집중화를 도모했다. 中·蘇등에서는 당의 지도자나 간부, 대의원의 선거시에 입후보가 복수로 추천되며, 반대의 투표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선거는 당이 지명한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서, 모두 100% 투표에 100%가 찬성하도록 강요하는 축제 행사에 불과하다. 그들은 100% 투표에 100% 찬성을 완벽 한 민주로 선전하고있다.

경제적으로 중·소와 동구의 여러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와 협동소유 제도를 확립하였으나 개인 소유의 폭은 넓었으며 다소간 개인의 경제적 활동도 가능했다. 북한은 오히려 개인소유의 폭을 점점 줄이고 협동소유도 전인민적 소유라는 이름의 國家所有로 전환시키고 있다. 경제의 관리 운영면에서도 타 공산국가에서는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왔으나 북한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시장 기능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지난 시기에 共產國家들은 대외 개방과 함께 공개 사회, 다양한 사회로 전환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를 더욱 철저히 폐쇄시키고 외부 사조의 침습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동원 하였다.

타 공산국가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기치에서 혁명에 대한 강조는 없애고 사회주의 건설에만 역량을 집중시켰으나 북한은 2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명」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共產國家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수정 내지는 포기하면서 공산체제 내에서 제도의 개혁과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 북한은 아직도 1930년대 스탈린주의로 불리는 교조적 공산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치권력의 속성은 전근대성의 색채를 더욱 짙게 띠며 과거 봉건시대로 되돌아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도도히 흘러가는 세계사적 변화의 조류를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국제 고아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다. 그들은 점증하는 부자세습체제의 모순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중·소 등 후견국가로부터 오는 자극, 동구의 변혁으로부터 오는 영향으로 체제의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지금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개방·개혁의 속도는 느릴지라도 머지 않아 점진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고, 점진적 변화는 곧 대폭적인 변혁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체제 해체의 위험은 더욱 가중되어 일시에 체제 붕괴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57. 北韓에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北韓에서 “우리식 대로 살자”라는 말이 처음 나온것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金日成이 보고 연설을 통해 “주체를 튼튼히 세워 革命위업을 완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데서 부터 시작된다.

김일성은 “우리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 수 있으며, 우리민민의 염원에 맞게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더 잘 건설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北韓政權이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경부터이다.

1988년 1월 26일자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그들을 반대하는 전쟁 책동과 思想, 文化的 공세로 말미암아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은 환경속에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식대로 살자는 黨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시켜야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정세하에서 우리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단결을 공고히 다져야 하며, 현재 닦치고 있는 그어떤 풍파속에서도 주체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政治, 經濟,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우리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식이란 항일 빨치산 식이며, 과거 빨치산 운동시 부하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목숨바쳐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 했다. 그러므로 우리주변에서 어떤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오로지 金日成과 金正日을 위하여 충성을 다바쳐야 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北韓 全地域에서는 직장 지역별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온거리에는 붉은 글씨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나붙어있다.

언뜻 보면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는 주체성 있는 生活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말하는 우리식 속에는 金日成 父子 권력세습체제에서부터 식량배급제로 굶주리는 주민생활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통치체제의 모순에서부터, 부패, 타락한 權力의 형태와,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한정으로 강요되는 무보수 노동과 배급제 생활등을 우리식 이라는 말로 合理化 시킨것이다.

北韓政權이 最近 “우리식대로 살자”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對外的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영향, 특히 중·소의 개혁, 개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對內的으로는 平視(1989년 7월) 이후 외부 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의 개혁·개방 압력과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통제하는 전근대적 사고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지난 40여년의 장기 독재와 경제난에 지칠대로 지친 北韓住民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구호이기 때문에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는 마치 물에 뜬 기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58.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노선과 남북한 수교 현황은?

북한은 아직도 “반제 자주노선”과 “국제공산주의 혁명노선”을 대외 정책노선으로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구공산권이 개방화하고 한국이 소련이나 공산권 각국들과 수교하는등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하는 첨예한 국제정세”라고 강변하는등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하는 국제관계를 이념적 대결, 계급투쟁 관계로 왜곡하는 등 아전인수식으로 위기론을 강변하면서 폐쇄고립노선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共產主義의 命題에 따라 국제정치와 외교를 階級鬭爭 理論에 의한 世界革命의 과정으로 보는 教條的 입장을 취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金日成은 “사회주의 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응당 계급적 원칙을 견지하고 美帝에 압력을 가하여 그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원칙에 충실한다는 명분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 하겠다.

결국 북한의 대외 정책은 “한반도 전체의 共產化”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추진된다. 그 1차적 목표는 비록 북한 김일성 독재정권의 存立을 위한 기반강화와 그 유지에 두고있으나 그 최종목표는 “혁명의 全國的 승리”라는 표현과 같이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連帶性 강화”에 두고 있다.

남북한 외교 역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70년대에는 북한이 제3세계, 특히 비동맹권에서 활동이 강화된 바 있으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외교경쟁에서는 한국에 비해서 현저한 열세를 보였다. 특히 '80년대 말 한국은 88서울올림픽과 공산권 각국의 개혁 개방화를 계기로 “北方外交”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왔다.

북한은 한국의 北方外交를 “두개조선 조작책동”이라고 비방하고 대공산권관계 正常化를 극력 저지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적응력이 없는 북한의 대외정책은 우리의 북방진출을 저지할 수 없었다. 북한은 한국·헝가리간의 국교수립(1989. 2. 1)시, 헝가리에 대해서 “공산주의원칙을 위반한 배신자이며, 돈 몇푼에 팔려가는 파렴치한 나라”라고 비난 하였고, 역사적인 韓·蘇 수교(1990. 9. 30)와 관련, “달러로 사고 파는 외교”니 “분열의 책임자”니 하면서 소련을 맹비난했다.

이는 북한이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도 전근대적인이고 폐쇄적인 냉전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실례이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허황된 선전과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동구의 정치변혁을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에 대응하여 일본과 수교하려는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로 북한이 허구적인 “혁명외교”보다는 實利적인 대외정책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며 남북간의 외교적 경쟁과 대결의 한계를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12월 현재, 남북한의 修交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14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북한은 104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한의 동시수교국은 88개국에 이른다. 이제 한국은 소련과 수교한데 이어, 머지않아서 중국과도 국교정상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한·중간에는 이미 무역사무소가 설치되고 인적·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간의 수교는 불가피한 문제로 되어있다.

## 59. 북한주민의 사유재산 한계는?

북한주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私有財産의 대상과 범위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72. 12. 27 개정 공포)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同 헌법 제2장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가 재산소유제도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賦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國家만이 소유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 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集團의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이상 북한의 헌법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임금이나 협동농장원이 노동의 代價로 받는 분배몫과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消費財에 한해서 개인소유가 인정될 뿐, 설비등 생산수단

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토지의 소유에 관해서는 별도로 「토지법」(1977. 4. 29 공포)에  
서 규정하고 있는데 同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토  
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  
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토지의 私有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농장 상호간에도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유와 다를 바 없으나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간의 차이점은 단지 經營管理와 노동대  
가의 支拂方式에서만 차이를 갖고 있을 뿐이다.

실제 북한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個人財産의 실태를 보면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현금)이나 분배받은 현물(협동농장원의 경우),  
또는 이것으로 구입한 식량, 의복, 부엌세간, 가구, 시계, 전자제품 등  
생활필수품과 개인저축금에 불과하며, 금·은등 귀금속이나 부동산에  
속하는 토지 및 주택은 물론 농기계, 자동차, 역축(소나 말) 등도 개인  
이 소유할 수 없다.

북한 소유제도의 사회주의적 改造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가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958년에 이를 완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결과 현재 북한은 社會主義諸國중 가장 경직  
된 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지정연설에서는 앞으로 제3차 7개년계획  
이 끝난 후에는 도시와 농촌, 도시근로자와 농업노동자간의 계급적 격  
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協同的 所有」를 점차 「全人民的 所有」로 전환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소련이나 중국의 개방과 개혁과  
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소유나 私營企業의 허용 등 변화추세와는  
전적으로 역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경직된 소유제도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에서 활력  
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分配制度와 함께 生産性 저하의 기본요

인이 되고있어서 북한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 60. 북한에서의 賃金基準과 계층별 소득수준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家族所得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그 주요 원천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社會主義體制下的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사업도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은 오로지 육체적·정신적 노동에 대한 代價로 주어지는 賃金이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代價支拂의 기본 형태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소, 국영농목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勞賃과 협동농장원들의 「노력일」에 따르는 報酬로 구분된다. 노임은 통상 노동을 수행한 매월말에 현금으로 지불되는데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에 따라 정액임금과 도급임금으로 나뉘어진다.

定額賃金制는 노동의 기준량을 제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작업 결과를 숫자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며, 만약 都給勞動制를 적용하면 제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노동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이다. 따라서 정액임금제도는 노동의 시간과 근로자들이 보유한 기술수준 즉, 기술등급으로 규정되는 노동의 질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된다. 이는 한국의 월급제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북한의 정액임금제는 월급제와 시간제 임금으로 세분된다.

都給賃金制는 대체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제도이며, 도급임금제하에서의 노동 결과는 생산물의 수량이나 작업량으로 평가되는데 대체로 약 2,600여종의 작업종류에 대해 勞動基準量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이 수행한 작업실적과 이를 대비하여 임금이 결정된다.

한편, 북한은 노동 의욕을 자극시키기 위해 탄광, 광산, 제염 등 중노동 부문에서는 작업반우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목표의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우대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그외에

특수노동조건(유해노동)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정액임금이  
나 도급임금)에다 加給金이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불하기도 한다.

協同農場員에 대한 분배량의 결정은 별도의 농업노동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 결산분배시 응분의 생  
산물을 분배받게 된다.

農業勞動의 평가에는 「협동농장 기준작업 정량표」가 미리 작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농장원의 벼수확 작업에 참여하여 하루 300평  
의 벼를 수확하였고, 작업이 질이 9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할 경  
우 작업원이 당일의 작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노력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협동농장 기준작업 정량표」에 의하면 벼수확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에 속하므로 5급 노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1.5노력일  
수로 평가받게 되어 있다. 단 벼수확작업의 노동정량은 1인이 하루  
에 200~250평을 수확하고 작업의 질이 100%로 평가되었을 때만  
1.5노력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노동자의 작업량  
은 300평이므로 50평을 초과해서 수행하였으나 작업의 질은 95%  
이므로 이 농장원이 평가받을 수 있는 노력일수는

$$1.5\text{일(규정공수)} \times \frac{300(\text{실제 작업량})}{250(\text{하루작업규정량})} \times 0.95(\text{작업의질}) \\ = 1.71(\text{노력일 수})$$

가 된다. 따라서 이 농장원은 하루의 벼수확 작업으로 1.71 노력일  
을 평가받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각 작업종류별로 1년간 평가받은 노력공수를 합계하여  
연말에 가서 그 정도에 따라 결산분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제  
기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노력공수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  
다는 것이며, 그 결과 농민들의 작업규율이 지켜지지 않아 농업의 生  
産性이 둔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정액임금수준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북한근로자 직종별 임금수준

직종 및 직급		구분	임금(원)	비 고
사무원	부 장 급		300-150	당 정치위원, 정무원 및 당부장, 특급 기업소지배인, 과학원원사
	지 방 단 위		100-150	
	일 반 사 무 원		70	
기술자	책 임 자 급		150-200	1-2급공장, 기업소지배인 및 기사장
	5 급 기 술 자		75-80	
노동자	중 노 동 자		130	광부, 탄부, 제철, 제련공
	경 노 동 자		90	일반기계 운전공
	기 타		60-80	
교 원	대 학 교 수		200-250	
	일 반 반		80	
군 인	장 성 급		250-490	
	영 관 급		120-215	
	위 관 급		85-110	
기 타	의 사		120-250	평양산원의 경우
	배 우		200-300	인민배우, 공훈배우급

## 61. 북한의 물가와 북한화폐의 換率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상품 가격이 시장을 통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제정한 國家計劃價格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가격의 제정방법과 절차도 가격의 「일원화 체계」에 기초하여 정권기관이 통일적으로 제정하는 가장 철저하게 계획화된 가격체계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거래에 이용되는 價格의 種類는 국영기업소 상호간에 주고 받는 생산물에 적용하는 도매가격(산업도매가격), 국가의 상업기관들이 협동농장과 농장원들로부터 생산물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농산물의 소매가격, 상업망에서 주민들에게 소비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소매가격과 각종서비스에 따른 운임이나 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거래되는 물건은 소유의 主體가 달라질 때 즉, 국영기업소나 국가 상업기관의 협동농장이나 개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는 상품으로 되나 국영기업소 상호간에 판매될 때는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북한 價格體系의 특징은 대중소비품의 값은 낮게, 기호품과 사치품 및 공급량이 부족한(제한되어 있는) 상품의 값은 대중소비품 값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가격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식량이나 된장, 간장 등 기초식료품과 작업복, 비누 등 대중생활품의 가격은 실제 생산원가보다 낮은 값으로 공급되고 있는 반면, 외출복이나 시계, 구두, 가전제품 등의 가격은 생산비와는 관계없이 엄청나게 높은 값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消費生活 여건상 특징은 가격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공급량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생활품의 양은 「공급카드」에 의한 배급기준 범위내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물건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는 없다.

이상의 物價體系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북한에서의 화폐기능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하여도 「량권」이 있어야 식당에서 밥 한그릇을 사먹을 수 있고, 국영상점에 물건이 공급되어야 內衣 한벌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장마당」(원래는 농민시장임)에서 암거래 되는 물건의 값은 실제 배급가격보다 수십배 내지 수백배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쌀 1kg의 암거래 시세는 25원으로 배급가격 8전과 비교하면 무려 300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에 대한 개념도 공식적으로는 「國定價格」이 상향조정 될 때 총체적인 상향조정의 정도가 인플레이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상품의 供給量에 반비례하여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인플레이가 만연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북한화폐의 換率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환율은 公定換率(기준환율) 즉, 북한이 국정가격체계를 기초로 산출한 환율과 대외무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상업환율(무역환율)은 각각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공정환율은 1\$(美貨):1.02원(北韓貨)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무역환율은 1\$(美貨) : 2.23원(北韓貨)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은 對外去來에 있어서 외국화폐에 대한 원貨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고 북한주민들의 외화소지 및 외화상점 이용을 통제하는 등 외화관리 목적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중앙은행권과는 별도로 소위 「외화와 바꾼돈」이라고 표기된 「外貨兌換卷」(무역은행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제국의 화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푸른바탕색, 자본주의국가 화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붉은 바탕색의 외화태환권을 교환해 주고 있다고 한다.

經濟開放化 이후 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외화태환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외화태환권과 중국 인민폐는 공식적으로 1:1의 가치를 갖도록 한 것이나 실제로는 인플레이가 반영되어 외화태환권과 인민폐 간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로 암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화폐 역시 외화태환권과 중앙은행권 사이에는 조만간 새로운 암거래 시세가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1989년 현재 북한원화와 한국원화의 환율을 계산해보면 貿易換率을 적용하면 북한 1원은 우리돈 305원에 해당되며, 基準換率을 적용하면 북한 1원은 우리 돈 약 666원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생필품 가격

구 분	품 목	단위	가 격
식 량	쌀	1kg	8전
	밀	"	8전
	콩·팥	"	7전
	옥수 수	"	6전
육 류	쇠고기	1kg	7원50전
	돼지고기	"	7원50전
	닭고기	"	4원55전
조 미 료	간장	1l	18전
	된장	1kg	20전
	소금	"	15~20전
주류및담배	소주	1병	2원50전
	인삼	"	8~16원
	맥주	"	1원
	담배(금강산, 황금별)	1갑	1원20전
의 류	신사복	1착	115~300원
	동내의	"	35원
	Y샤쓰	"	16~40원
	화학생복	"	45원
기타공산품	자전거	1대	160원
	라디오(북한제)	"	250원
	흑선 TV	"	300~600원
	선봉기(북한제)	"	40~75원
	녹음기(외제)	"	350~1,200원
	냉장고(북한제)	"	250원
	세탁기(북한제)	"	150~280원

## 62. 북한의 租稅制度는?

일반적으로 租稅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私經濟 부문으로 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총칭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토지 및 생산수단이 국공유화 되어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私經濟 부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財政 수입의 원천도 표면상으로는 租稅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예산수입 항목을 보면 1974년까지는 「사회주의 경리수입금, 住民諸稅, 대외원조」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75년 이후부터는 세입 총액의 2%를 점하고 있던 住民諸稅를 폐지하고 세입의 전액을 소위 「사회주의 경리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때부터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었다고 선전해 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세입 원천인 「사회주의 경리수입금」의 내역을 보면 去來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利益金, 기타 수입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거래수입금은 「사회주의 경리수입금」의 55%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입원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사회순소득 부문 중 국가의 중앙집권적 순소득에 속하는 사회주의 경리에서 파생된 국가이윤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념 규정과는 달리 이를 西方의 개념에서 보면 거래수입금은 주로 소비재에 부과되고 있으며, 생산재 생산부문에서 창출된 사회순소득과 일부 서비스부문의 생산에 대해서도 부과됨으로써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므로 間接稅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기업이익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각종 공장·기업소에서

일정 기간에 얻어진 이윤 중 일정 비율의 유보이윤을 공제한 잔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 총 예산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西方의 개념과 비교할 때 일종의 法人稅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협동단체이익금은 협동농장과 같은 협동적 소유부문의 각종 단체가 생산활동에서 얻은 이익중 일정 비율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협동단체소득세라고도 한다.

기타수입금은 감가상각회수금, 벌금, 關稅, 원조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세입원을 분석해 보면, 용어면에서는 세금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세금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총생산(GN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북한의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989년 현재 북한의 재정부담률은 70.9%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15.6%에 불과하다.

결국 북한주민들은 자신이 경제활동에서 창출한 생산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한 후 일정액의 개인 소비자금만을 임금으로 지불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있는 형편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朝三暮四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 63. 최근 북한의 産業構造와 연간 경제성장률 및 대표적인 생산 시설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국민총생산액에서 각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시화 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각 산업부문별 국민소득 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한 자료는 없으며, 국민소득을 생산적인 접근방법으로 정확히 추계해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간산업별 구조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최근 북한의 경제실정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북한의 全體産業生産(GNP)을 100으로 했을때 광공업과 건설부문은 64%, 농림·수산업은 20%, 서비스산업은 1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면 북한은 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나, 3차산업이 극도로 낙후되어 있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 단계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산업사회는 1차산업보다 2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2차산업보다 3차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단계로의 발전과정을 견고 있다.

1989년 북한의 실질 經濟成長率은 2.4%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93) 중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북한의 공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生産施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는 북창화력발전소(시설용량 160만Kw), 수풍발전소(시설용량 70만 Kw), 평양화력발전소(시설용량 50만Kw) 등이며 현재 규모 확장을 위해 건설중인 발전소로는 위원발전소(15만Kw→39만Kw), 태천발전소(46만Kw- 80만Kw)등을 들 수 있다.

製鐵工業에 있어서는 김책제철(선철 126만톤, 강철 140만톤), 황해제철(선철·입철 105.5만톤, 강철 124.7만톤), 천리마(구 강선)제강등인데 현재 김책제철공장은 제2단계 확장공사로 압연시설을 확장중에 있고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 천리마제강에 새로운 200만톤 생산

능력의 제강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주요제련소는 남포제련, 단천제련, 문평제련, 홍남제련 등이 연, 아연, 동, 금, 은 등을 제련하여 일부제품은 수출전략 상품화하고 있다.

북한의 기계공업 중 대형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은 북중기계, 낙원기계, 대안중기계 등이 있으며, 기술수준은 낮으나 소형발전설비, 화학공장설비, 대형산소분리기, 1만톤 프레스 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工作機械를 생산하는 공장은 만경대공작기계, 희천공작기계가 대표적인 생산공장이며 내수용의 각종 범용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초보적 단계의 자동화 공작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은 미약한 단계이다. 기타 수송기계공장으로는 청진조선소, 남포조선소에서 2만톤급 화물선과 3,500톤급 어선을 생산하며 승리자동차공장에서 트럭을,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수송重量化의 일환으로 8축전기 기관차를, 금성트랙타공장에서 농업용 트랙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化學工業에서 정유공장으로는 승리화학(웅기정유)과 봉화화학공장이 각각 연간 200만톤과 150만톤의 정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홍남비료, 해주인비료, 2.8비닐론공장 등이 비료와 합성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제3차7개년계획 중에는 순천비닐론공장(비닐론 10만톤능력) 사리원 카리비료공장 등의 건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순천비닐론공장의 제1단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멘트공장은 순천시멘트, 승호리시멘트, 2.8마동시멘트, 해주시멘트, 천내리시멘트 등이 있으며 1989년에는 서독에서 설비를 도입한 상원시멘트 공장이 가동되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이며耐火벽돌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샤크링카는 단천마그네샤크링카 공장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기타 광산으로는 무산과 은율의 철광산, 검덕의 연·아연광산이 북

한 굴지의 광산들이다.

#### 64. 북한의 경제규모 평가결과에 있어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기관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국의 경제력이나 총량규모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흔히 國民所得推計가 이용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소득의 개념과 사회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소득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資本主義國家들의 국민소득지표에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NNP), 협의의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 그리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및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國民所得은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협의의 국민소득(NI)과는 역시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상품수송과 같은 생산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부문을 비생산적 활동으로 취급하여 국민소득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資本에 대한 이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변형된 형태로 사회순소득, 또는 생산수단 가치에 포함하는 등 애매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사용되는 국민소득 概念의 相異로 인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을 GNP 개념으로 추계한 결과는 국내외의 각 연구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추정되기 마련이다.

또한 북한은 폐쇄된 社會體制와 통제된 情報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가 충분하지 못하며, 정치 宣傳的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여 일부 발표된 통계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많아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박약하다. 社會主義社會의 이러한 특수성은 소련 예산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조차도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기 이전에는 발표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발표한 통계에 대해 북한 GNP를 추정하는 각 연구기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기본視角과 기초통계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그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화폐단위로 추정된 GNP는 다시 國際比較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통화 즉 美달러化로 환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북한 경제의 특징상 상품가격이 국가계획기관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計劃價格으로 되어 있으며, 화폐의 기능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도 서방과는 다르다. 북한은 현재 상업환율(무역환율)과 공식환율(기본환율)등 複式換率制度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중 공식환율은 실제 구매력이나 화폐교환 비율과는 관계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예로서 1989년의 경우 북한원화의 對달러 상업환율은 1북:2.23 북한원인데 비해, 공식환율은 1북:1.02북한원으로 그 차이는 2배가 넘는다. 따라서 각 기관이 추계한 북한의 GNP가 북한원화 기준으로할 경우 같은 값으로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선택여하에 따라서는 상호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국내연구기관들의 북한 GNP 推計作業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수가 비교적 용이하고 일관성이 있는 북한의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GNP와의 개념상 차이를 조정하여 북한 원화로 표시된 GNP를 추계한다. 그 결과를 다시 북한의 상업환율을 적용하여 美달러로 환산된 북한 GNP를 최종적으로 추정해 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물론 추계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분배·지출 등 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기초자료의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분배접근 방법으로서 북한이 이용하는 「시초소득총화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데 분석자에 따라서는 다소 변형된 모델을 개발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北韓 GNP평가에 대한 논쟁은 결국 북한사회가 보다 개방화 되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북한 스스로가 공개하기 전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국내외의 어떤 기관에서 추정된 GNP가 북한경제 현실에 가장 접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에 비친 북한경제 실상들은 북한 스스로가 주장하거나 발표한 통계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낮은 국민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1987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개관」이란 책자에서는 1986년의 북한 1인당국민소득(북한개념)은 2,400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통계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중국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증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발표치는 宣傳목적의 허위통계로 볼 수 밖에 없다.

## 65. 「合營法」 실시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북한은 1984년 9월 8일 「合營法」을 제정 공포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조달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 중국이 추진한 현대화 정책의 성과와 특히 1979년 7월 1일 중국의 제5기 2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하게 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의 5년간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은 '70년대 후반에 추진되었던 6개년계획 기간 중에 서방 제국으로부터 借款導入과 무역신용을 이용한 자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80년대에는 「합영법」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 서독, 핀란드 등 서방제국의 기업들과 합작투자 유치를 위한 교섭을 전개한 바 있으나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서방자본의 유치에 실패한 원인이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制度的 보장과 같은 환경의 미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합영법」 발표 이후 100여건에 총 5억 2천만 불이 해외로부터 북한에 투자되었고, 그 중 70건은 在日조총련, 10건은 서방기업과의 합작이며, 나머지 20건은 사회주의제국 및 제3세계와의 합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확인되고 있는 합작 투자 기업은 1990년 말 현재 총 67건이다.

합영법실시 이후의 유치건수는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1990년에는 4건 정도로 그 실적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그 대상이 주로 일본 조총련계 상공인과 이루어진 것이며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제국들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당초 북한이 기대하였던 서방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에는 서방기업이 등을 돌림으로써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자력갱생」 방식의 「증산과 절약투쟁」으로 설정하는 한편, 1990년 5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를 통해 합작투자 유치 목적으로 설치한 바 있는 정무원의 합영공업부를 신설 1년 6개월 만에 폐지 시켰다. 물론, 이들이 서방과의 합작 자체를 북한이 포기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합작투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보면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한국은 서방제국의 대북 경제협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서 북한경제의 내부적 모순이나 문제가 해결 될 경우(이를테면 경제개혁, 서방에 대한 채무) 서방기업의 대북진출은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北韓의 合作실적현황

연 도	대 상 국	내 용
'85	조총련(日本)	○ 낙원백화점(지방31개 체인)
"	"	○ 대동강자동차수리공장
"	"	○ 창광산호텔커피숍
"	시에라레온	○ 플라스틱제품 생산합작(북한은덕상사)
"	佛	○ 양각도호텔(47층규모)
"	브르키나파소	○ 광업합작회사
'86	조총련	○ 운산금광개발
"	"	○ 조·일우호의료회사(김만유병원)
"	"	○ 평양골프장
"	"	○ 조선국제합영총회사
"	"	○ 모란봉합영회사(피복)
"	"	○ 은하수식당
"	"	○ 금광개발합작
"	시에라레온	○ 금광개발합작
"	가나	○ 전통의약제조합작



연 도	대 상 국	내 용
'87	조총련	○ 대동강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
"	"	○ 동해관식당
"	"	○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1천만불규모)
"	"	○ 원산애국편직물공장
"	"	○ 남산합영회사
"	소련	○ 이와노프·회천국제연합회(조정공작기계 생산)
"	"	○ 고리끼·회천공작기계공장(후라이스반생 산)
"	"	○ 천해양식공동기업소(다시마)
"	"	○ 어업공동기업소(동해해저자원개발)
"	잠비아	○ 농장합작
"	中國	○ 평양냉면관
"	탄자니아	○ 농업합작회사
'88	조총련	○ 평양실크합영회사(생사·견직물생사)
"	"	○ 청천강합영회사(회천제사공장)
"	"	○ 동대원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
"	헝가리	○ 식당
"	소련	○ 의류생산합영 -능라도피복공장등 60여개공장 참가
"	"	○ 농업생산합영 -소 고르샤롭스키 소포호즈국영농장
"	蒙古	○ 코크스탄광공동개발합작
"	中國	○ 도문강식당(약 80만불규모)
'89	조총련	○ 신흥합영회사-전자제품
"	"	○ 명전합영회사-의료기구
"	"	○ 조선합영은행(20억엔규모)
"	"	○ 평양포장재-수출용포장
"	"	○ 함흥화학공장
"	"	○ 덕산건설기계합영회사-중장비수리
"	"	○ 광포합영회사-오리털가공생산
"	"	○ 창광합영회사-식당
"	"	○ 조선만풍합영회사-돛자리등 경공업품생산
"	"	○ 단밤연구소
"	폴란드	○ 식당
"	中央阿	○ 금광석합영회사

연 도	대 상 국	내 용
'89	蒙古	○ 내화벽돌생산공장
"	소련	○ 성계기공공장
"	"	○ 모란봉식당
"	"	○ 동의학센터
"	재미교포(美國)	○ 고려상업은행(설립인가)
"	"	○ 금강산국제개발회사(〃)
"	"	○ 금강산국제관광회사(〃)
'90	조총련	○ 밀립단일 합영회사(위생 젓가락 생산)
"	"	○ 함흥화학 합영회사
"	조총련	○ 평양골프연습장 개장 - 칠성합영회사 운영
"	조총련	○ 대덕산합영회사(수산물 가공)

## 66. 최근 북한의 外債 현황과 무역실태는?

1989년 현재 북한의 총 외채 규모는 67.8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對西方 외채가 전체의 59.6%에 해당하는 40.4억불이며, 대공산권 외채는 40.4%인 27.4억불로, 대서방 외채가 대공산권 외채보다 많아 해외자본의 대서방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외채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1970년대 후반의 제1차 연체파동 이후 점차 증가되어 1980년을 정점으로 1984년까지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고, 1985년 이후 또 다시 외채규모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을 분석해 보면 1975년 제1차 연체파동 이후 북한은 서방제국으로부터 새로운 차관이나 延拂輸入이 어렵게 되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 운동의 전개와 보유하고 있던 금의 매각등을 통해 延滯額의 원리금 상환에 주력한 결과 1984년에는 23억불 수준까지 감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초 국제석유파동, 1차금속제품의 국제가격하락 등 국제경제여건의 악화와 새로운 군사장비 도입 등으로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어 1985년 이후 다시 증가되었다. 특히 1986년 이후 美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북한의 對西方 決濟通貨 중 일본 「엔」화 및 서독 「마르크」화가 폭등,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 외채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채의 절대규모가 그리 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경제의 元利金 償還能力 부재에 있다고 하겠다.

1989년 현재 북한의 GNP에 대한 外債 비중을 보면 32.1%로 같은 해 한국의 14%(총외채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외채상환에 필요한 외화는 1차적으로 국제수지(國際收支) 흑자로 마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借款이나 援助등 새로운 외자의 도입으로 이미 도입되었던 외채의 원리금

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計劃經濟體制의 폐해와 경제운영 및 管理能力의 부족으로 도입된 외화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수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에서 노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국제금융기관이 조사한 국제신용도에 의하면 북한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에 랭크되고 있어서 악성債務國으로 낙인 찍혀 있으며, 1988년 중에도 스웨덴은 북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평양주재 자국대사관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 북한의 연도별 외채현황

(단위 : 억불)

연도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서방권	22.2	17.8	16.4	15.6	11.3	13.4	22.3	28.0	27.3	40.4
공산권	12.4	13.4	12.6	11.9	11.7	15.6	18.3	19.8	24.7	27.4
합 계	31.2	21.2	29.0	27.5	23.0	29.0	40.6	47.8	52.0	67.8

1989년 현재 북한의 貿易規模는 수출입 합계가 47.9억불 수준이며 무역 총액 중 69.2%가 대공산권 무역이고 나머지 30.8%가 비공산권 무역이다. 제3차7개년계획과 더불어 북한의 무역은 소련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50% 수준에 이를 정도로 소련에 의존하여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소련을 위시한 동구제국이 종래의 구상무역 (Bater Trade) 방식과는 달리, 硬貨 결제에 의한 새로운 무역방식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외환부족 상태에 있는 북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상품은 광산물과 농수산물 등 1차산업제품을 비롯하여 공산품의 경우에도 가공도가 높은 제품보다는 선철, 강철, 비철금속(연, 아연) 등 1차금속제품과 시멘트, 마그네샤크링카 등 가공도가

낮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경제의 산업생산력과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현황

(단위 : 억불)

연도 구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수 출	13.6	15.6	12.1	15.3	13.2	13.4	13.5	15.1	16.7	19.9	99.5
수 입	14.3	18.6	16.2	17.0	15.1	13.9	17.2	20.6	23.9	31.6	28.5
무역수지	-0.7	-3.0	-4.1	-1.7	-1.9	-0.5	-3.7	-5.5	-7.3	-11.7	-9.0

## 67.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의 내용과 전망은?

1987년 4월 21일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회의에서 북한은 1987년부터 추진될 「제3차 7개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동 계획에 앞서 추진된 「제2차 7개년계획」은 당초 1984년을 목표연도로 하였으나 1985년 중앙통계국 발표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 것과는 달리 사실상 목표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기간 종료 후 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1987년부터 현행 「제3차 7개년계획」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제2차 7개년계획」실패의 근본적인 요인은 물론 동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본과 技術導入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인 바, 이는 '70년대 후반의 對西方 延滯波動으로 당초 시도했던 대서방 자본·기술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련이나 중국도 자체의 경제개발 및 현대화계획 추진으로 對北支援이 불가능하였던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첫째, 기존공장·기업소의 技術改造를 추진하여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1980년 10월 북한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바 있는 소위「사회주의 경제건설 10大展望目標」를 달성한다는 것이며, 둘째,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여 계획기간내에 주민들의 「衣·食·住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과업 달성을 위해서 기간중 국민소득은 연평균 7.8%, 공업총생산은 연평균 10%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성장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를 포함한 주요 산업별 물량 계획 지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제3차7개년계획 주요생산 및 건설목표

구 분	6차당대회에서 제시 했던 10대 전망목표	3차7개년계획목표	비 고
발전량	1,000억kwh	1,000억kwh	당초목표불변
발전능력추가조성	-	수력400만kw	당초목표불변
석탄생산능력	1억2,000만톤	1억2,000만톤	당초목표불변
강철생산능력	1,500만톤	1,000만톤	당초목표하향조정
유색금속생산능력	150만톤	170만톤	당초목표상향조정
시멘트생산능력	2,000만톤	2,200만톤	.
화학비료생산능력	700만톤	720만톤	.
화학섬유생산능력	-	22.5만톤	
합성수지생산능력	-	50만톤	
직물생산능력	15억m	15억m	당초목표불변
알곡생산	1,500만톤	1,500만톤	당초목표불변
수산물생산	500만톤	1,100만톤	당초목표상향조정
간식지개간	30만정보	30만정보	당초목표불변
양식장면적	-	10만정보	
농업기계화	-	100정보당	
주택건설	-	트랙타10~12대	
		매년15~20만세대	
인구1인당1일육류공급		179g	
물고기		400g	
쌀		1되	
식용유		30g	
과일		300g	
사탕		100g	

「제3차 7개년계획」의 발표내용상의 特徵을 분석해 보면, 첫째, 과거의 계획에서 경제성장목표를 최소한 연평균 10%이상으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7.9%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둘째, 技術落後를 의식하여 과학 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간중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貿易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평균 18%의 무역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는 기본과업에서 아직도 주민들의 「衣·食·住」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6년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산업별 생산능력에 비추어 볼때 북한이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부문별 生産 및 建設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설능력을 2.3배 내지 4.5배로 확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북한이 6·25이후 1986년까지 33년간 경제건설에 투입한 資本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7년동안에 동원할 수 있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분석에 의하면 계획기간중 연평균 2.6~4.0%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와 같은 비중의 군사비지출이 지속될 경우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GNP의 21~30% 수준까지 가능하나 역시 자본부족이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의 최대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계획3차년도인 1989년 북한의 실질 經濟成長率은 전년도의 3.0%보다 더욱 둔화된 2.4%에 불과하여 계획전반기부터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북한은 1988년 2월부터 9월까지 소위 「200일 전투」란 經濟動員運動을 전개한데 이어 9월 이후에도 「새로운 200일 전투」를 강행, 1989년까지 지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증산과 절약투쟁」을 정책적 구호로 내걸고 폐쇄적 경제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68. 「협동농장 決算分配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협동농장에서의 결산분배란 “농업의 협동적 경리(경영)에서 개인 소비 몫의 분배과정을 동반하는 연간 사업의 결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장이나 기업소의 경우는 決算과 分配를 따로 분리시켜 하고 있으나 협동농장경리(경영)에서는 농업생산의 특수성에 따라 분배를 결산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풀이하고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分配몫을 결정하는 방법은 협동농장의 현물 및 현금총수입중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생산비)을 먼저 공제한다음, 협동농장 자체의 공동축적기금과 각자 일년간의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결산분배는 농장원들의 총화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소유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동농장의 토지 및 생산수단은 국유와는 달리 協同的所有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노력일」이란 농장원이 자연적 시간개념에 의해 작업에 참가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노력일」계산기준, 즉, 「협동농장 기준작업 정량표」에 의해 평가된 노동일수를 의미한다. 「노력일」의 산정방법은 「북한에서의 임금기준과 계층별 소득수준」에서 이미 예시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본 문항에서는 결산분배 절차와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협동농장의 연말 결산분배 시기는 통상 추수와 탈곡이 끝나게 되는 11월 이후에 실시한다.

決算 內容은 농산물의 국가고시가격(국정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협동농장 연간 총생산액, 연간 지출된 생산비의 목별명세, 협동농장원들이 연간 가득한 「노력일」 총수 및 분배량 명세가 포함된다. 이때 작성된 결산서는 「郡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결산심의회에서 하

달된 비용산정원칙 및 목별 비용규모 결정에 의한 것이며 다만 형식적으로는 농장원총화를 통해 결산하게 된다.

결산서의 내용에서 분배 몫이 결정되기 이전에 공제되는 항목과 비중을 보면, 생산비는 총생산액의 28.7~42%, 종자대 2~3%, 사료대 0.7~1%, 비료대 2~4%, 농기계작업료 7%, 관개사용료(수리비) 7%, 농기구 구입비 10%등으로 되어있다. 공동축적기금이란 협동농장 자체로 추진하는 시설확장기금을 말하며 총생산액의 10%이다. 사회문화기금 10%, 원호기금 3% 등도 공동소비기금으로 생산비와 함께 공제된다. 따라서 연간총생산물(혹은 생산액) 중 공제몫의 비중은 55~60%가 되고 나머지 40~45%를 가지고 각 농장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농장원에 대한 분배량의 결정 방법도 세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① 기본적인 분배, ② 작업반우대제 실시하에서의 분배, ③ 분조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이다.

기본적인 分配方法은 국가계획목표 속에서 각 협동농장이나 수행해야 할 생산목표를 90%이상 달성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 분배몫을 결정한다.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협동농장 총생산량} - \text{총공제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times \text{농장원 개인의 연간 노력일수}$$

만일 作業班優待制가 실시될 경우 국가계획목표를 90%이상 달성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분배 몫을 결정한다.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기본분배 몫으로 돌려진 분배 총량}}{\text{전체농장원의 노력일 총수}} + \frac{\text{작업반우대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text{해당작업반 총 노력일 수}} \times \text{개인의 연간 노력일 수}$$

分組都給制를 실시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개인 분배몫을 결정한다.

$$\text{개인분배량} = \frac{\text{기본 분배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text{재 평가된 농장원 총노력일 수}} + \frac{\text{작업반우대 몫으로 돌려진 분배총량}}{\text{재평가된 작업반 총노력일수}}$$

$$\times \text{분조원 개인노력일 수} \times \frac{\text{분조계획 노력일}}{\text{분조전체 노력일 실적}}$$

이식에서 재평가된 노력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재평가된 노력일 수} = \frac{\text{노력을 실제 투입하기로 계획된 일수}}{\text{노력을 실제로 투입한 실적일 수}} \times \text{노력일 총수}$$

이상의 개인분배몫 결정시에 만약 생산계획목표 90%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기본분배분에서 5~15%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농장 작업관리에 작업반우대제나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협동적 생산에 따른 생산의욕상실 및 이에따른 생산성저하를 탈피하기 위해 물질적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69. 穀種別 食糧作物 생산현황과 수급사정은?

1989년 현재 북한의 총 경지면적은 214만 정보에 달하며, 이 중 논 면적은 63.2만 정보, 밭은 150.8만 정보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밭 면적 중 과수원과 공예작물 경작지, 경사지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100만 정보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발표된 농업통계에서 작목별 파종면적이나 작목별 생산실적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곡종별 식량작물 생산현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이 발간한 「조선개관」이란 宣傳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재배되는 주작물은 벼와 옥수수이며, 정보당 생산량은 논벼 7.6톤, 옥수수 6.5톤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84년의 알곡(조곡) 총생산량은 1,000만톤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동 자료의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의 기본과업이 주민들의 「식·의·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986년 이후 북한은 식량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소련, 중국, 태국, 몽고 등으로 부터 쌀, 밀, 콩 등을 긴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1988년 추수기 이전의 4개월간은 전국적으로 잡곡외에 쌀배급이 전면중단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88년 10월에는 북한산 쌀 1kg에 중국산 옥수수 2.4kg을 물물교환 한다는 협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89년 현재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548만톤(정곡기준) 으로 전년도 보다는 5.2% 증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중 쌀 생산량은 215.9만톤, 옥수수 268.1만톤, 기타 감자·고구마 등이 64.2만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과

배급기준량을 중심으로 북한의 基本糧穀 소모량(정곡기준)을 계산해 보면 연간 444.8만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여기에 종자용, 사료용, 식품 및 공업원료용 곡물과 감모량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수요량보다 훨씬 부족한 실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外貨의 부족으로 매년 소량의 쌀을 기아수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식생활은 잡곡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金日成은 식량증산이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이미 한계에 달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농경지의 확장이 첩경이라는 판단하에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서는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 20만 정보의 유희지개간 등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서해안일대의 간석지개간에 주력하고 있다.

## 70. 소련과 중국의 對北韓 경제원조 실태는?

소련과 중국의 對北 經濟援助는 6·25전쟁 이후 경제복구 및 초기 건설 단계에서는 무상원조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장기저리차관등 유상원조 형태로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相互經濟協力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나 '60년대 이후에도 '50년대 후반에 도입하였던 원리금의 상환을 일부 면제해 주는 등 무상원조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소의 대북 軍事援助에 있어서는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70년 대 후반 제2차7개년계획 이후 소련의 대북경제협력 현황을 보면 소련은 북한이 6개년계획 수행과정에서 지게된 對外債務의 변제를 지원하기 위해 약5억루블의 차관을 연리 2%의 조건으로 제공한 바가 있으며, 2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도 8개의 주요공장 신설과 9개 공장의 시설확장이 소련의 지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상원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플랜트 수출과 기술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차관 및 「콤포세이션」 형태의 合作을 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콤포세이션」 형태의 合作은 소련이 플랜트, 원자재 또는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정량을 소련에 공급함으로써 북한이 도입한 시설이나 물자 및 기술의 대금을 償還하는 형태인데, 물론 과거에 소련이 지원한 대북차관의 원리금도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차7개년계획 기간중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시설이 확장된 대동강축전지공장, 평양소형전동기공장, 평양에나멜선공장, 김책제철의 냉각압연공장 등은 이러한 조건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물론 이 때 소련으로 공급하는 생산물은 수출 통계에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경제협력 이외에도 소련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는 그 가격이 일반적인 국제원유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일종의 경제원조로 볼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7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소련은 총176만 Kw의 원자력발전소(44만 Kw급 4기)를 포함한 19개 건설대상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1985년 12월 소련과 체결된 「朝·蘇간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원 협정」에 포함된 주요 건설대상 사업을 보면 상기한 원자력발전소와 동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 마그네샤크리닝공장, 두개의 종합방직공장, 두개의 방송국, 김책제철소 제강능력 확장, 안주지구 탄광의 생산능력 확장,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베어링공장의 시설 확장, 대륙붕 탐사 지원 등이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쌍방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소련이 종래와 같은 원조성 경제협력관계에서 벗어나 호혜성 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소련보다는 크게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중국자체가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북지원의 여력이 없다는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석유에 대해서는 국제가격보다 훨씬 싼 값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에 대해 대북 석유수출량을 보다 증대시켜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시계추와 같은 외교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군사 및 경제지원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반면 중국과 소련도 원유 공급 및 경제지원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정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 71. 북한의 인구정책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통해 인구정책이나 신뢰성 있는 인구통계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간헐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은 전체 주민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산모사망률 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사전에 의하더라도 북한인구는 “우월한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인구가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등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1946년 총 인구는 925만명이었고 1959년에는 1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에 발간된 「조선개관」에서는 1986년의 총인구수를 1906만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986년의 북한인구수는 국내연구기관에서 추정된 2,034만명 보다는 128만명이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역시 북한의 통계당국이 밝힌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보다 장기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구증가추세를 분석해 보면 1950년대 중반까지는 당시 사회여건상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거의 균형을 유지해 오다가 1956년부터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까지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56년에는 3.4%, 1960년에는 3.8%, 1965년에는 3.4%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65년부터 인구증가율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1972년부터는 인구 抑制政策이 실시됨에 따라 2.5%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구정책을 분석할 경우 6·25이후 1960년대까지는 엄격히 보아 인구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후의 「베이비붐」과 경제복구 및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多産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1년 「社勞靑」 6차대회에서 金日成은 여성노동력의 동원과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두가지 목적으로 결혼연령을 남자는 32세, 여자는 27세로 늦출것을 지시함에 따라 1972년 부터는 본격적인 인구제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이 인구억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0년대 1차 7개년계획의 실패와 식량증산의 한계로 인해 인구부양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80년대의 북한인구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86년의 2.2%수준에서 1989년에는 1.64%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개관」에서 발표된 1986년의 북한인구를 공식적인 통계로 가정할 경우 그간 국내 연구기관의 북한 인구추정에서 나타난 인구증가율은 실제보다 다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월남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억제정책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原因은 여성들의 노동력동원으로 인해 可姪女性들이 스스로 多産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중노동에 참여해야 하며 가사일과 육아를 동시에 맡아야 하므로 다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갈 경우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72. 최근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구조 및 불만요인은?

### 〈생활수준〉

最近 北韓주민의 생활수준은 北韓政權의 빈번한 生必需品증산 추구에 도 불구하고 향상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품생산이 부진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北韓政權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北韓은 中央放送(1989. 11. 3)을 통해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용소비품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비품 생산 증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 했는데 그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공업 공장을 현대화 하며, 공업제품을 질적, 양적으로 증대시킬것.
- ② 지방 공업 부문에서 원료기지를 건설하고 재배원료와 자연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내부자원으로 최대한 동원할 것
- ③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균중운동으로 소비품 증산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이다.

또한 1990년 2월 1일자 노동신문사설을 통해, “소비품 증산을 위해 기존경공업 시설의 최대한 가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강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존 경공업공장을 최대한으로 가동시킬것.
- ② 경공업 부문 일꾼들은 비상한 혁명적 각오를 가지고 견결히 투쟁할 것.
- ③ 경공업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철도, 운수부문에서도 물동량을 제때에 실어 나를것.
- ④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공업에 큰힘을 넣을것 등이다.

北韓政權이 강조하고 있는 이같은 소비품 증산 촉구 내용을 보면 현재 北韓의 住民生活은 소비품 생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을 알수 있다.

최근 北韓住民의 소비 생활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생활면에서 볼때,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비해 좋아졌다는 징후나 당국의 조치는 전혀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식량 배급이 1970년대에는 일반 노동자의 1일분이 700g이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600g으로 줄어 들었고, 쌀과 잡곡의 비율도 종전의 4(쌀):6(잡곡)에서 3(쌀):7(잡곡)으로 바뀌었다 한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부터는 월2회 배급때마다 일일분씩(월 2일분) 절약미 또는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고, 타지역으로 출타시에는 종전의 양권대신 식량을 휴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한다.

피복이나 일상용품은 연초에 배부되는 가족별 일용품구매카드에 따라 지정된 국영상점에서 정해진 수량 만큼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 물품의 절대 부족으로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양을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부터는 피복류에 한해 외화별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 할당되는 할당료에 의해 구매할 수 있고, 4~5년마다 김일성의 선물명으로 지급되는 피복류가 있다.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먹는문제와 입는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등이 절대 부족한 형편인데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北韓은 만성적인 生必需品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에 들어 경공업혁명을 통한 生必需品증산 운동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했으며, 1989년 부터 1991년까지 경공업 발전 3년계획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생활이 향상되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生必需品 부족에서 오는 불

평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주민의 일상소비 생활은 北韓政權의 식량배급제, 피복및 생활 일용품에 대한 할당제, 카드제, 주택배정등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는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 〈의식구조〉

北韓은 독재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 성격 때문에 人間존엄성의 말살과 정서감의 결핍, 그리고 組織生活에서 오는 경제적 속박과 한정된 人間관계로 인한 자아에 대한 가치관의 상실등이 주민들로 하여금 人間다운 정상적 의식 형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구조는 획일화하고, 단순화되는 경향이다. 北韓 주민들은 생활자체가 자기의지의 지배와 스스로의 가치관에 놓여있지 않고, 타율적인 지배복종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은 개인주의가 발달된 비공산사회 주민들과는 판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韓社會에서는 富가 가치의 기준이 될수 없고, 학식이나 수입 또는 개인적 능력도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전체에의 헌신 이른바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가장 큰 가치로 설정하는 한편 많은 훈장과 칭호가 이러한 성향을 더욱 자극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北韓住民들의 의식구조는 그사회에서 정립된 가치 기준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체념적인 생활관에 사로잡혀 오로지 주어지는 외적 요구에 소극적 반응을 보일 뿐이다.

북한 주민이 이처럼 왜곡된 의식구조를 형성하게된 중요한 사회적 장치는 요컨대 철저한 집단화가 생활을 지배하고, 강제적조직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에서 이탈된 경우에 가해지는 체제의 가혹성을 인식케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다른 방향의 사고 방식과 진출을 금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무기력한 성격을 형성케 하는 무비판적인 체제 공감의식을 갖게 해주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北韓주민들의 이와같은 일련의 특이한 의식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北韓에 있어서 유년기의 의식 형성은 가정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을 억제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가정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할 자율적이고, 개성에 바탕을 둔 의식형성이 억제되고, 黨을 中心으로한 체제에의 귀속과 개인우상화를 상징한 유일사상으로 모든 의식적 귀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탁아소에서부터 세뇌 교육이 철저하게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北韓社會에서는 모든 직장이 의식주입의 교실로 변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각직장에서 전개되는 소위 학습운동이란 바로 의식조작을 위한 재료와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北韓政權이 주민들의 의식구조 조작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것은 위기의식의 조성이다. 그들은 주민들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침체된 의식구조속에 새로운 무엇인가의 자극을 주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이 바로 위기의식의 조성인 메커니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위기의식의 조성은 일정한 가상 목표의 설정과 그 설정된 目標에 대하여 의미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인데, 적개심의 대상은 미제와 남한의 반동추종세력이라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구조는 그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인간행동을 규제하며, 이것은 또한 제반욕구 충족을 위한 제행동의 절차를 제공하게 된다.

北韓의 社會구조는 개인의 행동을 類型化하고 나아가 개인의 기대까지도 결정하며, 개인의 행동을 강제, 결속, 통제 하고 있다.

### 〈불만요인〉

北韓住民들이 현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폭발에 까지 이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의 불만이 외적작용에 의하여 억제되거나 가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住民의 社會的 불만과 관계되는 요인은 個人의 요구 구조와 그들의 社會的 환경이 지닌 특유한 集團主義的인 통제 체제와 상관관계에서 부터 찾아 볼 수 있다.

北韓社會구조에서 제일큰 문제점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인데 국가 권력이 個人의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침투가 그것이다.

北韓에서의 가정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라고 규정지으면서 전통적 가족제도는 비공산주의적 체제의 유물로 단정하고 그 파괴를 위한 제반 정책 수행을 해왔다.

이와같은 전통적인 가족개념이나 가족구조의 붕괴는 아직까지도北韓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족적 가치지향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강조되는 가치지향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인한 불만 의식이 잠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北韓주민들의 상승욕구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회진출 및 기회제공간의 차질에서 오는 좌절감이 그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北韓과 같은 共產社會에서 지배적 엘리트로 진출 할수 있는 계층은 극소수의 核心 계층에 국한되고 있다.

이들은 社會生活의 모든면에서 특권적 권리와 사회적 상승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소외집단 주민들은 출신성분 등으로 말미암아 상층부로의 상향적 사회이동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가장 큰 사회적 불만이 胚胎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구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北韓은 주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北韓자체의 산업구조상의 모순과 생산역량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현상태로는 성취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용품구입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여가선용등이다.

그러나 이는 北韓體制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따라 불평, 불만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

北韓 住民들의 社會的 불만요인은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이탈적 행동으로 나오게 하여 각종사회문제를 야기케 하기도 한다.

물론 北韓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비행과 성인의 범죄행위, 사보타지, 탈출등 각종사건이 공개적으로 발표된적은 거의 없고, 모든 주민이 한결같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된 선전만 하고 있지만, 고위간부층에서부터 일반주민에 이르기 까지 社會 각분야에서 일고 있는 反金日成父子운동을 포함한 반체제, 반항 운동같은 反社會的 양태는 큰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의 급진적인 變化와 관련, 외부사조의 流入을 막기 위한 思想的 統制는 그어느 때 보다도 더 強化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불만이 대단히 큰 것 같다. 다만 이러한 社會問題가 完全히 통제된 조직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自由社會와는 달리 장막속에 가리워져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 73. 이른바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란 무엇인가?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란 金日成이 北韓勞動黨 第5期 14次 全員會議(1977. 9. 5)에서 종래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분야에서의 관리 및 운영지침을 발표한 교육 강령이다.

그런데 北韓은 이것을 사회주의 교육학원리, 교육기관에 대한 黨의 지도등 전교육부문에 있어서의 향후 政策的 方向을 제시하는 教育思想, 理論, 方法 등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교육총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과거 教育問題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 명령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5個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第1章, 社會主義教育의 原理, 第2章, 社會主義 教育의 內容, 第3章, 社會主義 教育의 方法, 第4章, 社會主義教育의 制度, 第5章, 社會主義教育機關의 임무와 役割, 教育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로 되어있다.

이 社會主義教育테제에 나타나 있는 教育政策上的 基本方向을 간추려 보면 教育理念과 目標은 북한 주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養成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서 ① 黨性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주체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④ 社會主義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 진행,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北韓은 解放 직후 여타의 모든 分野에서 소련식을 모방하였듯이 교육분야에서도 소비에트교육학을 직도입하여 교육에 적용해 왔는데 1960년대에 와서 소비에트 교육학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復古的인 마르크스·레닌의 교육이념으로 되돌아 간바있으며, 1970년대 初 부터는 소위 北韓版 社會主義教育學이라는 것을 만들어 써 오다가 이를 이론적 기초로 하여 마침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제정공포하여 北



韓教育의 劃一化를 이룩, 同 테제 공포일을 교육절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들은 기념식에서 “은 社會의 主體思想化가 전면에 나선 새로운 現實은 人間改造 사업을 다그쳐 社會主義, 共產主義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체교육부문 종사자들에게 金日成 父子에게 절대 충성하는 後備교육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수령과 黨에 끊임없이 충실하고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선 主體型的 共產主義的 革命家로 양성하기 위하여 혁명전통교양, 黨政策教養,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 등 政治思想教育을 더욱 強化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란 한마디로 말해서 金日成 父子 세습체제에 맹종하는 人間型和 共產主義體制의 우월성만을 맹신하고, 好戰的이고 기계적인 人間型을 만드는데 그 主眼을 두고 있는 人間鑄造指針書에 지나지 않는다.

74. 北韓의 大學生選拔 方法과 教員養成體制 및 高等教育現況과 金日成綜合大學의 實態는?

〈大學生 選拔方法〉

北韓에서 大學生 選拔을 위한 推薦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高等中學校卒業時 學校長의 推薦이고, 다른 하나는 軍 또는 직장에서 推薦하는 方法이다.

대개의 경우 大學生 選拔 2個月前에 各級高等中學校, 職場등에 大學別 推薦 人員數를 할당해주고 推薦받은 대상자중에서 自由경쟁 시험으로 選拔토록되어 있다.

대학진학 推薦시 통상 學力보다 출신성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人力管理上의 모순이 많다는 비난이 일자 1980년도 부터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大學入學資格考査制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매년 3월(入學5個月前)에 當該年度 卒業豫定者 全員을 대상으로 하여 大學入學資格考査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입학 자격고사에 합격하고도 軍 또는 공장, 기업소 의무복무기간중에 軍 또는 직장의 대학진학추천위원회가 출신 성분, 黨性, 政治組織 生活의 성적등을 종합 평가 한후, 다시 市·郡과 道·직할시 大學추천 위원회를 거쳐야 해당大學의 入學試驗資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大學에서의 選拔기준은 ① 黨性を 고려한 출신성분 1/2, ② 정치조직 생활평점 1/2, ③ 시험성적 1/2의 비율로 평가되는데, 실질적으로는 黨의 추천이 결정적이며, 學科의 임의 선택은 불가능하고, 오직 黨의 人力養成計劃에 의하여 學科가 배정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選拔 기준은 어디까지나 北韓에서 말하는 核心 계층이나 基本계층에 해당되는 것이며, 複雜(敵對) 계층에는 大學入學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 〈教員養成 制度〉

北韓에서는 人民學校에서 大學까지의 모든 교육자를 教員이라고 부르는데 소위 11年制 義務教育 실시에 따라 이에 요구되는 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도마다 2個의 사범대학과 2個의 교원대학이 設置되어 있으며, 사범대학중 제1사범대학에서는 高等중학교 高等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中等반 교원을 양성하며, 第1, 2 教員大學에서는 人民學校教員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범계 대학을 교육위원회의 보통교육부에서 장악하고 있다.

한편 大學教員은 교수, 부교수, 上級教員, 교원및 助教員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우리의 碩士과정에 해당하는 3년제 과정의 연구원,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2년제 박사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연구원과 박사원을 다마쳤다고 해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論文이 정무원 직속의 學位 學職授與委員會의 심사에 통과해야만 한다.

그리고 상급교원까지는 대학평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위원회고등교육부장의 내신 인준을 받으면 승진되나, 부교수와 교수는 각각 학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전공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政務院 직속의 學位 學職授與委員會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기준은 출신및 정치적 성분이 가장 중요시된다.

北韓에서 教員의 役割은 후대들을 革命의 계승자, 共產主義者로 키우는 職業的 革命家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선발과정이나 승급에 출신성분과 黨性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다.

### 〈高等教育現況과 金日成綜合大學〉

北韓의 高等教育制度에서 특이한것은 金日成綜合大學을 제외한 모든 大學이 單科大學으로서 일종의 전문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側 주장에 의하면 현재 北韓에는 235個의 大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金日成大學을 제외한 이들 단과대학은 우리 종합대학의 한 전공학과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北韓의 고등교육의 目的이 全人的 人間養成을 지향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金日成父子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人間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현장기술자, 또는 직능인의 양성에만 大學教育의 目標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이한것은 金日成 綜合大學은 정규의 교육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政務院의 직속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이 北韓의 대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同大學의 관리운영, 교수내용과 方法, 學生活動등은 다른 대학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정무원내 副部長級 이상 간부의 약 1/3이 金日成綜合大學 출신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金日成綜合大學에는 12個學部, 50여개 학과에 10여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으로는 조선노동당 투쟁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역사, 김일성의 勞作과 黨政策, 마르크스, 레닌主義 哲學, 政治經濟學등의 政治思想教育 위주의 과목과 外國語등 一般科目 및 전공과목, 군사학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수와 學生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여러 類型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연구, 지도의 상황에서는 師弟관계이지만 政治社會活動에 있어서는 同格 내지는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75. 북한의 문화정책 방향은 어떠하며, 소위 ‘사상혁명’, ‘문화혁명’이란 무엇인가?

공산주의 사회에 확립된 文化는 그들 스스로 사회주의 문화, 또는 계급문화라 한다. 이러한 문화는 共產主義的 世界觀, 계급적이며 집단적인 혁명사상과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을 총칭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 혹은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더욱 심화 발전시킨 것이 주체사상이라 선전한다. 이 사상이 바로 문화정책과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극히 교조적, 편향적이며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독단적이며 비과학적이다.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진 북한의 문화체계도 당연히 현실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어 교조주의 독단론에 바탕을 둔 획일문화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는 金日成 교시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사람 생각의 문화」, 「우상숭배 문화」, 「피바다 문화」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김일성 교시의 계급문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 전통성에서 크게 이탈해 있다. 이를 그들은 「혁명전통문화」 또는 「항일유격대식 문화」라고 선전한다.

文化의 革命性을 강조하다 보니 文化가 政治와 분리되지 못하고 문화정책이나 문화활동이 곧 정치생활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화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치 못하고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金日成은 文化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면서 이를 사회주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명이란 낡은 제도를 뒤집어 엎고 새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문화혁명을 하는 데는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문화혁명을 한다고 하여 그 형식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형식을 다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사회주의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 같이 전통문화의 정신, 그 핵심 내용은 모두 빼버리고 그 껍데기에 사회주의적인 문화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북한 문화정책의 기조이다.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군중문화사업」의 전개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시키는 사업과 연관된 것이다. 金日成은 「조선로동당 5차 대회」 보고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예술과 모든 문화사업은 인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 복무해야 한다.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데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되며 선전·선동만으로도 안 된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해야만 군중을 교양하는 사업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 예시한 김일성의 말을 종합해 보면 문화정책, 혹은 문화혁명과 사상 혁명의 목표는 집단적인 새로운 형의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1972년에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에 14개 조항(제35~48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 골자는 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제35조),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제36조), “혁명적 문화를 건설”(제37조)

② “제국주의의 문화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제37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문화예술을 발전”(제45조)

③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의 사회주의 교육원리”(제39조), 과학, 기술, 문학, 언어, 체육, 보건, 위생, 생활양식등의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金正日이 북한의 文藝事業을 주도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金正日은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文藝政策을 주체확립, 유일사상체계 확립, 혁명전통확립의 방향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사고방식, 감정, 언어, 행동양식은 곧 반동문화로 배척한다.

북한의 文藝政策에 그들의 文化的 性格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문예 정책은 통합적, 조직적,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변함없이 「金日成 부자체제의 공고화와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로 집약할 수 있다.

北韓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사회혁명을 시작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1960년을 전후해서 들고 나온 혁명과제는 文化革命과 기술혁명이었다. 그러나 1964년 2월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문화, 기술혁명 이외에 思想革命이라는 제3의 혁명을 추가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상혁명이란 사람들의 인식을 공산주의적 가치관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도 사상혁명을 통해 과거 사회제도의 사상잔재와 생활습성등을 청산케하고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 가치의식, 품모등을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북한은 이러한 사상혁명을 1970년 노동당 5차대회 부터는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3大革命」이라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므로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이 가장 우선해야 하며, 사회주의제도가 성취된 후에도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3대혁명」 중에서도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시 하며, 계속혁명을 촉구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해왔다.

金日成은 1970년 黨 5次大會에서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영역에

서 자본주의를 중국적으로론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정"이라고 하여 사상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들은 사상혁명을 내세워 주민의 가치관을 뜯어고치기 위해 끊임 없는 사상 학습사업(정치교육)을 반복하고 있다. 사상혁명은 사람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것이라며 오랜 역사적 전통과 고유의 생활 방식에 의해 형성된 한민족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주입식 방법으로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부식시켜 청소년들의 思考를 획일화하여 집단주의적 조직생활에 적응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文化革命이란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생활 영역의 변혁이라 규정하고 사회주의적 도덕 기틀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文化革命에서는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 즉 사회주의적인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북한에서는 文化革命을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정의 하나로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며, 生産文化와 生活文化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건설을 위해 文化革命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민의 사고, 감정, 행동양태, 생활양식까지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사상혁명과 같이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고 그 사회에 상응한 인간의 품성이 형성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 혁명과정”이라 주장한다.

북한은 文化革命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문학·예술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文學·藝術人 등에 대한 사상검토와 숙청을 한바 있는데, 이 검토 사업등을 문화혁명이라고 지칭한 일도 있다. 이는 북한의 文化가 어디까지나 政治의 도구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文化革命이든 技術革命이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결론을 思想革命으로 귀착시켜, 혁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자연이나 사회의 개조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어려운 과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 76. 북한주민의 신앙·종교생활 실태와 종교단체 활동 현황은 어떠한가?

북한은 헌법 제54조에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反宗教宣傳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주민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고 반문하게 된다. 본래 信仰은 인간정신생활의 내면세계의 문제이므로 개개인의 마음속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권력이나 폭력으로 이를 억제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헌법상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규정한 것은 분명히 宗教壓政策을 명문화 한것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생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985년 9월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우리 기자들이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종교·교회·절” 등에 대해 질문할때 그들은 “종교”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종교말살의 현실을 재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된다.

그런데,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면 대체로 북한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다고 증언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북한주민들이 8·15 이후부터 오늘까지 믿고 있는 것은 “金日成 崇拜教”라는 것이며 이같은 비유는 “金日成 神格化” 운동이 종교적 양상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970년대초부터 종교단체들의 명칭을 제거론, 마치 북한에 종교가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들 종교단체의 명의를 빌어서 대남 위장평화공세와 반정부, 반미 소요선동선전을 적극전개 해왔었고 각종 국제적인 종교행사에 종교단체의 대표를 참가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거명된 종교단체로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이며 최근 결성된 조선천주교인협

회('88. 6. 30결성)를 추가하여 적어도 名目上 4개가 있는듯 하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상층부에 중앙기구가 있을뿐, 하부조직이 없다.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는 약 5천 명 또는 1만여명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敎役者나 信徒數,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바 없다.

북한이 1970년대 초부터 이러한 명목상의 종교단체들을 재등장 시킨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72년 8월 30일, 남북적십자회담(평양본회담)에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김성률(조선민주당부위원장)과 강장수(조선천도교 청우당부위원장)가 동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의 종교단체가 국제적 공인을 얻기위해 國際宗教團體에 가입을 시도했고, 각종 국제 행사에 참가하여 정치 선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양상을 보여왔다.

1974년 8월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加入을 시도하였으나 교회와 신자수, 성직자의 현황 등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1976년 7월 일본 東京에서 개최된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 제4차회의에서 북한은 회원국이 되었고, 1982년 6월에는 몽고에서 개최된 아시아 불교도평화회의 제6차회의에 정식회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WCC가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해외동포 종교인들을 적극 招請함과 동시에 1985년 11월에는 WCC국제부장 다이난·코시 목사(인도인) 일행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등 종교선전에 주력하였다. 1986년 4월에는 미국 NCC 소속 김인식, 이승만, 손명걸 등 3명의 교포 목사와 로버트·스마일리 등 외국인목사 7명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1986년 9월에는 북한 기독교도연맹 대표단(고기준목사 등 4명)이 WCC 국제위원회 주관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WCC주선으로 한국측 대표단(5명)과 스위스 글리온에서

최초로 南北 기독교인이 대화를 가졌고 1988년 11월에는 제2차회담을 실현, '공동성명' 등을 채택하였다.

1987년 6월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특별자료 회의」에 로마교황청 대표(베르텔로 대주교와 한국인 장익신부)를 업저버 자격으로 초청한 바 있으며, 1988년 4월에는 로마교황청 부활절 미사에 북한대표 7명이 초청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성경과 찬송가집을 발간하여 선전용으로 도서관이나 서점에 비치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모임에 이를 배포하기도 했다.

북한은 1988년 5월 23일(佛紀2532年) 석가탄신일을 맞아 묘향산 普賢寺등 각지 사찰에서 紀念法會를 정권 수립이후 최초로 진행한 것으로 선전하였다.

한편, 1984년 3월 美國에 거주하는 高鍾玉(마태오) 신부의 가족방문을 허락한 것을 계기로 바티칸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왔으며 1988년 6월 30일 평양에서 「天主教人協會」를 결성했다고 선전했다. 평양방송은 “지난시기 공화국 북반부에 천주교인들의 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데서나 교회의 발전을 이룩하며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는 등 협회결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또 이협회 결성을 계기로 “향후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교인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世界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종교선전은 일반 신앙인들의 자율적인 것이거나 지하에 잠복했던 종교의 부흥 재건운동이 아니란 점에서, 韓國의 종교계를 의식하고 국제적 개방과 화해의 추세에 대응하여 외부 세계의 변화의 여파가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측면으로는 변화의 새로운 조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1988년 11월 평양에 改新教의 교회와 天主教의 聖堂이 최초로 건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바, 실질적인 對北宣敎 그리고 북한의 종교 부활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북한이 통일전략의 기본문서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 리론과 남조선혁명”에는 종교를 통한 대남선동선전을 추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즉, “현시기 남조선 종교인들과의 統一戰線은 반파쇼민주화의 정치적 목표를 그 기초로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 정치적 목표 밑에 광범한 하층신도들을 통일전선으로 묶어세우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들을 각성시켜야하며 적아를 가려낼 줄 알고 상층종교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종교를 이용하려는 내외 원수들의 간계를 짓부수면서 다른 근로인민과 함께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도록 하여야 한다.”(p.114)

그리고 1989년 천주교 세계성체 대회나 불교의 한강연등제, 기독교의 평양복음화 대회를 계기로 보여준 북한측의 태도 즉, 북측종교인들이 남한의 종교행사를 외면한 일은 석연치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인들은 통일논의, 대북교류, 대북선교 등의 論議나 활동에서는 북한의 宗教선동이 의도하는 것을 바로 아는데 노력하여야 되겠다.

## 77. 북한의 보건 의료정책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은 헌법(1972. 12.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48조에 규정된 것처럼 무상치료제, 의사담당 구역제등 진료, 치료, 의료시설, 의사 배치를 국가의 사업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개인이 의료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의료제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은 국가주도하의 의료제도는 어찌면, 북한이 모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치료해 준다는 “혜택” 차원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의료발전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료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국가가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관제의료제도라고도 평가 되기도 한다.

북한은 1952년 1월 20일 이른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준비한다고 선언한 후 1960년 2월 제2기 최고 인민회의 제7차회의에서 “보건사업 강화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정책은 김일성의 업적으로 선전 치부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료 제도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시혜과정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은 매달 받는 임금(생계비)에서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1%, 복지·후생비등 여러가지 후생비 명목으로 10%를 공제당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가운데서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부양가족의 약값도 함께 공제된다. 그리고 농민들이 도시의 병원으로 移送되었을 때는 별도로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간이진료소 또는 일반진료소에서도 담당구역이외의 주민들을 치료했을 때에는 치료비를 받고 있다.

더구나 黨·政·軍등의 간부와 그 가족들은 치료창구가 달라서 양

질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월남자가족 등 이른바 敵對階層은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고가의 약품을 쓸 수 없고 市·區域·郡 병원 이상의 큰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그 실태는 다음과 같다.

1964년부터 각 도시에서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의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는데, 이 제도는 豫防醫學的 方針과 관련된 것으로서 각 의사는 자기의 책임구역에 나가서 위생, 보건, 접종, 건강진단 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본래 이 제도는 노동당 제4차 대회(1961년) 이후 실시하여 왔는바 대개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규모(200~300명)로 구역을 맡아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순환 진료 제도였다. 담당의사가 금요일까지 소속병원에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에 담당구역에 나가 진료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1명의의사가 200~300명의 주민을 한나절에 진료하는 관계로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질병의 예방적인 면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의사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虛僞報告를 한다든가 하여 질병 발생을 은폐하려 하기 일쑤이며 주민들은 각자의 병명에 적합한 진료(의료기관·의사·약품 등)를 선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병원체제는 다음과 같다.

도·직할시에는 종합병원인 동의병원 1개와 그외에 결핵 병원 등 전문병원이 있다.

평양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과대학병원, 평양시 제1, 제2병원, 구강병예방원 동의중앙병원 등은 비교적 현대적인 시설로 갖추어져 있다. 특히 최근에 재일교포의 현금으로 건립했다는 “김만유병원”과 외국의 의료기계를 도입하여 시설한 “평양산원”등은 북한이 對外的으로 선전하는 대표적인 병원으로 꾸며져 있다.

3급 공장 기업소에는 “산업병원”(4급이하에는 “산업진료소”) 1개씩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 시·구역·군단위에는 “시립병원”·“구역병원”·“군인민병원” 등이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리·동에는 2~3개 “동”마다 종합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74년 11월, 里單位의 “진료소”를 里 “인민병원”으로 개편하였다고 선전하지만 동 인민병원은 실제로 1~2개의 리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의사 1~2명이 배치된 관계로 외상치료 등 초보적인 치료만 가능하다.



### 78. 북한의 영화나 가극인 「소금」, 「꽃파는 처녀」, 「피바다」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1990년 가을 우리 대학가에서 북한 영화의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당 국과의 대립, 마찰이 있었다.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각종 이념 공연물을 통한 사상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선전·선동을 강화한 바 있다.

북한은 「꽃 파는 처녀」의 공연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구실로 이산가족문제의 토의를 위한 적십자 본회담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1990년 11월 8일에는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판문점에서 있었으나, 「꽃파는 처녀」의 공연문제로 성과없이 끝났다. 아직까지 북한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남쪽에 공산혁명의 씨앗을 뿌리는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남북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 민족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현실적 조치들을 연달아 취했다.

1988년 6월에는 북한 자료의 개방에 대한 발표를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민족의 화해를 도모할 목적을 갖고 북한의 원전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해 7월에는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남북당국이 상호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 개인이나 민간 단체간의 접촉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누구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북한과 정당한 접촉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정당한 목적으로 북한의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관한 영상 자료도 KBS나 MBC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통일원은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영화를 상영하여 국민들이 북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거나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 주기도 하였다.

1990년 10월 중순에는 북한이 비록 「조선로동당」 창당 기념 축제로 간주한 「남북영화제」도 뉴욕에서 개최하여 남북 영화인이 접촉하고 남북의 예술 영화도 상영하는 행사도 가졌다.

지금은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 실상에 관한 자료는 거의 모두가 공개된 상태며, 많은 언론인들도 독자적으로 북한을 취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은 북한의 특정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한 것, 혹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북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의 북한 자료는 상당한 정도로 개방되어 있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북한은 우리의 「7·7 특별선언」등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새로운 것이 없다느니 분단 고착화의 방안 이라느니 하여 모두 거부하고 이에 대한 비방 선전만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야 세력이나 운동권 학생들도 북한의 대남 비방 논지를 그대로 수용,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며, 이것을 마치 “민주화를 막으려는 획책”처럼 매도하고 있다.

지난번 북한 영화 상영을 주도한 세력들은 북한의 대남 비방선전, 대남 통일선전 차원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며, 반대로 우리 정부의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대하며 비난해온 장본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통일 논의의 활성화에 편승, 통일을 명분으로 학원을 정치 투쟁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 운동권 핵심들은 현 우리의 체제를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쇼체제」로 규정, 이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한간에 가장 첨예화한 문제인 군사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학생들이다.

이들 운동권 학생들이 그 출처가 극히 의심스러운 영화 필름을 다중의 군중에게 상영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호기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호응하여 전개하는 체제 전복의 정치투쟁의 일환인 것이다. 이들은 「대학문화선전 특별위원회」(위원장 崔亨羽, 서울대 국문과 4년)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는 등,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해 왔다.

운동권의 북한영화 상영저지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청년학생들이 우리 영화를 감상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것은 초보적 권리”(1990. 11. 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라며 일부 학생들의 반정부·반체제 활동을 고무 선동하였다.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강력한 무기」, 「인민을 교양·개조하는 수단」, 「조선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반영하는 유력한 도구」로 보는 등 정치 투쟁의 도구로 간주한다. 그들의 문예 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와 「종자론」(種子論 : 작품의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는 요소, 즉 중심사상으로서, 이는 주체사상에 대한 충실성이라 주장)에 의거 혁명사상의 핵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씨앗을 생산한다는 생각에서 북한은 그들의 이념 공연물을 우리사회에 확산시키려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영화를 「직관예술」이라 하여 다른 어떤 예술분야보다도 중요시 하여 金正日이 직접 영화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는데 김정일이 직접 지도하였다고 선전한다. 이들 작품은 젊은이가 혁명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과 그들의 혁명투쟁을 그린 이념적인 작품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영화가 상영되었다하여 우리의 청소년이나 국민들이 모두 곧바로 사상적으로 오염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함에도 당국에서 대학가의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이러한 공연물의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만 고무시키지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적십자 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은 거부하면서 굳이 「꽃피는 처녀」의 공연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분명한데, 이들 대신 상영하여 북한의 대역을 하겠다는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행동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기타 통일문제에 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동반자로 하여 그들과 함께 통일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지,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거나,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해 주자는 뜻은 아니다.

민간의 통일운동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법체계의 테두리 안에서 권장되고 보장되는 것이지, 초법적인 반체제 행위나 반국가적 행위는 국법질서하에서는 용인 될 수 없다.

일부 학생들이 우리 정부와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고무시키기 위해 통일문제나 문화·예술을 그 도구로 삼는 행위는 마땅히 차단되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거나 허용한다면 북한은 남북한간의 상호개방과 교류협력을 계속 외면하고 오직 대남통일전선 전술 차원의 공작에만 치중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평화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기에 북한영화 상영등 통일운동은 어디까지나 국법 질서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야 통일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남북당국간에 교류협력의 기틀이 잡히면 누구라도 북한 영화를 아무런 제한없이 상영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영화도 북한에서 상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에 교류 협력의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하면 우리 스스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이념 공연물도 먼

저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 79. 평양의 시가지 건설 양상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1972년도에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규정했다. 그후 평양건설을 대규모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은 비교적 현대화 된 외모를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평양시가지의 현대화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평양의 총면적은 약2천8백km<sup>2</sup>로서 서울(6백5km<sup>2</sup>)의 약 4배에 버금가는 넓이로 보여지나,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5%내외인 불과 140km<sup>2</sup> 정도로서 서울의 약 4분의 1정도이다. 평양 인구는 해방직후의 약5배인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북한은 평양시를 ‘사회주의 모범도시’로 꾸미는 전제하에서 김일성 부자 세습 독재를 위한 우상화 시설물 건설과 외형상 전원도시로 건설한 ‘특별대우 거주구역’으로서 타지역에 비해 현대화되어 있다.

북한은 관광사업을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했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평양에 각종 대중시설물들과 상징조작물을 대량건설하고 관광 및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평양의 시가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것은 '89년 7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이 계기로 되며 이시기 북한은 '축전도시 평양'의 '대건설'에 총력을 경주했다.

여기서 '특색있는' 일로 지적되는 것은 평양건설이 권력의 세습체제 구축과 밀접 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인바, 김정일이 직접 평양건설을 기획 및 지도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로동당」 제6차대회(1980년)의 선물로 지었다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평양산원”과 “창광원”이다. 평양산원은 당초 산업재해병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산업재해병원으로는 외국인에게 보여줄 것이 못되니 좋은 인상을 주는 산원으로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그 용도

가 변경됐다는 것이다.

(2) 김일성 70회 생일을 기념하는 김정일의 ‘충성의 선물’이다.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제2인자의 지위를 확보한 김정일이 김일성 70회 생일을 기념하여 각종 건물을 지었다. 그는 이른바 ‘충성의 선물운동’이라는 구호아래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병상관(보통강변의 스케이트장), 청류관, 평양제1백화점, 문수거리, 모란봉경기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3) ‘소위“평양의 낙원화”를 위한 건조물이 있다. ‘해방40주년’, ‘당 창건40주년’을 기념하여 충성의 다리와 만경대 유원지, 낙원거리, 만경대의사당, 해방탑, 대성산혁명열사능화장, 평양구강예방병원, 우의탑, 고려호텔, 낙원백화점, 양각도 국제호텔을 건설한 것이다.

(4) ‘축전도시화’를 위한 건조물이 있다. 양각교를 비롯한 많은 교량과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건설(입체교차로와 지하도 포함), 안골체육촌, 실내경기장, 양각도축구장, 능라도 5·1경기장, 중앙동물원 대확장, 중앙식물원 확장, 청년호텔, 류경호텔, 동평양대극장, 국제영화관, 평양국제공항, 위성통신기지, 국제기자회관 등 260개소이다. 북한은 그중에서 소위 ‘기념비적 대건조물’이 약100여 개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건조물들은 당초에 이른바 ‘공화국 창건 40주년’ 행사(’88. 9. 9)까지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돌격전”으로 공사가 진행됐으나 상당부분이 아직까지도 미완성 상태이다. 그것도 외관은 완성된 듯하나 내장까지는 손도 대지 못한 것이 많다.

이같은 과중한 건설 목표 때문에 경제전체가 희생되고, 물자의 결핍과 재정의 非生産의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함으로써 “류경호텔(105층)” 등 일부 건축물들은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 80. 북한의 軍事組織體系와 군사전략은 어떠한가?

북한의 군사체계는 「로동당」 조직을 통한 政治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軍事지휘체계로 二元化되어 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총사령관」,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동시에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게 되어 있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 首位로서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사업을 지도”하며,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석인 김일성은 북한무력의 명실상부한 최고 통수권자이다.

북한의 「로동당」내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단위의 당위원회에 「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내에는 「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사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인민무력부」이며 부장1명, 부부장5명을 두고 있다.

「인민무력부」의 소속하에 조직되는 「인민군총정치국」은 군대내 각 단위의 「정치부」등 정치기관을 통하여 군대내 당정치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산하에 실질적인 군령권을 행사하는 「총참모부」가 있고, 총참모장 1인, 부참모장 6인을 두고 있다. 북한의 인민군은 지상군, 해군, 공군을 「총참모장」이 총괄지휘하는 단일통합군 체제이다. 인민군의 편제는 예하에 전후방의 15개 군단과 해군사, 공군사, 포병사, 기계화사, 평양방위사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비병력은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등이 있다. 교도대는 3급이상의 공장 및 기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중 군제대자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규군 편제에 준하여 조직하였으며(17세~40세) 노농적위대는 41세~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 붉은 청년근대위는 고등중학 고등반 5~6학년 남



너 학생들(14~15세)로 조직되며 학교단위별로 중대~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다음, 북한의 軍事戰略은 통상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총력전전략」 그리고 「배합전략」의 네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략적 기습선제공격으로부터 비정규적인 武裝特攻部隊에 의한 전술적 기습선제공격 등 다양한 개념이다.

「속전속결전략」의 핵심은 機動力인데, 북한은 군의 현대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항공기, 미사일, 전차 등 정규군의 기동능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한때 김일성은 “100일전쟁 10일전투 및 3일점령”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기도 했다. 한국의 심장지대인 京仁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리적 근접성은 이 전략을 채용하도록 하는 변함없는 요인이 될것이다.

북한의 총력전략은 군사와 정치전의 결합, 군사와 경제의 결합, 군사와 외교전의 결합, 군사와 심리전의 결합 등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위 현대전+유격전, 정규전+비정규전 개념의 배합전략을 정립하여 이를 한반도실정에 맞는 이른바 “주체적 전략”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集中과 分散의 배합, 正規戰과 비정규전의 배합, 소부대 활동과 대부대활동의 배합, 즉시적 반격전과 연속타격전의 배합 등 다양한 우발사태에 신속성있게 전술, 기동, 전력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북한이 그들의 군사전략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중점과업은 첫째, 주력부대의 전진배치 즉, 종전에 주로 平·元線 북방지역에 배치된 공격주공부대를 그선 이남지역으로 전진배치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둘째, 북한 지상군의 기계화·기동화를 달성함으로써 전선돌파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속도전」과 「선전기습」의 능력을 제고시켰다. 셋째, 세계에서 유례없는 10만여명의 훈련된 특

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레이더에도 쉽게 탐지되지 않는 280대의 AN-2 경수송기 확보와 美휴즈사제작 500MD형 헬기 87대의 밀도입 및 그간 다량건조한 소형 잠수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 특수부대 요원들의 침투수단 및 방법을 다양화 시켰다. 따라서 이는 유사시 배합전으로 남한의 前·後方地域을 同時戰場化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부대구조면에서 여단급 부대를 기본전술단위로 하여 고속침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는가 하면, 전투장비면에서 유도무기부문과 T-62와 같은 경전차 및 수륙양용 경전차를 다량 확보하는 등 공격형 전력구조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그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입체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이른바 「5~7일 작전」을 목표로 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81. 북한의 최근 對中·蘇 군사협력동향은 어떠한가?

북한과 소련간에는 최근 東·西간의 이념적 대립의 쇠퇴등 신데탕트로 요약되는 세계질서의 재편기류속에 韓·蘇 關係의 正常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政治·外交적으로 갈등국면을 노정하면서도 군사적면에서는 기존의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북한과 소련간에는 '84년 5월 김일성이 23년만에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 군사협력강화의 轉機가 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소련 외무차관 카피차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과 군사협상을 진행하여 ① 청진, 나진 등 해군기지의 사용권 ② 긴급착륙권(Emergency Landing)이라는 북한내륙의 공군기지 사용권 ③ 북한영공에 대한 통과권 등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이후 북한의 해공군과 소련極東戰域軍 및 태평양함대간의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 주요활동은 ① 소련의 중거리 정찰기 Tu-16 Badger의 북한 공군기지 이착륙권 부여와 휴전선 일대의 정찰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 ② Tu-95 Bear 장거리 폭격기의 印支半島에 이르는 새로운 항로가 북한상공을 횡단하여 황해노선으로 개설되었으며 ③ 그동안 중국의 눈치때문에 북한의 동해항에만 국한되었던 蘇艦寄港이 서해의 남포항에도 허용되고 있는 것 등이다. ④ 그리고 '87년부터는 동해상에서 소·북한간의 해상 연합기동훈련도 실시되어 왔다. 이듬해('88년 5월 14일)에도 소련태평양함대 함정의 원산항 기항과 사령관 흐바토프의 김일성 면담 및 북한 군부지도자간의 협력증진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바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은 북한이 과학기술수준의 미흡으로 자체생산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고도의 정밀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여 군사력을 보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그23기(46대)에 의한 유격사단의 편성, 사정거리 약300km에 달

하는 Scud-B SSM 및 SA-3Goa SAM 등의 도입이며, 근년('88. 5)의 미국방성 보고서에 따르면 '87년도에는 보다 신예방공무기인 SA-5 Gammon SAM과 ZSU-23-4 自走대공포가 추가도입되어 북한의 방공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소련은 近接支援戰鬥機 20여 대, T-72 전차 등을 제공해왔고 1988년에는 14대의 미그29기를 제공하는 등 신무기 공급을 증대시켜 북한의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다.

'86년 3월, 이기백 전 국방부장관은 北倉기지에 배치된 북한의 미그 23전투기는 우리의 수도권 도달시간이 17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Scud-B는 平·元線에서 수도권 공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선지역으로 이동배치한다면 대전이남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북한의 대남공격범위 능력 확대를 지적한 바 있다.

북한과 소련간의 군사관계 강화노력은 신무기 공급 외에도 쌍방 해·공군 합동의 연합훈련, 군 주요인사 교류, 전투기 및 함정의 상호방문, 군사정보 교류, 소련 정찰기 및 폭격기의 북한 上空비행과 소련 함정·항공기의 북한기지 이용 등 다방면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다.

북한과 소련은 동해 북부해상에서 1986년 10월 해·공군 연합훈련을 시작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소련의 북한에 대한 軍事支援意志의 과시와 함께 북한군의 전략, 전술, 전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소련 태평양함대는 동해상에서 기동전투훈련을 매년 강화(1986년 3회, 1987년 5회, 1988년 3회, 1989년 3회 등)해 왔으며, 1988년 9월에는 크레스타급 순양함을 주축으로 한 북한, 소련 쌍방 해·공군간의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고위층 상호방문은 소련측에서 호바토프 태평양함대 사령관(1988년 5월), 크레차크 국방차관(1989년 8월), 소로킨 해군원수(1989년 8월), 드레지아니크 해군함대 총정치국 부총국장(1990년 5월) 등

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측에서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1988년 2월), 김광진(1990년 1월) 및 전문섭(1990년 5월)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소련을 방문하는 등 10여회에 달하고 있다.

양국 합정 및 전투기 상호방문 빈도도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의 합정 상호방문은 소련측에서 1988년 5월(소련 태평양 함대 소속 노보로 시스크호)과 1990년 8월 방북한바 있다. 또한 1984년 12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소련 정찰기 및 폭격기의 북한 상공 횡단비행은 100회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1986년 7월 블란킨 극동 공군사령관 방북이래 양국 공군의 연합감시, 哨戒비행 활동이 현저히 증대된 바 있었다.

다음 북한의 중국과의 군사협력관계는 군고위간부들의 상호방문과 유사시 공동투쟁의 재확인 등 외에는 특기할 만한 군사협력교류사항이 최근들어서는 別無하다고 볼수 있다. 군 고위급 교류실적으로는 1988년에 廣州軍區 정치위원장 장중선일행의 訪北, 양상곤 국가주석일행(군 참모총장등)의 9·9절 행사 참가, 북한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공군사령관 조명록의 訪中이 있었다. 또한 1990년 8월 중국 군사대표단(단장:국방부장 진기위)의 방북이 있었으나 특별한 군사적 교류·협력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편향하여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갔던 '8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는 군사장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바 있다. 그 도입실적을 예시하면 미그21기 40대('82년), OSA급 유도탄정 4척('80-'81년), AN-2수송기 82대('80-'83), YAK-18훈련기 47대('82-'83년), 레이더 6기('82-'83), SILK WORM 지대함 미사일 10기('80년) 등이다.

## 82.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는 가입하고서도 핵안전조치 협정은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 内外信들이 잇달아 北韓의 핵시설물과 핵개발 기술수준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北韓의 核武器開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北韓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核安全點檢을 위한 現地檢證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고 나와 이러한 상반된 태도가 핵무기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내외언론들이 갖가지 신빙할 만한 자료를 토대로 “北韓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시설물을 확장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함으로써 北韓의 핵무기개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北韓은 지난 1990년 2월 26일 관영 中央通信을 통해 核武器開發과 관련된 이러한 보도가 모두 “허위이며 조작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우리는 國際原子力機構의 담보체계내에서 원자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풀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핵발전소 건설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北韓은 1990년 2월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된 국제원자력기구 연례이사회에서 핵안전 점검을 위한 이 기구의 현지점검 요구를 또 다시 거부함으로써 핵 또는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核擴散禁止條約(NPT) 가입국가의 기본적 의무조항에 대한 준수를 외면했다.

核擴散禁止條約은 核武器의 開發과 擴散을 금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구로서 핵무기 보유국은 물론 핵기술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南北韓을 포함해 138개국 가입하고 있다.

韓國은 75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며 北韓은 蘇聯의 압력에 의해 85년 12월에 가입했다.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은 핵기술 선진국들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이 기구로부터 이전받은 핵기술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받아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 따라서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한 국가는 그 후속조치로 조약가입 후 18개월 이내에 國際原子力機構와 核安全協定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北韓은 이 조약에 가입한 지 60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거부 이유는 國際原子力機構의 감시내용이 核擴散禁止條約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억지주장과 함께 北韓이 對南戰略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韓半島非核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北韓은 1990년 2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國際原子力機構 年例理事會에서도 “韓半島에 核武器가 존재하고 또 텀스피리트같은 軍事訓練이 벌어지는 한 핵안전점검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國際原子力機構와 核安全協定을 체결하는 것은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항이라는 점에서, 비록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일지라도 北韓이 이미 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北韓이 50年代 후반부터 核開發에 관심을 기울여 상당한 정도의 기술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北韓이 이 조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이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國際原子力機構에 의한 감시를 거부하고 있는 진정한 속셈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北韓이 核安全協定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北韓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核發電所建設 등을 통해 핵기술

을 축적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核武器를 개발하려는 저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관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즉 하나는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핵발전소건설과 같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협정체결을 ‘韓半島非核化’와 같은 그들의 對南戰略과 연결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장기간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세계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굳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北韓 스스로 진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라도 核安全協定締結을 서두를 것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北韓이 이미 오래전부터 핵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와 상당한 정도의 기술을 축적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최신기술로 포착되고 있는 寧邊의 原子力施設이 순수연구용 또는 발전용과는 다른 軍事的 轉用이 가능한 시설로 분석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核先制使用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對美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결국 핵무기 개발을 통한 대남군사력 절대우위를 확보해 보려는 기도로서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

이 념 문 제



### 83. 문익환·임수경의 밀입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킨 要因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우리 정부는 統一論議의 開放措置를 통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일논의에 참여하게 하고, 정부는 統一政策에 관하여 국민으로부터 객관적인 評價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輿論收斂과정을 통해 통일정책이 마련되면 推進主體는 헌법이 부여한 바에 따라 당연히 정부가 되는 것이며, 정부아닌 단체나 개인은 정부가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단체나 개인에게 그 權限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익환씨와 임수경양의 경우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북한의 對南工作線과 연결, 은밀히 입북하여 정부의 통일정책과 배치되는 統一方案을 북한 당국과 합의하고, 이른바 「共同聲明」의 발표나 「記者會見」을 하면서 북한의 主義·主張에 同調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고 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문익환씨는 “모든 통일은 썬이다”라고 주장하여 마치 赤化統一까지도 추구한다는 言動을 보여, 통일에 관한 大原則인 自由民主의 基本秩序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憲法精神을 정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外勢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등 反國家行爲를 자행했다.

또한 임수경양은 入北後 초기에는 흥분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國際平和大行進」의 진행에서 부터는 북한측 주장을 그대로 代辯하였다. 즉 남한과 북한을 “反統一 대 統一”이라는 二分法的 觀點에서 파악하여 “남한을 外勢依存的, 戰爭志向的 反統一勢力”으로 매도하는 반면, “北韓을 自主的, 平和志向的 統一勢力”으로 찬양하였다.

그리고 「全大協」의 反美·反體制 투쟁이 북한 및 國際社會主義 勢力的 연대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文益煥氏의 言動事例〉

## ① 1989. 3. 25. 「평양도착성명」

•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불타는 念願은 이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비등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동안 거의 반세기에 걸쳐 분단의 비애, 분단의 치욕을 씻으려고 남쪽 민중들은 獨裁勢力과 막강한 軍事勢力, 경제력을 구사하는 外勢와 싸워 이제 마침내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운명적 지점을 향하여 突進하고 있습니다.”

• “나는 펍 오래전부터 한번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金日成主席님과 만나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진정으로 기탄없는 대화를 교환할 수 없을까?하는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 “모든 통일은 善이라고 외쳤던 張俊河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면서 金日成主席同志를 만나고자 합니다.”

## ② 1989. 4. 2. 「祖平統」에서의 기자회견

•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年頭新年辭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와 있는 동안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시고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 올때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金日成主席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북측이 환영해 준데 대하여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배신하면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내 祖國의 일원이다. 그런 資格을 획득했다.”

## 〈林秀卿양氏의 言動事例〉

## ① 1989. 6. 30. 「평양도착 기자회견」

• “저 혼자밖에 「全大協」에서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

은 남한의 政權이 바로 反統一勢力이며,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 자는 左傾容共勢力으론 물리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입니다.”

② 1989. 6. 30. 「고려호텔 기자회견」

• “7천만 겨레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 정권 노○○정권과 그 일당 그리고 남한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국이다.”

이 밖에도 많은 기자회견의 言動이 있었지만 생략한다.

북한을 밀입국한 개인이 주민과 학생을 만나서 부동켜 안으면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감상적 統一至上主義를 우리는 警戒해야 한다.

남북간에 40여년간 쌓아 온 不信과 갈등은 하루 아침에 解消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民族同質性」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文益煥氏나 林秀卿嬢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해서 우리의 北方政策이나 統一政策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統一問題에 대해 大韓民國의 대표성이 없는 在野 또는 反體制 인사들을 차례로 끌어들이어 엉뚱한 술책을 부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通路를 통하여 책임있는 당국간에 만나서 통일문제를 풀 수 있도록 보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文益煥氏와 林秀卿嬢의 밀입북과 같은 事例는 진정한 統一勢力에 逆行하는 反民族的인 처사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古代國家이건, 現代國家이건, 君主國家, 民主國家이건간에 統一政策과 같이 중대한 민족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민족사의 지상과제를 해결하는 對外政策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權限과 權能을 지닌 政府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 84.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革命’의 개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 權力이 대중운동에 의하든 정치세력에 의하든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政權交替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 등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의 개념은 그와 같지 않다.

북한에서 발행한「조선말 사전」이나「정치용어 사전」에서는 ‘혁명’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즉, “혁명이란 첫째,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制度를 새로운 제도로 바꿔놓는 根本的인 변화이며, 둘째, 일정한 생활·생산분야 및 문화의식 등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根本的인 변화란 것은 형식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착취 계급이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탈취하는 政治的變革과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부르주아계급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옮겨지는 經濟的 변혁”을 말한다. 즉 唯物史觀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바뀌는 것만을 革命이라고 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공산주의역사관인 유물사관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유물사관에서는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동력을 어떤 理想이나 精神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生産과 교환방법의 변동 즉 경제생활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물사관에 의하면 生産에는 두개의 커다란 要素가 있는데, 生産關係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생산도구와 생산의 경험과 노동에 대한 숙달에 의하여 생산도구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勞動力을 종합해

서 生産力이라 부르고, 생산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産關係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産樣式 안에서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생산력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해서 생산관계도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생산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산력에 대응한 필연적인 생산관계를 맺게된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生産關係의 총합이 사회의 經濟的 構造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經濟的 구조야말로 下部構造 즉 사회의 土臺이며, 법률·정치등 상부구조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방법이 變할 때는 이에 따라 생산관계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법률·도덕·종교·예술 등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부구조는 하부구조 즉, 토대에 대응하여 決定되는데, 다시 그 상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支配階級の 利益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낡은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될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社會革命이 폭발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낡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觀念形態 즉, 상부구조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唯物史觀을 내세우는 것은 階級鬭爭理論을 전개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론의 결론이다.

공산주의이론에 의하면 “革命은 계급투쟁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피압박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革命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社會制度를 폭력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血革命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暴力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非組織的인 대중의 산발적인 봉기나 무계획적이고 일시적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계급으로 뭉쳐진 노동자들의 全體的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혁명이란 것은 정치세력으로 묶여진 프롤레타리아트가 피홀리는 폭력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자체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시하여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社會主義憲法 第10條)하는 階級國家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主體思想을 指導的指針으로 삼고”(同憲法 第4條)있는 공산당지배국가이며 革命政權이다. 따라서, 조국통일 이론도 ‘남조선 혁명’으로 되어있다.

김일성 연설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남조선 혁명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平和的 移行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한 대중운동만으로는 革命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직 革命的 暴力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조선혁명”이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혁명역량, 남한의 혁명역량 및 국제적 혁명역량 등 이른바 3大 革命力量을 對南赤化革命의 기조로 삼고있다.

이러한 혁명역량을 기조로 하여 북한은 民主革命力量基地戰略·對南人民革命戰略등 對南赤化戰略을 구상했으며, 이를 위하여 暴力革命戰術과 非폭력혁명전술을 적절한 배합으로 전개하고 있다.



### 85.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마르크스시대의 초기산업자본주의와 달라서 오히려 自由企業體制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

첫째, 가장 큰 장점으로 국민 각 個人이 자기의 創意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의성이 발휘되는 조건은 각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自由롭다는데 있다. 물론 이 자유가 다른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용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이와 같은 경제적 자유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自由企業의 제도, 즉 資本主義制度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제도 밑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生産力이 발휘되었고, 技術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다.

둘째, 景氣變動의 원인이 되는 生産力과 消費의 불균형을 調整하는 장치가 발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는 資源의 안배와 사용이 價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물자의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까닭에 표면상으로는 무정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資源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政府의 命命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산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물자의 공급과 수요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

셋째, 「自動安全裝置」라는 것이 마련되어 이들의 작용으로 심한 好

景氣나 不景氣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데 있다.

累進稅率을 가진 조세제도, 실업보험제도와 기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국민의 可處分所得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이 제도의 장점은 자동안전장치의 작용으로만 경기의 안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政府가 財政과 金融상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不景氣의 경우에는 감세조치로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公共事業을 일으켜서 경기를 호전시키는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로 好景氣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증세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의 과열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 재정정책과 아울러 경기조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금융정책이 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통화량과 金利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民主主義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法과 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社會改革과 복지증진정책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共產主義의 理論에서는 자본주의 밑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궁핍과 타락을 예견했으나, 노동자 자신의 각성과 노동조합활동, 복지정책, 특정산업의 公有化 등의 조치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에 불평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해 왔다.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비하여 社會主義經濟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이상, 자본주의 경제에서 처럼 개인기업의 자유경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모든 競爭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경쟁이라면 오히려 권장된다. 이 경쟁을 자유경쟁과 구별하여 社會主義競爭이라고 부른다.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유경쟁체제와는 정반대의 完全獨占體制이다.

國家權力이 강하게 작용하여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노동·가격 등에 관한 최고지배권이 國家(사실상은 共產黨)의 손안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 의한 완전독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산국가의 소비에트적 사회주의경제체제를 強權의 社會主義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의례히 중앙집권적이고 강권적 計劃經濟로 된다. 勞動者는 작업량, 즉 「노르마」가 부과되어 직장이동에도 큰 구속을 받게 되며, 消費者로서는 계획된 공급면의 조건을 변경시킬 권한도 없고 또 企業家는 본질적으로 생산계획의 집행관리에 불과하다. 또한 강권적 사회주의경제체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될 점은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生産增大가 문제로 된다.

직업선택과 임금의 형태 수량이 모두 政府의 統制하에 있기 때문에, 생산의욕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勞動生産物이 차등이 있을 정도로 所得에 탄력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동량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 근면과 나태, 숙련과 미숙련, 유능과 무능이 모두 소득상에 현저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能率을 올릴 수 없다. 生産을 目標量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독촉이 항상 필요하게 되기때문에 이러한 強制는 결국 공포에 의한 強制勞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모든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生産量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든가 品質의 저하를 초래하든가 그 어느 것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對策이 고려된 것인데 소련에서 실시한 「스타하노프 운동」, 북한에서 실시한 「천리마 운동」이라든가, 경영과 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과 이윤을 부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는 「獨立採算制」라든가 어느 정도의 개인기업을 허용하는 「企業長

期基金制」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가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소비한다는 공동소비의 理想”을 가지는 이상, 생산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능률과 소득과의 비례가 자유경제체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추세라고 하겠다.

그런데, 간혹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대단히 能率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즉, 사회주의경제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것이 기어이 달성되는 경제이고, 失業과 景氣變動이 없는 경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의 지식인들 마저도 사회주의사회는 비록 非人道的이기는 하나 能率面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사회를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價格機構에 의한 自動調節裝置에 근거하여 需要供給의 균형을 유지시키며 이 속에서 인간의 自由意志를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國家的 中央統制機構에 의해 需要供給을 調節함으로써 국가기능의 過大化와 浪費를 초래하면서 인간을 통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差異點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중앙통제기구에 의해 需要供給을 조절하는 命令型經濟를 가지고서는 지속적으로 能率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東歐共產諸國의 급격한 社會變化 등 오늘의 사회주의국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6. 自由開放社會의 속성이기도 한 빈부 격차와 理念의 다양성 문제를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이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自由開放社會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다. 또한 극소수의 극빈층도 있다.

法 앞의 平等과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과 경제윤리 그리고 사회정의가 보장되며 정부에 의한 福祉政策이 수반되고 있는 한, 貧富의 차이 그 자체가 사회적 갈등이나 體制의 위협요인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공정성, 윤리성과 社會正義가 시들며 복지정책이 구호에 머물게 될 경우, 이는 국민들로 부터 정부와 가진 자에 대하여 비판, 불신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며, 급기야는 혁명과 폭력에 의존하여 기존질서를 파괴하려는 경향마저 노골화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빈부 격차의 심화현상은 공산주의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統一戰線戰術의 주요 표적으로서 노출됨으로써 큰 취약점으로 부각될 것은 自明한 일이다.

과연 우리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문제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냉철히 살펴보자.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가속화된 근대화 물결속에서, 국가경제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 심화라는 역기능적 현상이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곧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경제적 正義의 바탕이 된다.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부동산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써 토지공개념의 입법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 실천사례로서 제시할 만하다.

또한 특권과 특혜의 근절, 자율경쟁의 보장(이 경우 약자의 경쟁력 보강), 조세부담의 형평을 비롯하여, 노사간의 협동관계 정립, 노동의

인간화(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조의 자제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병행되어야 함), 농촌공업화·문화생활화와 지역격차 해소조치 등의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조처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은 자율적인 경쟁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그 경쟁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도 자유경쟁적인 시장원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는 경쟁으로 부터 탈락·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나가고 있다. 즉 정부는 영세민의 증산층화를 목표로한 복지정책의 과감한 추진과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룩할 통일민주공화국을 자유와 인권과 복지와 행복이 넘실거리는 고도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을 통일조국의 모범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命題를 정부는 명심하고 있다.

민족구성원이 남쪽에 살고 있든, 북쪽에 살고 있든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충만한 바로 그러한 민주국가를 마음의 조국으로 삼는다고 가정할때 이 명제는 실로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인정하되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조화와 균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가진자의 절제와 정부의 선의의 조정역할이 잘 이루어 짐으로써 사람답게 사는 사회, 그리고 정신적으로 빈부격차의식을 느끼지 않는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와 같은 복지사회를 내실있게 이룩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갈등문제는 점차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음, 理念의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과 구호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이념의 다양성의 문제는 체제위험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없다. 민주주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면, 「진보」를 앞세운 좌경이데올로기의 도전은 결코 우리사회를 허무는 위협요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문제와 관련, 東歐의 민주화 개혁의 도미노물결과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첫째, 진보주의를 공산당이 독점한다고 주장해온 볼셰비즘의 철칙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참다운 진보」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다원주의와 충돌하거나 그런 가치들을 폐기하려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런 가치들을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부문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속에서의 統一을 이룩한 독일 민족의 슬기와 민주주의의 모범적 실천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좌경운동권 일각에서는 유일한 진보는 오직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교조적으로 주입받아온 사상적 동향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主思派」를 자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마치 진보의 적인양 매도하고, 그것은 부르주아반동들의 기만수단이라 단정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민중을 위한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치물로서 좌경 혁명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릇된 인식과 정세관을 바로 잡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정치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한 이데올로기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만능적이거나 완전무결한 이념은 아니지만 최상의 것이 임이 확인해졌다. 동구국가들마저도 그 가치의 보편적 정당성을 공산당일당독재의 폐기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참다운 진보는 공산주의의 독재적 진보가 아니라 민주적 진보여야 하며 민주적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충해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동구변혁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대체이데올로기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좌경운동권론자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원리를 사회주의의 理想과 양립시키려는 민주사회주의론을 「개량주의」·「반동」으로 배척하는 무지와 편견, 흑백논리적, 편향적 사고적 사고로 부터 해방되어야 할 때이다.

통일이념의 정립에 있어서도 위에서 살펴 본 동구의 민주화개혁과 자유화의 본격추진및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은 매우 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도 버리고 공산주의도 버림으로써 제3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노력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하는 바탕위에서 민주사회주의의 가치덕목을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지언정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수용할 이유와 필요는 없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요컨대, 개인과 민족의 자유신장의 역사가 세계정치사의 큰 흐름이라고 볼 때 참다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과거에 평가절하되었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평가절상하여 빛을 내는 과제야말로 민족사적·통일사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 87. 최근 좌경운동권의 투쟁목표와 좌경세력의各界 침투실태는 어떠한가?

그들의 당면투쟁목표는 소위 「민중민주주의 정권」이라는 명분하의 공산정권수립에 있으며 궁극목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있다.

각계 침투 실태를 보면 大學街를 본거지로 하여 교육계, 노동계, 종교계, 문예계, 출판계, 언론계 등을 들 수 있는데 다른나라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대학가야말로 반체제 세력의 발상지이며 또한 그 수출기지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6·25동란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대학가에서 만든 좌경세력이 은신하여 그 명맥을 이어왔으며 마르크스주의 성향을 지닌 서클들이 비밀리에 존재해 왔는데, 이들이 오늘날처럼 전파되고 확대된 좌경세력들의 孢子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셈이다.

특히, 4.19의거를 계기로 크게 성장한 좌경세력들을 노려 北韓당국이 대남공작요원을 대량침투시켜,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인민혁명당사건」(1963년), 「통일혁명당사건」(1968년) 및 「민청학련사건」(1974년)등이다. 그리고 그 여파가 「남민전사건」(1979년)으로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좌경화현상이 계속되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부차이 문제와 결부되어 전국 대학가의 좌경화 바람이 일게 된 것이다.

대학가에 일정하게 뿌리를 내린 좌경분자들은 처음에는 네오마르크스주의와 뉴-레프트운동, 종속이론과 해방신학 및 서구공산주의 계통의 서적을 이용하여 많은 대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어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당국의 주체사상 학습으로까지 의식화 교육과정을 전환시켜 「레닌파」와

「주사파」라는 세력들을 길러내는데까지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 1985년에 일어났던 「3민투사건」, 1986년에는 전국대에서의 「애학투련결성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동의대사건」등 하나 하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조직의 기관지로는 「민족민주선언」(민민투계)과 「애국학도」(자민투계)등 각 대학별로 수없이 내고 있으며 많은 대학신문과 교지들도 그들이 좌우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그같은 공공연한 地下조직의 배후에는 「민민투중앙위원회」(민민투계), 「H.W.C.T」(학생운동지도본부, 민민투계), 「총학생회 활성화추진회」(자민투, 전대협계), 「반민청년회」(자민투계, 전대협계) 등의 지하통제조직이 실권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들 좌경조직들을 음성적으로 教唆, 支援하는 일부 교수들도 점차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지난 1986년 9월에 드러난 서울대 교수간첩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학가야말로 좌경핵심분자들을 육성, 공급하는 근원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이른바 「진보적 청년학생」이 노·농대중을 지원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실은 그들이 「혁명의 전위」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教育界에 있어서의 좌경화 확산활동은 「민중교육운동」 또는 「민주교육투쟁」등을 내세우는 일부교사 및 일부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중교육운동」(참교육으로도 표현하고 있음)은 주로 불우층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현실비판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활동이며, 「민주교육투쟁」은 교사들 스스로의 반체제적 운동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대체로 좌경운동권 학생출신으로서 먼저 주변으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하고 나서 활동에 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를 가진자들이 그들의 지배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고치는데는 먼저 사회구조 자체부터 변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반체제적 교육관점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교육운동가인 일리치 및 프레이리등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프레이리에 의하면 「우익은 그 지배를 계속하기 위한 문화행동방식을 고안해 낸다」는 것이며 일리치도 기존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서 전파되고 있는 좌익계 교육사상·운동서적들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좌경화된 교사들은 스스로를 정신노동자로 자처하면서 육체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학교밖에서는 夜學을 개설, 불우청소년들에게 반체제의식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안에서도 교과내용과 연결시키는 방법 또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의식화하고 있다.

이같이 「민중교육운동」, 「민주교육투쟁」 등은 이른바 「민중혁명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社會主義 사회실현을 위한 인재육성을 그 임무로 삼는 것이다. 요컨대 현 체제를 타파하여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비로소 理想社會가 실현된다는 의식으로 전개하는 운동이다. 특히 「민주교육투쟁」은 그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좌경교사 스스로가 협의회(전교조 같은 조직체)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투쟁해 나가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 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내고 있는 각종 간행물 및 그들의 실력행사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勞働界에 대한 침투공작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좌경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좌경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노동계에 침투하여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려는 이유는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으뜸가는 주력군으로 키워내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밑에 이들은 학력을 숙이고 하층 일반 잡급노동자로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노동계에 침투하여 왔으며, 적발된 수는 '83년에 12명, '84년에 25명, '85년에 307명, '86년에 400명, 그리고 '87년에 이르러는 무려 933명에 이를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위장취업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상사와 주위로부터 신임을 얻은 다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처음부터 좌경노조의 결성을 시도하고 이미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용노조」로 몰아세워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민주노조」라는 새 노조를 발족시켜 그속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동야학」을 만들고 처음에는 어학이나 수학같은 학습을 거쳐서 차츰 로마시대의 노예 이야기인 「스파르타쿠스의 난」,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천민이야기인 「망이·망소이의 난」등을 가르침으로써 인류사회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유물사관적 시각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회, 특히 남한사회를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보도록 이끌면서 자본가계급과 투쟁하여 승리하기 위한 투쟁 및 조직형태 그리고 투쟁표어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노동계의 좌경화 기운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또한 탈춤이나 연극 및 슬라이드 상영등의 방법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심을 불러 일으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반체제적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우선 기업주를 상대로 하는 경제투쟁을 유발하는 한편 기회있는대로 체제 전반을 타도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광범위한 연

대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즉 기업단위의 투쟁을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그것을 다시 전국적규모의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끝내는 본격적인 폭력봉기로 발전시킬 것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폭동과 혁명을 선동하는 각종 간행물(「노동계급」, 「노동자의 길」등)을 전파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일부 종교단체도 개입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계야말로 좌경분자들이 침투, 점령하기 위한 최대의 목표분야가 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 이미 이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노동자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운운하면서 추켜세우고 있으나, 실은 그들의 집단력을 이용하려는데 착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핵심적 좌경의식분자들인 것이다.

宗敎界에 있어서의 좌경화 활동은 「해방신학」과 그것이 변형된 「민중신학」 그리고 「민중불교」등에 기초한 설교, 또는 포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세력들은 불우한 대중에 접근하여 그들의 해방을 논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도를 확보하여 교세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츰 비대해지고 있는 좌경세력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며 불우대중에 접근함으로써 「박애」 또는 「자비」의 종교적 명분도 세울수 있다고 타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0년대에 이르러 라틴 아메리카에서 번진 해방신학이 종속이론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그것이 때마침 유행하고 있던 민중론과 결합되어 「민중신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신학과 맥락을 같이하는 「민중불교」가 아울러 성장함으로써 「민중종교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민중종교운동」에 참여하는 신부, 목사 및 승려들이 처음부터 좌경세력들과 직접 어울리게 된 것은 아니고 시대적 조류를 의식하

여 좌경분자들에게 은신처나 학습장을 빌려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국의 사찰이 성당, 교회, 절등에 미치게 되면서 단순한 지원에서 비호로, 비호에서 동조로 진일보해 나가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좌경분자들을 능가하는 모험적인 인기전술로 나서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른바 「민중종교활동」에 나서고 있는 일부 신부, 목사 및 승려들이 좌경세력들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현상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행동과정에서 법적 단속에 직면하게 되면 「종교탄압」 운운하며 이른바 「聖域論」을 펴는 등 국가의 처지보다 주로 자신들의 교세확장에 마음을 쏟고 있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종교세력들이 현재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지고 있으며, 자체의 각종 기관지 또는 부정기 간행물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같은 간행물들은 좌경세력들이 혁명을 선동하는 문서를 내는데 유용한 자료구실을 하기도 한다.

요컨대 종교계의 일각이 좌경핵심분자들의 은신처 또는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좌경세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으나 일단 현재의 「민주」 명목 혁명이 성취되고 좌익분자들이 실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인민대중의 아편」으로 일괄 제거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 이들 「민중종교운동」 세력이라고 할 것이다.

文化·藝術 부문에 있어서의 좌경활동은 이른바 「민중문학」, 「민중미술」, 「민중연극」 그리고 심지어는 「민중만화」등을 표방하는 요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예 부문에 있어서의 좌경화운동도 이른바 「민중혁명운동」의 부분운동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민중문학운동」은 사실상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물들은 노동자, 농민 등으로 급조된 좌경분자들

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민중문학」이란 민중적 투쟁을 선동하는 소설이나 시를 써서 보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사실주의)에 의한 문학활동으로써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긍정적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민중미술운동」도 역시 미술을 수단으로 하며 현실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민중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대체로 새로운 세대이며, 동인체 형식으로 모여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을 부각시키는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중연극운동」도 역시 같은 맥락의 것으로서 대학시절부터 좌경적 연극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은 군소극단을 만들어 주로 대학생, 노동자, 빈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나 회관 등을 빌어 가설무대를 꾸며서 공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같은 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세력들은 그들의 호칭법으로는 「진보적 인텔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권을 탈취할 때까지는 이들을 대단히 유용한 보조역량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일단 정권을 탈취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행사에 대해서도 시비하며 말썽을 부리는 대상으로 취급하여 「인텔리 근성」 운운하면서 탄압을 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계획된 절차인 것이다.

출판계의 좌경화는 지금까지 언급된 세분야와 총체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한 상태이다. 이같은 출판계의 좌경화현상은 좌경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되었거나 졸업하고서도 마땅한 취직처를 얻지 못한 좌경분자들의 생계유지 또는 혁명사업에 뜻을 두고 이분야에 뛰어든 인물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다.

이들은 간단한 시설로 기동성있게 옮겨 다니면서 초기에는 주로 의

국에서 발행된 좌익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북한당국의 原典들을 대량생산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출판사는 현재 대단히 많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녹두」, 「백산서당」, 「거름」 및 「조국」 등의 이름을 내건 출판사들이다.

한편 이러한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좌경서적들을 판매, 보급하는 전문적인 서점 및 판매원들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출판사와 서점들은 좌경서적을 전파시키는 한편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의 일부를 좌경세력의 활동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좌경서적들이 잘팔린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 수익위주로 좌경서적을 발행하는 상업주의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분야에 좌경세력들이 침투하고 있으며, 특히 동맹, 제휴 대상의 폭을 넓게 잡고 있는 주사파(자민투)의 침투가 레닌파(민민투)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좌경세력들이 침투하는 분야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혁명에 도움이 되는데 그 우선 순위를 두게 되어 있으며 농민, 도시빈민에 대한 접근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農村에서의 좌경화 활동은 주로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종교단체속에 침투한 좌경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좌경학생 주도의 농촌활동도 그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農活기간이 대체로 10일 내외이고,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分散的이어서 사실상 자체 수련회(MT)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농민에 대한 의식화 활동은 종교단체(가농, 기농 등)의 활동, 그리고 좌경학생들의 「편지보내기」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시빈민들에 대한 좌경화활동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같은 활동은 선교단체와 이들 빈민들 속에 어울려 살고 있는 좌경학생(제적



생 포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무허가주택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빈민들이 반항, 투쟁하도록 선동하며 때로는 좌경학생들을 불러들여 소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政黨이나 사회단체등에 침투하여 그 노선을 좌경화하려는 좌경분자들의 활동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당국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좌경색을 띠고 활동중에 있는 단체가 총 126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일부 언론계와 정계, 심지어는 의료 및 약업계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학시절의 좌경운동 경험자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정부기관, 특히 입법부같은 곳에서 현재 상당수의 좌경운동 경험자들이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전대협과 학생운동」, 동아일보, 1989년 7월 26일, 13면 기사참조)

그리고 특히 좌경대학생들을 소요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조기入營처리하는 등의 현상은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적군전취와해사업」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북한당국을 규탄하는 부모들은 이른바 「반공이데올로기」에 오염된 「낡은세대」로 단정해 버리는 자녀들조차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두고 볼 때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좌경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업은 거국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국가대사중의 대사라 아니할 수 없다.



## 統一問答

(통일총서 / 7)

---

1989年 2月 3日 初版發行  
1990年 1月 30日 修正版發行  
1991年 1月 30日 增補版發行

發行處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산 73-13

電話 901-7120 / 4

印刷處 江聞印刷社

---

(통연 91-1-3)



## 統一叢書 發刊目錄

1. 統一期 三國의 政治·社會相 (1987)
2. 民衆民主主義革命, 그 實相과 問題點 (1987~1990)
3. 好機 속에 숨은 危機 (1987)
4. 共產主義, 그 理論과 現實 (1987)
5. 北韓의 宗教實態 (1988)
6. 北韓의 主體思想 (1989~1991)
7. 統一問答 (1989~1991)
8. 北韓의 宗教政策 (1989~1990)  
北韓의 宗教(1991)
9. 北韓의 文學·藝術 (1989~1991)
10.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 (1989~1990)  
北韓의 軍事(1991)
11. 分斷國 統一問題 (1990)  
分斷國 統合過程 (1991)
12. 共產主義, 그 理論과 實際 (1990)
13. 北韓의 教育實態 (1990)
14.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現況 (1990~1991)
15. 南北對話를 통해 본 北韓의 協商戰術 (1990)
16. 社會主義國家의 變化相 (1991)
17. 北韓의 人權實態 (1991)
18. 北韓의 言論 (1991)

